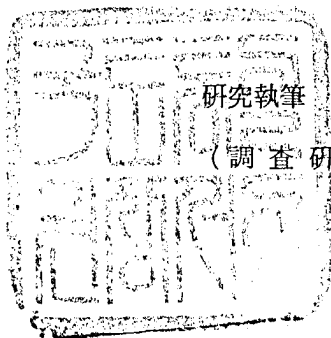


北韓의 實質消費生活水準 分析



研究執筆

金 永 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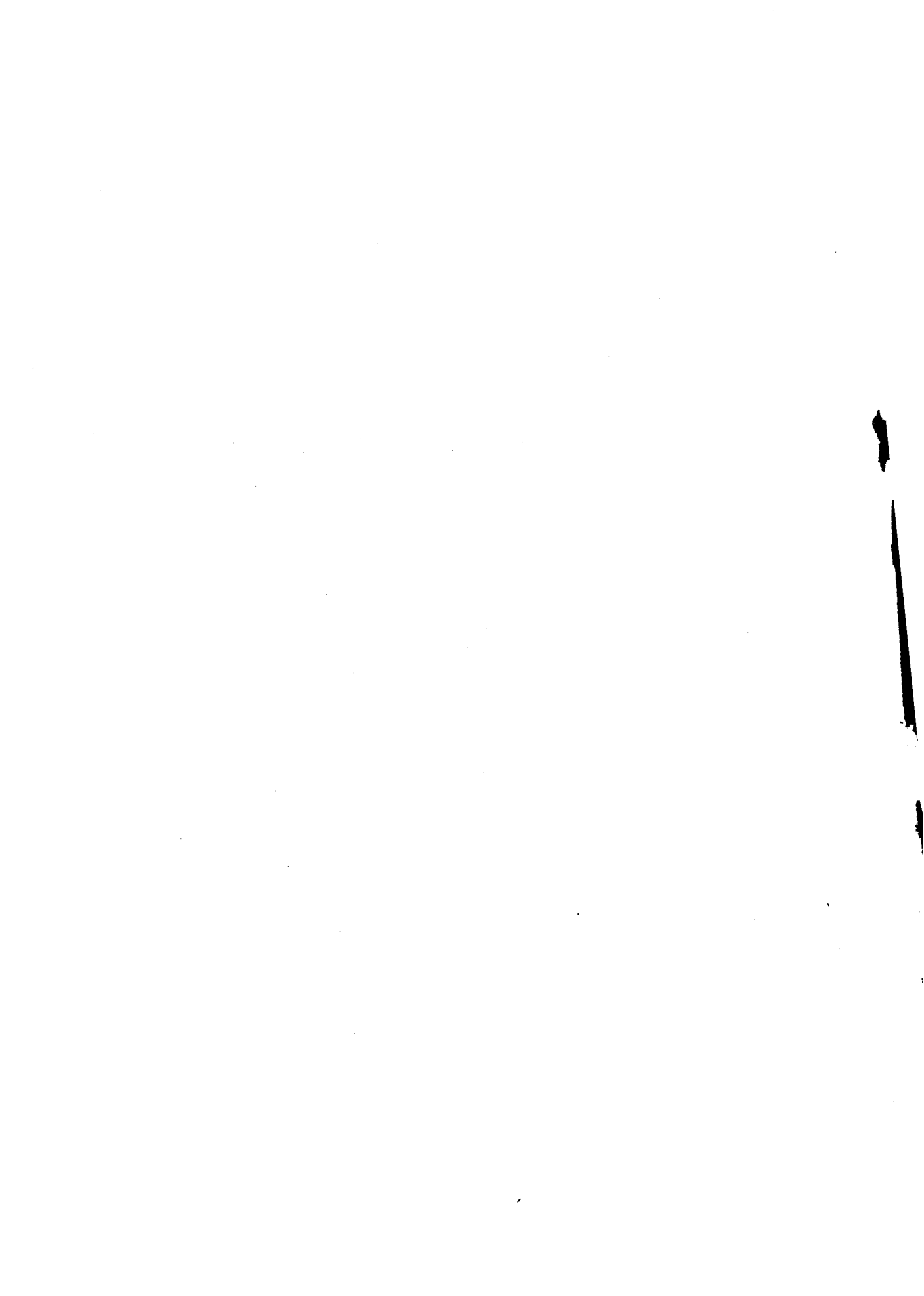
(調 査 研 究 室 補 佐 官)

430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研究結果 内容要約



目 次

1. 研究의 意義 및 範圍	5
2. 消費生活에 대한 北韓住民의 意識構造	6
3. 北韓住民의 家計所得 水準評價	7
가. 北韓住民의 家計所得 評價	7
나. 北韓의 1人當 假處分 所得額 評價	9
4. 北韓住民의 家計支出 構造評價	11
가. 家計支出 內譯	11
나. 支出構造上的 特徵	13
5. 衣食住生活 水準評價	14
가. 食生活 水準	14
나. 衣生活 水準	18
다. 住居生活 水準	20
6. 生活 日用品 購買力 評價	25
가. 家計所得中 購買可用 金額	25
나. 購買可用 品目 및 購買量	26



1. 研究의 意義 및 範圍

- 分斷 39 年에 걸쳐 南北韓 住民들간에는 각기 상이한 體制와 環境하에서 生活해 오음에 따라 異質的인 價値觀 및 生活패턴이 形成되었음.
- 그러므로 계량적으로 나타난 GNP 또는 1人當 國民所得 規模에 의한 南北韓 住民生活 比較는 誤謬를 범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北韓住民의 實質 消費生活水準을 多角的인 側面에서 深層 分析할 必要가 있는 바 本 研究에서는
 - 北韓 住民의 意識構造上的 特異點
 - 1人當 國民所得과 假處分所得間의 關係
 - 家計所得 水準과 支出構造의 特異點
 - 衣食住生活 水準의 深層分析
 - 生必需品 購買力評價等에 主眼點을 두었음.
- 앞으로 本 研究資料는 南北韓 經濟交流 및 人的交流와 關聯한 諸般對策樹立과 政策研究時 基礎資料로 活用될 것임.

2. 消費生活에 대한 北韓住民의 意識構造

- 北韓住民은 消費生活에 대한 比較基準에서 時代的으로는 日帝末期, 相對的으로는 “ 餓벗고 굶주린 南朝鮮住民 ”에 두고 있음.
- 따라서 北韓住民의 實質 消費生活 水準이 우리의 價値基準에서 보면 몹시 궁색하고 비참하게 보이지만은 北韓住民 自身은 現在의 生活에 만족하거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生活에서 오는 고통과 애로를 忍耐하고 克己하는 경향임.
- 北韓住民들내의 生活에 대한 相對的 評가가 없는 것은 아니나 衣食住生活 자체가 當局의 計劃과 統制下에서 이루어지므로 生活 정도의 差異가 크지 않고 相對的 評價對象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음.
- 全般的으로 볼 때 北韓住民들은 우수상품, 다양한 상품을 접할 기회가 적어 商品 선호 감각이 무뎠고 生活情報 不在, 社會體制에서 오는 生活상의 制約이 큼으로 消費生活에 대한 個人的 또는 集團的 要求가 抑制되거나 諦念되고 있는 실정임.

3. 北韓住民의 家計所得 水準評價

가. 北韓住民의 家計所得 評價

○ 主要 階層別 月 賃金水準

대 상	임금액(원)	한화평가치(원)	비 고
정무원 부장	350	133,000	장관급
정무원부부장	300	114,000	차관급
대학교수	190	77,200	종합대교수
기업소지배인	180	68,400	3급 기업소
기업소기사장	160	60,800	"
중노동자	92	34,960	광부, 용해공 등
사무원	70	26,600	
경노동자	59	22,420	여성근로자

* 韓貨 對 北韓貨의 比率은 380 : 1 적용

(1 \$ = 830 韓國원, 1 \$ = 2.18 北韓원)

* 全般的으로 北韓의 賃金은 金額上 각종 수당을 包含한 韓國 月俸給額의 10분의 1 水準임.

○ 主要 階層別 家計所得 水準

(단위 : 원)

대 상	가 장	배 우 자	미분가 자녀소득	계
부부장급	300	0	59	359
대학교수	190	65	59	314
지방 기관장	110	66	59	234
교원	80	72	59	211
8급 노동자	92	72	0	164
5급 노동자	72	72	0	144
사무원	70	70	0	140

* 算出根據

- 1) 階層別 賃金基準
- 2) 地方機關長級 이상은 住宅構造上 未分家 子女1人의 所得이 있는 것으로 評價
- 3) 副部長級 이상 배우자는 가사에만 종사
- 4) 家長의 賃金水準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勞動級數가 높아지고 있음.
- 5) 勞働者·事務員중 未分家 子女所得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父母와 同居하지 않고 工場 合宿所에서 生活하므로 除外하였음.

나.北韓의 1人當 假處分 所得額 評價

○ 南北韓 1人當 GNP 및 個人 假處分 所得額 (1982년말)

所得 區分	1人當 GNP		1人當 假處分 所得	
	北韓 및 韓貨	美貨(\$)	北韓 및 韓貨	美貨(\$)
北 韓	1,560 원	736	390 원	184
韓 國	1,223 千원	1,671	871 千원	1,190
南北對比		2.3: 1		6.5: 1

- 南北韓 1人當 GNP의 격차는 2.3 대 1이나 1人當 假處分 所得의 隔差는 6.5:1 이므로 實質所得의 差異는 6.5 : 1 임.
- 1人當 GNP 와 1人當 假處分 所得額의 比率은 韓國이 72.2 %이나 北韓은 32.2 % 임.
- * 北韓은 生産手段이 社會化되어 있어 所得의 대부분이 政府 또는 公共機關에 흡수되기 때문임.

- 階層別 家計所得과 假處分 所得과의 關係 (5 人家族 基準)

對 象	月家計所得	年家計所得	所得과 假處分所得比
副部長級	359	4,038	1.6 倍
大學教授	314	3,768	1.4 倍
地方機關長	234	2,808	104.6 %
教 員	211	2,532	94.3 %
8 級勞動者	164	1,968	73.3 %
5 級勞動者	144	1,728	64.4 %
事務員	140	1,680	62.6 %

- 5 人家族 基準 年 總家計 假處分所得額은 2,685 원임.
- 地方機關長級 以上은 1 人當 假處分所得額 以上の 消費生活 이 可能하나 그 이하 階層은 教員이 94 %, 事務員은 62.6 % 水準밖에 영위할 수 없음.

- * 韓國의 家計所得과 假處分所得과의 關係 (1980)

(단위 : 천원)

對 象	年間所得	5 人家族 假處分所得	年 所得과 假處分所得比
顧 備 主	5,708	3,300	1.7 倍
自營業主	2,756	"	83.5 %
勤 勞 者	2,955	"	89.5 %
無 職 者	1,862	"	56.4 %

4. 北韓住民의 家計支出 構造評價

가. 家計支出 內譯

○ 主要 階層別 基本生活費 內譯 (5 人家族 1 個月)

(單位 : 원)

支出項目 \ 階層	副部長級	8級勞動者	事務員
主食費	7.20	5.48	5.48
副食費	56.00	24.00	24.00
被服費	100.00	31.60	31.60
公課金	3.60	1.64	1.40
燃料 및 住宅費	22.00	4.92	4.20
教育費	7.60	3.80	3.80
文化·衛生費	20.00	14.15	14.15
計	216.40	85.59	84.63

- 副部長級은 8級勞動者, 事務員級の 2倍 以上.
- 北韓에서는 所得이 높을수록 副食費와 被服費 支出이 늘어나는 現象인데 이는 私有財産 不認定에서 오는 消費의 최대 目的이 衣食住 生活에 두고 있기 때문임.

○ 階層別 家計支出 構成比率

(單位：%)

구 분 / 구성비	副部長級	8級勞動者	事 務 員
主 副食費	17.6	18.0	21.1
被服費	27.8	19.3	22.6
住宅 및 光熱費	6.0	3.0	3.0
教 育 費	2.1	2.3	2.7
文化·衛生費	5.6	8.6	10.1
公 課 金	1.0	1.0	1.0
豫備 및 貯蓄	39.9	47.2	39.5
計	100.0	100.0	100.0

— 北韓은 英鎊의 법칙 “소득이 올라갈수록 主副食費 構成比率이 내려가고 文化·衛生費 構成費가 올라간다”는 것과는 逆現象을 보이고 있음.

* 韓國 家口當 消費支出 構成費

食品費	住居費	光熱費	家具費	被服費	醫療費	教育·教養	交通·通信	기 타
38.9	5.0	7.7	4.7	8.1	7.1	10.5	6.3	11.7

— 北韓의 主副食費 構成比率이 낮은 것은 저렴한 配給價 때문임.

나. 支出構造上的 特徵

○ 基本 生活費와 蓄積分의 比率 (單位 : %)

階 層 \ 區 分	基本生活費	蓄 積 分	計
8 級 勞 動 者	52.8	47.2	100
事 務 員	60.5	39.5	100

* 韓國 都市勤勞者 基本生活費는 69.7%, 蓄積分은 30.3%임.

○ 北韓 住民의 蓄積分이 높게 나타나는 理由

- 消費品 供給不足, 社會的 統制로 인한 消費抑制
- 消費品の 高價販賣 (配給品 除外)
- 當局의 強壓的인 貯蓄 強要
(經濟開發資金調達 및 消費抑制策)

* 實際로는 蓄積分이 많으나 時間이 없고 銀行出入이 不便하며 利率이 낮아 銀行에 貯蓄하는 일은 적고 대부분의 貨幣는 自家保管임.

5. 衣食住生活 水準評價

가. 食生活 水準

○ 北韓의 家口別 食糧配給量

(5 級勞動者 5 人家族 基準)

區分 對象	1 日配給 基準 (g)	月配給量 (kg)	穀種別配給量		
			쌀	옥수수	기타
家 長	600	16.8	5.04	10.08	1.68
妻	600	16.8	5.04	10.08	1.68
中學生(2)	500	28.0	8.40	16.80	2.80
人民學生	400	11.2	3.36	6.72	1.12
計		72.8	21.84	43.68	7.28

* 1 人當 月配給量中 2 日分 食糧 一律 控除

* 穀種別 比率은 쌀 3, 옥수수 6, 기타 1 임.

— 만일 就業者가 無斷缺勤, 遲刻, 早退時 食糧配給量에서
600 g, 200 g 씩 控除함.

○ 食糧需給判斷

取食區分	1人1日 食糧所要量	月食糧所要量	過不足量
3끼 4 稀飯	640 ㄱ	96 kg	- 23.2 kg
3끼 3 稀飯	480 ㄱ	72 kg	+ 0.8 kg
2끼 2 稀飯 1끼 粥	420 ㄱ	63 kg	+ 9.8 kg

* 輕勞動者의 正常的인 食사는 1일 5 稀飯 (800 ㄱ), 中學生 · 妻의 경우도 4 稀飯 (640 ㄱ) 이 一般的인.

- 北韓의 5級勞動者 家計의 경우 하루 1끼의 粥 또는 국수 取食이 不可避함.
- 食糧不足에서 오는 自救策으로 食糧竊取, 食糧橫領等 犯罪와 暗去來가 盛行.

○ 北韓의 5人家族 月 基本副食量

種 類	單 位	月購買量	備 考
간 장	ℓ	4	배급품
된 장	kg	6	"
고추장	kg	3	"
두 부	g	600	10 g 짜리 두부 60 모
달 갈	g	600	30 g 짜리 달갈 20 개
채 소	kg	30	김치, 콩나물, 무우, 배추 등
생 선	kg	1.2	동태, 이면수 등
육 류	g	500	연간 5 kg 내외

- 基本 副食量 以外の 副食類를 購入코저 할 때는 高價로 商店에서 購入해야 하는데 一般 勞動者의 경우는 대부분 基本 副食範圍內에서 生活하고 있음.
- 北韓 當局은 勞動者의 사기진작 명분으로 年 4~5 회 명절 特 配制를 실시하고 있는 바, 特配品은 돼지고기 세대당 1~2kg, 생선류 2~3 kg가 基本的이고 사정에 따라 과일, 과자, 설탕 등이 추가됨.

○ 北韓 勞動者 家族의 主副食 攝取熱量

구 분 종 류	1 kg 당 열 량	5 人 가족 월 섭취량	열 량		
			가족 총 열량	1 인 1 일 열량	
주 식	쌀	3.4 kcal	21.84 kg	74.26kcal	497 cal
	옥수수	"	43.68 kg	148.5 "	990 "
	기 타	"	7.28 kg	24.8 "	166 "
	소 계		72.8 kg	247.6 "	1,653 "
부 식	간 장	0.27 kcal	4 l	1,446 Cal	10 "
	된 장	1.28 "	6 kg	7,680 "	51 "
	고추장	0.76 "	3 "	2,280 "	15 "
	달걀	1.00 "	0.6 kg	600 "	4 "
	생선	0.84 "	1.2 "	1,000 "	7 "
	두부·콩	4.10 "	0.6 "	2,460 "	16 "
	채 소	0.42 "	30 "	12,600 "	84 "
	육 류	3.00 "	0.5 "	1,500 "	10 "
	소 계			28,120 "	188 "
총 열 량			275.72Kcal	1,841 "	

* 82 年度 韓國國民 1 日 1 人當 平均熱量은 2,588 cal 임.

— 5 級勞動者 家族의 平均熱量은 韓國 平均値의 71% 水準이고, 重勞動者 1 日 正常 攝取熱量 3,800 cal 에 비하면 약 50% 水準에도 未達됨.

나. 衣生活 水準

○ 主要 被服類 供給 및 價格實態

구분 품목	단위	가격 (원)	구매방법 및 수량
기성복	착	108	연 1착 배급
작업복	"	60	연 2착 배급
동내의	"	38	연 1착 배급
شم동복	"	62	4년 1착 배급
소매런닝구	개	2.80	연 1착 배급
소매없는 런닝구	"	2.10	연 1착 배급
털모자	"	25	자유구매
비닐구두	켈레	4.50	세대별 연 1켈레 공급
면장갑	켈레	3.50	자유구매
데드롱 셔츠	"	60	"
나일론 셔츠	"	61	"
나일론 스타킹	켈레	12	"
모직천	m	80	"

一 配給되는 衣服類를 除外하고는 價格이 高價로 策定되어 있어
 一般 勞働者로서는 購入에 相當한 經濟的 負擔을 가짐.

○ 階層別 被服着用 實態

구분 직업별	하 기		등 기		보 유
	외출 및 출장	근무시	외출 및 출장	근무시	
노동자	테드롱 T셔츠 테드롱 양복 하의	혼방직 작업복	마직 외투 테드롱 양복	혼방직 작업복	1-2착
사무원	테드롱 Y셔츠 모직 양복 하의	비닐론 혼방작 업복	모직외투 모직 양복 하의	혼방직 솜동복	1-2착
학 생	백색면직 남방셔츠 비닐론혼방 하의 (흑색)	상 동	“다후다” 솜동복 상의, 비닐혼방 하의	상 동	”

- 一般勞動者의 경우 일상 生活과 勞動을 위한 基本的 衣生活
은 保障되나 品位向上, 自己誇示, 奢侈等 社會的 慾求 充足을
위한 衣生活은 想像할 수 없음.
- 衣生活에 대한 北韓 女性의 最大 希望은 “비로도 치마저고
리”를 입는 것이라 함.

다. 住居生活 水準

○ 階層別 住宅配定 實態

주택구분	주택형태 및 구조	입주대상자	비고
특 호	○ 독립가옥 단층 또는 2층 ○ 정원, 냉난방, 수세식 변소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 이상	고급 수입건재품 사용
4 호	○ 현대식 고층 APT ○ 목욕탕, 수세식 변소 ○ 방 3개	○ 정무원 국장, 인민 배우 ○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세대당 20평
3 호	○ 중급이하 단독주택 ○ 신형 APT ○ 방 2개, 부엌, 창고	○ 도급기관 부부장 이상 ○ 중고등학교 교장 ○ 인민군 중좌	세대당 15평
2 호	○ 일반 APT ○ 방 1-2개 ○ 부엌	○ 도급지도원, 기업소 과장 ○ 작업반장, 시군급 과장 ○ 교원	세대당 10평 공동변소 이용
1 호	○ 집단공영주택 ○ 농촌 구옥 ○ 방 1-2개, 부엌	○ 일반노동자 및 사무원 ○ 협동 농장원	세대당 8평 공동변소

- 北韓은 職位와 職級에 따라 住宅을 差等 配定하므로 住宅만 봐도 그 사람의 身分과 地位를 알 수 있음.
- 黨政 高位階層은 海外 富豪들 못지않은 초호화住宅에서 生活하고 있으나 一般 勞動者들은 8坪 公營住宅에서 起居해야만 하는 實情임.

○ 北韓의 階層別 住宅配定率

階層 \ 區分	世帶數 (萬世帶)	人口 (萬名)	住宅配定率 (%)
黨政幹部級	19	95	100
地方機關幹部級	38	190	100
企業所幹部級	62	310	68
一般勞動者級	259	1,295	57
計	378	1,890	65

— 住宅配定은 職位와 職責 優先順位에 따라 配定됨으로 地方機關幹部級 以上은 無住宅者가 있을 수 없고 그 이하에만 無住宅者가 存在함.

— 住宅을 配定받지 못한 住民은 1個 住宅에서 2世帶가 同居하거나 既婚子女와 長期間 한 방에서 同居해야 함.

* 住宅 未配定者와 獨身者를 위해 工場地域에 獨身者 宿所 및 工場社宅을 建立, 臨時 利用케 하고 있음.

— 一般 住民의 住宅 配定은 申請後 通常 2~3年이 있어야 配定되는 實情임.

○ 北韓의 階層別 住居空間

住居空間		階 層			
		黨·政幹部	地方機關幹部	企業所 幹部	一般勞動者
建 坪 (m^2)	家 口 當	66	49.5	33.1	26.1
	1 人 當	13.2	9.9	6.6	5.3
家 口 當 房 數 (個)		3	2	1.2	1.1
1 房 當 人 口 數 (名)		1.7	2.5	3.3	3.3

* 現在 配定받아 起居하고 있는 階層別 住宅構造를 中心으로 算定

— 黨政 幹部級과 一般勞動者間的 住居空間에는 모든 面에서 2.5對1 以上の 差異가 있음.

○ 南北韓 平均 住居空間 比較

(1982年 基準)

區 分	韓 國	北 韓	南北韓 對比
世帶當 建坪	41.4 m^2	22.3 m^2	1.9 : 1
人口 1人當 建坪	9.8 m^2	4.5 m^2	2.2 : 1

* 韓國은 「한국의 社會指標」(經濟企劃院 1983年)

* 北韓의 住居空間 算出表

區 分 階 層	住宅配定世帶數	住宅空間	總 建 坪	備 考
黨政幹部級	19萬 世帶	66 m^2	1,254萬 m^2	20坪
地方幹部級	38萬 世帶	49.5 m^2	1,881萬 m^2	15坪
企業所幹部級	42萬 世帶	33.1 m^2	1,390萬 m^2	10坪
一般勞動者級	148萬 世帶	26.4 m^2	3,907萬 m^2	8坪
計	247萬 世帶		8,432萬 m^2	

(總 世帶數 378萬世帶, 總人口 1,890萬名)

— 北韓 住民中 地方幹部級 以上 57萬世帶(總世帶數의 15%)
만이 韓國의 世帶當 平均 住居空間 또는 1人當 住居空間
以上에서 生活하고 있음.

○ 北韓의 住宅便益 施設

區分 便益施設		住宅中 設置率	備 考
부 엇	입 식	7.7 %	黨政幹部級 以上 家屋
	재래식	92.3 %	其他 全家屋
목욕탕	있 음	7.7 %	黨政幹部級 以上 家屋
	없 음	92.3 %	其他 全家屋
화장실	있 음	23.1 %	地方幹部級 以上 家屋
	없 음	76.9 %	其他 全家屋
상 수 도		約 80 %	農村 一部地域 未設置

* 82年度 韓國은 立式부엌 9.7%, 목욕탕 設置 15%, 화장실 設置 98.5%, 상수도 70.6%임.

— 北韓은 1부엌 2世帶 使用이 農村住宅 및 一般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있는 것으로 看做.

6. 生活 日用品 購買力 評價

가. 家計所得中 購買可用 金額

○ 北韓의 階層別 基本生活費 및 購買可用 金額

(單位 : 원)

階 層 / 區 分	月家計所得額	基本生活費	購買可用金額
副 部 長 級	359	216.40	132.60
8 級 勞 動 者	164	85.59	78.41
一 般 事 務 員	140	84.63	55.37

一 階層別 共通의 으로 家計所得의 60%는 基本 生活費, 40%는 購買可用 金額임.

* 副部長級의 購買可用 金額은 8級 勞動者의 1.7倍, 一般 事務員의 2.4倍임.

나. 購買可用 品目 및 購買量

○ 北韓의 一般事務員 月 食料品 購買可能量

품 목	단위	단가(원)	월구입가능량	비 고
설탕	kg	2	27.7 kg	한국 설탕 10 kg당 6천원
쇠고기	"	7	7.8 kg	
청어	"	1.50	37 kg	
김	100장	7	800장	
새우젓	kg	0.90	61.5 kg	
사과	kg	1.50	37 kg	
냉면	그릇	1	55그릇	
인삼알사탕	kg	7	7.9 kg	
소주	4홉	2	27.7 병	25도, 110홉
인삼주	3홉	4	13.8 병	41.5홉
돼지고기통조림	475g (1통)	3	18.5 통	
오리고기통조림	"	2	27.7 통	

○ 北韓 一般事務員의 衣類購入 可能量

품 목	단 위	단가(원)	월구입가능량	비 고
저급신사복	착	150	0.37	3개월분으로 구입 가능
치마·저고리	"	80	0.7	
나이롱웨타	"	70	0.8	
스타킹	족	10	5.5	
하급의투	착	200	0.28	4개월분으로 구입 가능
중품와이셔츠	"	8	6.9	
가죽잠바	"	180	0.3	
원피스	"	40	1.4	
담 요	개	160	0.35	3개월분
광 목	m	3	18.5	
비로도	"	100	0.55	
우피구두	족	30	1.8	
가죽장갑	켄레	8	6.9	
가죽털모자	개	30	1.8	
비닐샌달	족	8	6.9	

○ 雜製品 및 化粧品 購買可能量

품 목	단위	단가(원)	월구매가능량	비 고
세탁비누	개	1	55.3	한국 개당 250~350 원
치약	"	1	55.3	한국 개당 340~990 원
우산	"	15	3.7	
면도기	"	3	18.5	한국 1,100 원
트렁크	"	15	3.7	한국 고급품 45,000 원
양은솔	"	12	4.6	
선글라스	"	10	5.5	한국 5,000~20,000 원
후레쉬	"	5	11.1	한국 2,000~5,000 원
캐스콘로	"	18	3	
벤찌	"	13	4.3	
항아리	"	12	4.6	
향수	병	2	27.7	한국 최하 20,000
크림	"	2.50	22.1	한국 2,000원~7,000 원
분	갑	2	27.7	한국 2,000원~7,000 원

○ 家電製品 및 耐久性 消費材 購買可能量

품 목	단 위	단가(원)	월구매가능량	비 고
자 전 거	대	250	0.22	
삼 료 차	"	30	1.8	어린이용
T V	"	350	0.16	북한제 14 인치 기준
냉 장 고	"	200	0.28	북한제 소용량
전 기 다리미	개	25	2.2	
선 풍 기	대	70	1.3	고급 외제는 150 원임
레 디 오	"	100	0.55	고급 대형제품
전 기 밥 솥	개	45	1.2	
손 목 시 계	"	150	0.37	북한제, 외제는 250 원 이상
벽 시 계	"	60	0.9	
재 봉 틀	대	200	0.28	



本 文

目 次

1. 序 論	35
2. 北韓의 實質 消費生活 評價를 위한 理論 및 方法	38
가. 社會主義 體制的 消費理論	38
나. 南北韓 住民生活 比較基準과 實態	48
3. 北韓의 消費生活 實態	66
가. 衣食住 生活	66
나. 生活日用品 供給 및 副業	120
다. 賃金水準	133
라. 家計收入 및 支出	142
4. 北韓의 社會組織과 住民統制	151
가. 社會組織	151
나. 住民統制	156
5. 實質 消費生活 評價	175
가. 1人當 가처분소득 評價	175
나. 家計所得 및 支出構造 評價	179
다. 衣食住 生活水準 評價	181
라. 生活日用品 購買可能 水準評價	193
6. 結 論	200



1. 序 論

祖國이 南北으로 分斷된지도 벌써 39年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 期間동안 南北韓 住民들간에는 각기 相異한 體制와 制度下에서 生活을 영위해 왔고 이로 因해 異質的인 가치관과 生活 패턴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南北韓間의 經濟力量을 評價하는 GNP 規模의 차이나 1人當 GNP 또는 1人當 國民所得과 같은 개량화된 지표로서만 南北韓 住民들의 生活實態를 比較해서는 안될 것이다. 實例를 들면 北韓住民들의 消費生活 水準을 比較하는 基準에서 時代的 比較基準은 日帝末期의 비참했던 植民地 生活狀態에 두고 있고, 現在 生活의 比較對象으로는 “헐벗고 굶주리며 거리를 방황하는 남조선 인민”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 住民의 消費生活에 대한 意識構造 속에는 하루에 밥한끼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草根木皮로 연명하던 時期에 비하면 현재의 生活은 한없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北韓 住民이 듣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 住民은 日帝時와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면 北韓住民이야 말로 한없이 다행하고 幸福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比較基準 설정의 非現實性, 非合理性은 北韓住民이 現在 生活을 滿足하게 생각하고 生活에서 오는 여러가지 고통을 극기하도록 하는 명분을 提示해 준 것에 不過한 것이다.

客觀的으로 보면 南北韓住民의 生活이 한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럽

겠지마는 北韓에서 살고 있는 住民들의 內部 意識構造에는 客觀적으로 評價되는 이와 같은 事實을 전혀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韓國 國民들의 消費生活에 대한 認識은 物質적으로는 北韓住民에 비해 훨씬 윤택하고 生活環境이나 社會制度面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안이함에도 不拘하고 精神的으로 느끼는 滿足의 차이는 오히려 北韓住民보다 낮아질 수 있고 실제로도 住民生活로 인한 不平不滿이 相當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論理는 物質文明이 아무리 向上되고 所得이 增大된다고 해도 生活自體에서 오는 불평불만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根本原因은 生活水準에 대한 相對的 評價를 항상 자기보다 앞서 있는 대상을 基準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北韓住民들 內部에서는 상대적인 평가 대상이 없고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의식주 生活 自體를 中央計劃 當局의 計劃과 統制下에 實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配給制 또는 割當制라는 制度下에서 實施되고 生活의 程度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의 대상과 基準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다. 따라서 北韓內部에서도 權力特權層이나 黨員들 生活에 상대적 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그 程度는 그렇게 深刻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상에서 살펴 본 物質的인 현상과 精神的인 滿足의 差異 以外도 北韓에는 물질선호 감정이나 商品을 보는 認識에 있어서도

우리와 相當한 차이가 있다. 즉, 北韓住民들은 解放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徹底히 閉鎖된 社會에서만 生活해 왔기 때문에 先進文物이나, 現代的인 多樣的인 商品을 接할 機會가 없어 商品選別이나 商品選好 感覺이 未だ 現象이다.

또 北韓에서 生産되는 生活日用品 역시 市場性을 考慮해서 生産하는 것이 아니고 計劃目標 達成을 위한 量的 生産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全般的으로 質이 낮고 製品이 多様하지 못하므로 좋은 商品에 대한 선호 感情이 稀薄하다.

이처럼 北韓에서는 날로 急變해 가는 生活情報에 대해 어둡고 政治, 社會制度에서 오는 生活上의 制約이 많기 때문에 同一한 物質環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느끼는 程度나 滿足感에 있어서는 우리와 判이한 差이를 보이고 있다.

以上과 같은 問題를 考慮하지 않고 北韓住民의 實質 生活水準을 평가하는데 있어 흔히들 우리의 概念, 우리의 價値觀, 우리의 水準을 基準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誤謬를 범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北韓住民의 實質 生活水準을 우리의 水準, 우리의 價値觀에서 安이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北韓住民의 立場에서 평가하고 이를 우리의 價値觀에 關聯시켜 평가되어야 合理性과 客觀性이 있을 것이다.

2. 北韓의 實質 消費生活 評價를 위한 理論 및 方法

가. 社會主義 體制的 消費理論

(1) 消費 및 消費者 選擇에 관한 一般理論

모든 經濟活動은 消費를 궁극적인 目標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담스미스는 “消費는 일체의 生産에서 唯一한 最終點이며 目標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消費가 現代 經濟理論에서 가장 중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는 뜻을 包含하는 것이다.

그러나 嚴格히 말해서 “消費”와 “消費支出”과는 확연히 區別된다. 즉, 어떤 내구재를 購入하기 위하여 貨幣를 支出한다고 하여도 그 내구재는 오랜 期間에 걸쳐서 消費되므로 消費와 消費支出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現代 經濟理論에서는 兩者를 同一한 理論으로 생각하고 있다.

消費理論에는 미시적 消費理論과 거시적 消費理論이 있는데 미시적 消費理論은 個別 經濟의 立場에서 消費를 다루는 것이며 멩거 (Menger, C)의 效用理論에서 出發하여 파레토 (Pareto, V.F.D), 히크스 (Hicks, J.R)의 消費者 選擇의 理論으로 發展되었다.

거시적 消費理論은 一國 全體로서의 消費를 說明하는 것이며, 消費가 經濟 순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所得·貯蓄 및 投資와는 어떤 關係를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케인즈의 國民所得(Y)은 그 一部가 消費(C)되고 나머지는 貯蓄(S)으로 向한다. 이 所得중에서 점하는 消費의 比率,

즉 $\frac{C}{Y}$ 를 消費性向 또는 平均消費性向이라고 하며, 所得의 增加分 (ΔY)에 대한 消費增加分 (ΔC)과의 比率 ($\frac{\Delta C}{\Delta Y}$)을 限界消費性向이라고 한다.

消費와 投資는 “有效需要”를 構成하므로 消費의 크기를 決定하는 消費性向은 所得水準 決定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

消費의 크기는 所得水準의 變化에 따라 變化하게 되므로 所得과 消費와의 사이에는 $C = f(Y)$ 라는 함수관계가 成立되는데 이것을 消費함수라 한다.

國民所得 (NI)은 個別所得의 總화이므로 거시적 소비함수는 개별 소비함수의 總화와 같다.

다음 消費者 選擇理論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消費者 選擇理論 (Theory of choice)은 사람이 合理的으로 行動하는 한 재화의 需要量과 供給量を 어떤 基準에 따라서 決定할 것인가를 밝히려는 理論으로서 現在로는 一般 均衡理論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주가 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選擇理論은 消費者 選擇의 理論과 企業選擇의 理論으로 區分되는데 消費者 選擇理論은 一定한 所得額을 가진 消費者가 市場에서 最大의 滿足을 얻기 위하여 商品의 購買量を 決定하려는 경우의 需要計劃과 편성원리를 說明하는 것이며 企業選擇理論은 一定한 技術的 제약생산 함수하에서 生産者가 最大의 利潤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의 生産計劃 편성을 問題로 하는 것이다.

이들 消費者 選擇과 企業選擇의 두개 問題는 언제나 選擇이라는 經濟行爲로서 集中的으로 表現되며, 이를 解決하기 위한 分析 용구가 언제나 限界原理를 基礎로 한 극대이론에 의한다는 점에 基本的

인 特徵이 있다.

그러나 人間의 合理主義的 行爲가 오늘날의 社會制度에 있어서 論理的인 結論 그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問題다.

코먼즈 (Commons, J.R)의 말을 빌리면 合理主義的 行爲는 그것이 經濟的이건 아니건 간에 社會的 制約, 즉 制度 속에서만 存在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合理主義의 정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選擇原理를 이루는 合理主義를 分析하려고 하면 오늘의 制度的 合理主義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것을 前提로 할 경우에, 그를 해명하는 手段으로서 限界原理에 의한 分析이 취해지는 것은 當然하다.

다만, 個個의 分析用具로서는 초기의 限界효과 및 限界생산력의 理論 대두 이래 여러가지 改善과 修正이 가하여져 왔다.

특히 消費者 選擇의 理論에 있어서는 限界효용의 價値性을 둘러싼 問題를 거쳐서 限界 대체율의 概念이 이루어진 것 등 적지 않은 變遷이 있었다.

차등별 曲線에 의한 分析 등도 이에 따른 分析方法이고 슬루즈끼 (Slutsky) 방정식의 成立은 選擇理論에 비약적인 發展을 가져왔다.

(2) 消費에 대한 北韓의 見解

北韓은 消費에 대해 “사람들의 各種 欲望을 充足시키는데 있어 物質的인 富를 利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資本主義 經濟下에서 消費를 經濟活動의 궁극 目標로 보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人間의 欲望充足을 위한 手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北韓側의 정의에 의하면 消費는 生産的 消費와 非生産的 消費로 나누어지는데 一般的으로 消費라면 非生産的 消費를 가르킨다고 하고 있다.

消費는 “재생산의 한계고리(한계효용)로서는 生産에 對立되는 概念이며, 國民所得 利用의 側面에서는 축적에 對立되는 概念”으로 보고 있고 生産을 出發點으로 하며 交換 및 分配를 통하여 生産과 連結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 외에도 北韓은 生産과 消費間의 關係를 “生産은 消費規模와 構造를 규정하고, 消費는 生産에 積極的으로 反作用한다”고 보면서도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되어 있고, 生産目的이 勤勞者의 生活向上에 있는 社會主義下에서는 “生産과 消費가 적대적 모순관계에 놓이지 않으며, 國家의 統一的 指導밑에 計劃的으로 연계된다”고 하고 있어 北韓에서의 消費는 政權當局의 目的에 따라 任意 조정 統制될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축적과 消費의 關係에 있어서도 國民所得 利用의 두 側面이고 서로 相關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축적의 增大는 消費를 감소시키고, 消費의 增大는 축적을 감소시키는 相互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다”고 說明을 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主義下에서는 역시 축적과 消費 사이의 적대적 모순 關係가 있을 수 없고, 人民福祉 增進이라는 하나의 目的下에 存在한다고 說明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다음 消費者 選擇理論에 있어서도 社會主義 경제하에 있어서는 優越성이나 選擇의 問題에 대해 極히 작은 比重을 두고 있는 것이 特徵的인데 그 이유로서는 ① 經濟의 一次的인 關心이 生産力의 量

的 增大에 두고 있다는 점, ② 強力한 國家主導型 經濟體制 確立 때문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소비재 生産量은 消費者 選擇이 더 이상 作用하지 않을 水準을 넘었고 소비재 生産의 增加는 소비재 在庫의 增加와 이와 關聯된 非效率的 資本配分 및 非生産的 投資로 인한 經濟的 損失을 초래하고 있다. 즉, 北韓과 같은 초중앙집권적 計劃經濟 體制下에서는 公共投資部門의 資源需要를 充足시키는데 一次的인 目標가 있으며, 經濟開發計劃은 빈약한 資源에 대한 急激한 需要增加가 의면된채 推進되기 때문에 消費者 選擇의 存在 自體가 무시되는 것이다.

(3) 國民厚生에 대한 諸般理論

一般的으로 經濟政策의 目標는 時代와 國家에 따라 상이한데 사유재산을 基盤으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社會에 있어서나 또는 生産手段이 國家의 全面管理下에 있는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나 國民經濟의 持續的 成長에 따른 富의 增大에 두고 있음은 共通의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그 理由는 經濟行爲 自體가 自由主義體制나, 共產主義體制를 초월하여 어떠한 國家에 있어서도 共通의 根本課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도 經濟政策의 目標가 國民福祉의 增進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經濟學 全體에 賦與된 前述한 根本 課題를 어떻게 解決하여 國民의 生活를 物質的으로 向上시킬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고전학과에 있어서 다비드 리카르도 (David Ricardo , 1772 ~ 1823) 는 社會 總生産物에서 生産活動에 소요된 社會的 生産費

를 差減한 純收入을 經濟的 厚生の 참다운 尺度로 보았기 때문에 總체적 福祉는 오히려 分配의 增大에 關係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고전학파는 經濟福祉를 富의 축적이나, 그의 원천으로서의 利潤增大의 形式으로 보았지만, 그 概念은 進歩된 産業社會의 諸問題를 取扱하는데 不充分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福祉問題에 있어서의 進一步는 신·고전학파의 알프레드 마셜 (Alfred Marshall, 1842 ~ 1924) 이나 피규 (Arther Cecil Pigout, 1877 ~ 1953) 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피규는 厚生經濟學的 性質을 發展시켜서 近代의 主體의 基礎를 形成하였는데 國民經濟的 厚生은 大體로 國民所得의 크기와 그 社會構成要員의 分配樣式에 依存하며, 여타의 事情이 같은 한 國民所得의 增加는 一般的으로 經濟的 厚생을 增進시키고, 國民所得의 分配가 가난한 者에게 有利하게 變化하는 것은 經濟的 厚生과 더불어 社會 一般의 厚생을 增進시킨다는 것을 지적하고 生産의 增大 및 分配의 均等이 결국 總체적 福祉의 增進이라는 것을 示唆해 주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厚生の 增進은 生活水準의 上昇과 이에 對應하는 所得水準 및 生活水準의 一般의 上昇이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데 피규의 見解에 있어서 社會的 經濟福祉의 최적량은 完全競爭 그대로는 達成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최선의 所得分配를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政府의 施策이 必要하다.

둘째로, 소위 外部 經濟를 達成하여 經濟活動의 範圍를 擴大하기 위하여서는 政府 기능의 擴大도 必要하기 때문에 결국 피규에 이

르러 福祉問題의 커다란 變化와 함께 經濟政策의 目標과 그 必然性이 더욱 뚜렷해 진 것이다.

그러나 福祉問題가 以上과 같은 發展을 경과하고 있을 무렵 '30年代에 일어난 대공황은 經濟政策問題에 있어서도 새로운 課題를 要請하게 되었으며, 고전경제학에 있어서 最大의 축적이 그들의 目標였던 것과 같이 '30年代에 있어서는 完全雇傭問題가 支配的인 經濟的 要請으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現代的 福祉問題를 論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現代的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過去로부터 많은 전승물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케인즈에 의하여 過去 경시되었던 고전적인 經濟成長의 問題가 대두되고 있으며, 피규의 所得分配問題도 결코 現代的 關心에서 살아진 것은 아니다. 또한 '30年代의 大不況이 다시 同一한 심도로 再發할 可能性은 적다 하더라도 인프레와 失業問題는 의연히 남아 있으며, 1세기 前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雇傭의 安定에 政策的 課題를 설정하는 케인즈적 方向의 影響은 現在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經濟政策의 主要課題는 여러가지로 分類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요한 것을 간추려 볼 때 아담스미스는 첫째로,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安定된 雇傭水準, 둘째로, 인프레 없는 物價水準의 安定과 均衡的 所得分配, 셋째, 市場技能을 통한 資源의 최적 分배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持續的인 成長이라 함은 1人當 實質所得의 持續的 增加를 意味하며 소위 經濟福祉의 實質的 內容을 말하는 것으로서 生産力의 增加가 1人當 平均所得을 增加시키는 狀態가 經濟成長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成長이 없이는 經濟的 繁榮도 福祉의 增進도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다만, 現代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고 전학파의 時代와는 상이한 狀況下에서 그들이 言及하지 않는 經濟 成長의 理論的 내지 政策的 研究에 着手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행이 '60年代와 '70年代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資源의 “최적배분”에 의한 經濟成長率은 共產主義 經濟體制보다도 오히려 서방자유주의 經濟體制가 훨씬 높다는 것이 特徵이다. 또한 인플레이 防止와 雇傭問題는 自由主義諸國이 當面한 問題로서 經濟體制 自體가 부단한 동요를 일으켜 國民生活이 困難하게 되는 現實的 要請에서 問題化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國際經濟 政策面을 볼 때 從前의 봉건經濟 體制下에서 開放經濟體制로 利行됨에 따라서 國際經濟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일국의 經濟政策을 考慮할 경우 國際經濟 環境을 무시하고서는 正確한 國內 經濟政策樹立을 期待할 수 없다.

그러므로 國際的 側面에서는 國際經濟의 安定 등을 표방하고 있는 바, 貿易의 다양화, 국제수지 均等問題, 통화의 交換性 등이 政策的 課題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自由主義 제국에 있어서는 開放體制下에서 地域的인 특화, 분업의 擴大, 資本의 輸出入 등 급격한 發展을 圖謀하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比하여 共產圈 經濟體制는 閉鎖體制下에서 技術革新의 落後, 地域的 특화의 除限된 範圍內에서 낮은 水準의 經濟發展과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다.

現在 蘇聯을 包含한 東歐諸國은 '6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貿易의 擴大로 인하여 그들 潛在貿易量을 增大시키고 있으나 反面에 北韓과 같은 經濟發展이 落後된 共產諸國은 아직도 政治的 명분을 앞세워 閉鎖體制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의 제약 要因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以上과 같은 고전경제학파에서 대두된 經濟的 厚生問題와 關聯하여 맑스의 分配論을 보면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中心으로 資本主義 社會에서 發生하는 勞·資間에 對立, 企業獨占의 심화, 궁극적으로 社會的인 總需要의 減退로 인한 公황과 더불어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崩壞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맑스의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은 分配問題를 中心으로 展開하고 있는데 剩餘價值說의 根本的인 問題點은 모든 生産物의 價値나 利潤의 根據가 人間의 勞動力에 의해서만 創造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특정의 재화를 生産하기 위하여서는 勞動力 以外에도 資本이라든가 原料, 企業能力, 기타의 生産要素 등이 必要한 것인데 資本에 의해서 機械나 原料가 반입되고 勞動者가 雇傭되어 비로소 商品이 生産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화의 價値는 資本과 勞動의 結合으로 生産되므로 그 價値는 반드시 資本과 勞動의 양편에 歸屬되어야 하나, 맑스에 있어서는 오직 勞動力만으로 創造되기 때문에 勞動者가 價値의 全部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根本的으로 맑스 이전의 고전학과 經濟學의 分配問題와 이로부터 연유하는 厚生問題가 勞·資間의 均衡을 어느 정도 喪失한데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西歐産業社會에 있어서 資本축적과 生産性과의 關係는 새삼 強調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며, 資本의 生産성은 認定하지 않고 勞動力으로 生産된 剩餘價値를 搾取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한 것이며, 오히려 西歐産業社會의 公同적인 양상은 GNP의 增加와 더불어 階層間的 所得配分은 점차 더욱 平準化 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共產圈의 蘇聯이라든가 東歐諸國에 있어서는 오히려 投下資本에 대한 利率과 收益性이 더욱 重要視 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맑스는 勞働者의 賃금이 항상 再生産 過程에서 최소한의 生存을 보장하는 線에서 決定된다고 주장하였으나 經濟가 高度로 發展한 歐美諸國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勞働者의 賃金도 勞働生産性과 같이 항상 上昇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最近에 와서 先進諸國은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를 採擇하여 노임의 上昇率을 勞働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인 措置를 취하고 있는 현상은 오히려 맑스가 豫測한 것과는 크게 相反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맑스”의 理論이 妥當하다고 하면 賃金水準은 勞働者의 生存線을 보장하는 線에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같은 線以上の 것을 意味한다고 解析한다면 맑스의 剩餘價値說은 결국 無意味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맑스의 豫言대로 勞働者에 대한 搾取가 存在한다면 資本主義社會에서 勞·資間的 不均衡 보다도 오히려 共產主義 社會에 상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共產主義 國家에서 맑스가 말한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주로 軍事力 增強이라든가 獨裁政權 強化에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勞働

價値說과 剩餘價値와 勞動者들의 實質的인 厚生問題는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設備와 技術의 革新으로서 勞動生産性を 제고시키려는 努力보다는 일방적인 勞動力 投入만을 強調함으로써 全體的인 經濟發展마저 침체되고 있다는 事實을 볼 수 있다.

나. 南北韓 住民生活 比較基準과 實態

(1) 物量生産 擴大側面

經濟成長의 궁극적인 目標은 國民生活을 向上시키는 福祉社會를 實現하는데 있다. 지난 '60年代 및 그 以後 韓國經濟의 開發戰略은 高度成長, 劃期的인 輸出의 增大라는 成長有形을 追究하여 왔다.

이러한 過程 속에서 生産力이 크게 확충되어 國民의 物質消費支出 水準의 平均화가 이루어지고 生活環境 및 社會 서어비스 水準이 크게 改善되었다. 이와 함께 物價도 安定되어 國民生活의 安定的인 기반이 強化되었다.

'60年代에 推進된 두 차례의 經濟開發 計劃을 통하여 工業化가 推進되었으나, 第1次 計劃期間 중에는 輸入 대체적인 기간산업의 建設에 注力하여 石炭, 電力 등 에너지 産業과 그리고 肥料, 시멘트, 정유 등 기간산업이 開發되었고, 第2次 計劃期間 중에는 철강, 機械, 石油, 化學 등 重化學工業의 開發이 促進되는 한편 自動車, TV, 냉장고 등 내구성 소비재의 國産化도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産業生産은 1960~1972年 期間 중 5.8倍로 늘어나 輸出의 增大와 物質生活의 向上에 기여하였다.

또한 1次 및 2次 計劃의 주요한 開發目標였던 食糧生産도 農業生産 基盤의 확충과 農産物 價格 支持政策에 의하여 1962 ~ 1971年 期間중 食糧生産은 年平均 2.4%씩 늘어나 1961年の 5백 90만톤 水準에서 1971년에는 7백 30만톤 水準으로 1.2배가 되었다.

北韓은 1946年 3月 5日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原則으로 하는 土地改革을 斷行하여 農村에서 勞農同盟을 기초로 한 黨의 단계적 基盤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農村에서의 階級的 構造가 變更되어 過去의 中農, 雇傭農, 貧農들이 支配勢力으로 登場하게 되었으며, 1946年 8月 10日 重要産業 國有化 法令을 公布함으로써 生産機關들을 이른바 全體人民의 所有 形態로 轉換시킴으로써 勞動階級을 核心으로 한 農民이 共産黨의 基本 階級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어 1958年 8월에 이르러서는 農業協同化를 이룩함으로써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完成하고 計劃的 社會主義 生活樣式에 따라 모든 住民들에게 集團生活를 하도록 制度化 하였으며, 配給制의 實施, 양권의 使用, 都市에서 “아파트”群의 建築과 農村集團 住宅의 建立 등 集團生活가 主導되는 社會制度化가 完成되었고 最近에는 밥工場, 반찬工場 등을 建立하여 식사 問題에 까지 社會主義的 計劃 樣式을 適用시키고 있다.

다음 南北韓 生産構造의 變化樣相을 보면 韓國은 産業發達과 병행하여 生産構造의 變化도 크게 나타났는데 '60年代 초반부터 보이기 시작한 産業構造의 變化는 過去의 食料品, 飲料品, 紡織物 등 輕工業 製品 生産 일변도에서 石油化學製品, 電氣, 電子製品, 船舶, 自動車 등 輸送用 機械, 各種 플랜트 生産이 주류를 이루게 되

있고, 最近에 이르러서는 반도체산업, 情報産業 등 尖端産業 比重이 크게 增大되고 있는 등 많은 變化를 보이고 있다.

또 同一한 製品 중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商品, 다양한 商品이 生産되고 있어 住民들의 物質生活 向上은 물론 物質生活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60年代 초반의 物質生活 水準이나, '80年代 중반의 物質生活 水準에 있어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商品의 內容과 다양성 면에 있어서도 별다른 進展이 없기 때문에 物質生活의 變化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84年末頃부터 北韓은 人民奉仕革命, 輕工業 革命 등을 促求, 住民들의 物質生活와 關係되는 부문에 政策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措置에 수반되는 과감한 投資가 뒤따르지 않고 있고 經濟開發戰略과 政策方向에서도 繼續 重工業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實效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地方行政機關의 기능을 強化하여 地方豫算事業으로 推進하는 대부분이 人民 消費品 生産과 關係되는 부문이므로 앞으로 消費品 生産面에서의 약간의 向上은 期待되기는 한다.

(2) 雇傭 및 所得增大 側面

韓國의 持續적인 高度 經濟成長은 物質生産의 增大와 함께 雇傭도 크게 增大시켰고, 就業構造도 크게 變化시켰다.

就業人口에 있어 1963年度 795만명이던 就業者가 1972년에는 1,003만명으로 늘어났고 1983년에는 다시 1,513만명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失業者는 1963年度 完全 失業者가 71만명이던 것

이 1972年度에는 47 만명으로 줄어들었고, 1983年度에는 61 만명으로 약간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失業率에 있어서는 1963年이 8.1%, 1972年이 4.5%이던 것이 1983년에는 4%로, 1972年比 0.5% 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就業構造의 變化를 보면 1963년에는 農水産 部門이 63.2%, 鑛工業이 8.6%, 기타 서비스 部門이 28.1%였고, 1972年은 農水産業이 50.5%, 鑛工業이 14.2%,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가 3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83年은 農水産業이 29.7%, 鑛工業이 23.3%,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가 47%를 차지하는 등 큰 變化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北韓의 就業人口는 1960年 321 만명에서 1972年에는 531 만명으로 늘어났고, 1983年은 840 만명으로 늘어났으나 産業別 就業率은 1972年度의 農水産 部門 40%, 鑛工業 部門 46%, 社會間接 部門 및 기타 14% 水準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北韓은 모든 經濟活動이 中央當局의 計劃에 의해 劃一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方針下에 住民의 職業選擇, 居住 移轉의 自由마저 計劃當局이 指示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自由經濟體制下에서 볼 수 있는 完全 失業이나 자의에 의한 失業은 있을 수 없다.

다음 所得 및 分配構造面에서 살펴보자.

韓國의 經濟成長은 國民所得 水準에 集約적으로 反映되어 1人當 國民 總生産額이 1961年度에 83 弗이던 것이 1972년에는 306 弗로 4倍 가까이 늘어났고 1983년에는 1,884 弗로 1972년에 비해 무려 7.5倍나 增大되었다.

또한 國民所得의 分配構造別로 보면 民間部門과 정부 부문에 있어서 정부 부문에 대한 分配率이 다소 높아졌으나 民間部門에 대한 分配率이 繼續 높아지고 있어 消費 및 貯蓄增大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所得源泉別로도 勞動所得 分配率이 繼續 上昇되어 最近 數年間을 除外하고 給與所得이 크게 增大되었으며, 個人所得중 財産所得이 繼續 늘어나 個人所得의 多變化가 이루어졌다.

또 都市 勤勞 家計에 있어서나 農村家計에 있어서 勤勞所得이나 農家所得 以外에 기타 所得 및 兼業 所得의 比重이 높아졌거나 多變化 되어 所得原이 크게 增大되었다.

한편 北韓의 所得水準은 1人當 國民所得額에 있어 1961年은 韓國의 83 弗에 비해 거의 2 倍나 되는 152 弗이던 것이 1972年은 韓國에 비해 뒤떨어진 288 弗, 1983年은 765 弗을 記錄하고 있는 등 所得增大의 幅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있다.

北韓에 있어서의 所得分配는 그 체제상 私有財産과 個人企業을 認定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 個人部門과 公共部門(西方側 概念에 따르면 法人企業部門과 政府部門을 統合한 것)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北韓의 1次 分配所得을 이 같은 部門으로 나누어 보면, 個人部門보다 公共部門의 所得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個人所得 水準을 比較的 낮은 水準에 묶어두기 위하여 國民所得의 1次 分配 過程에서 “社會를 위한 勞動에 該當하는 純生産物”의 比重을 높였던 것을 反映하고 있다.

社會화된 企業 및 協同團體의 分配 部門이 個人所得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經濟 주체별 1次 分配 所得에 있어서 個人

所得의 比重은 1960 年代의 48.8 %에서, 1965 年에는 37.0 % 水準으로, 그리고 1970 年에는 33.6 %, 1980 年에는 30 %로 繼續 低下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北韓이 國民所得의 1次 分配에 있어서 社會主義 經濟組織의 基本原理에 따라 個人的 需要의 充足보다 集團적으로 充足하는 需要를 우선한데 기인하는 현상이며 經濟規模의 擴大가 住民所得 및 住民生活의 向上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던 事實을 反映하고 있다.

다음 南北韓의 賃金水準 變化를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의 産業別 賃金水準의 推移를 보면 1960 ~ 1972 年 期間중 鑛業 部門 生産從業員 日當 給與額은 명목상으로 7.4 倍 實質적으로 1.7 倍가 增加되었다. 또한 農業 部門의 日當 平均 노임은 1960 ~ 1971 年 期間중 명목상으로 7.5 倍, 實質적으로 2 倍가 되었고, 1972 ~ 1983 年間에는 명목상으로 11.3 倍, 實質적으로는 2 倍 增加되었다.

以上과 같이 産業別 賃金水準이 높아졌던 것은 勞動生産性의 向上과 양질의 勞動力 確保를 위해 賃金水準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과 農村에 있어서는 勞動力 不足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한편 所得水準의 상승에 따라 都市家計 및 農家 그리고 産業別 賃金水準과 性別 賃金水準間의 차이가 줄어들어 平均화 되는 현상이 發生하였다.

北韓에서는 賃금이 곧 勞動所得을 意味하며, 國家가 社會主義 分配原則에 입각하여 勞動의 質과 量에 따라 勞動者, 事務員에게 貨幣的 形態 또는 實物的 形態로 支給되는 國民所得의 한 部門을 意味한다. 즉, 賃金은 國家生産過程에서 消費된 勞動者들의 勞動力의 再

生産을 보장하여 經濟成長에 따라 그들의 生活向上을 위하여 利用되는 分配의 한 形態를 意味한다.

北韓에서 勞賃支拂 形態는 정액노임, 도급노임, 반도급노임, 가급금과 상금 그리고 一部 工業部門에 從事하는 勞動者에 대하여 作業班 優待制가 適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에서 賃金基準이 決定된 것은 1949年 “內閣決定 第196號”이지만 一般的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중에서도 유해 노동 從事者들과 같이 힘든 勞動에 從事하는 者가 더 많은 賃金を 받게 되어 있다. 또한 同一 職種에서 일하는 勞動者라도 勞動의 質(熟練度나 生産性)에 따라 급수가 決定되고 그것에 의하여 賃金水準은 變化한다.

一般的으로 事務職에 勤務하는 者는 技術職에 從事하는 者보다 賃金水準이 낮은 것이 一般的 現象이나 黨事業을 關連하는데 이바지하는 職種에 대한 報酬는 相對적으로 높은 편이다.

北韓이 發表한 賃金統計와 賃金 改正에 關한 資料를 토대로 하여 貨幣賃金の 推移를 보면 1949 ~ 1956年 期間중에는 65%가 상승하였으나 1950 ~ 1960年 期間중에 賃金 指수가 165에서 386으로 2.3倍 以上 上昇하고 있다. 그러나 實質賃金の 推移를 보면 1949 ~ 1956年 期間중에는 오히려 實質賃金 水準이 떨어져 이 期間중의 貨幣賃金 增加가 實質賃金の 上昇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56 ~ 1960年 期間중에는 實質賃金 指수도 98에서 203으로 늘어나 實質賃金 水準이 이 期間중에 2倍를 다소 上廻하는 水準으로 제고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實質賃金の 上昇率은 貨幣賃金の 上昇을 하회하였다.

한편 1960 ~ 1964年 期間중 貨幣賃金은 6.1%가 늘어났으나 實質賃金은 7.4%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62年度에 都賣物價를 引下 調整한 결과 實質賃金을 높이 評價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1960 ~ 1970年 期間중 北韓의 消費者 物價는 年平均 4.1% 程度 騰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같은 物價上昇 要因을 勘案하면 1960 ~ 1970年 期間중 實質賃金은 1960年 對比 40% 또는 그 이하로 늘어난데 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71年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는 일체의 賃金引上이 없었던 것이 특이하다.

(3) 消費構造의 變化側面

南北韓間의 個人消費 性向과 社會的 消費의 變化 側面을 보면 韓國은 經濟成長에 따라 假處分 所得이 늘어나게 되자 民間消費支出이 1960 ~ 1972年 期間중 名목상으로는 14.6배가 늘어나고 實質的으로는 2.4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民間消費率은 1960年の 84.1%에서 1972년에는 73.7%로 低下되었다.

한편 經濟規模가 커짐에 따라 民間消費率은 1960年の 84.1%에서 1972년에는 73.4%로 低下되었고 1982년에는 65.5%로 크게 내려갔다.

다음에 民間消費 支出의 構成을 보면 음식물비의 比重은 1970年代初의 50%대에서 1980年代初에는 41%대로 크게 低下되었던 反面에 피복비나 雜費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民間消費支出에서 짐하는 保健, 教養, 文化關係 支出을 代表하는 雜費의 비중은

1972 年의 23.9 %에서 1983 年에 26.5 %로 높아져 民間消費支出의 質的變化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都市 勞動者 家口의 支出은 家計費와 租稅公課負擔 負債利子支出로 構成되어 있으나 그 비중의 상대적 變化를 보면 家計費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漸次 低下된 反面에 租稅公課 및 諸負擔金 등 非消費支出의 비중이 繼續 높아지고 있다.

이는 都市家計의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個人的 消費需要와 함께 社會的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負擔이 增加되어 왔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의 國民總支出중 消費支出은 1960 年을 보면 北韓貨로 25 億 9 千圓에 달하고 있었으나 1970 年에는 50 億 5 千萬圓, 1980 年은 249 億 6 千萬圓으로 각각 늘어났다.

北韓의 國民總支出에 있어서 消費支出이 占하는 비중은 1960 年의 79.7 %에서 1962 ~ 1964 年 期間중에는 71 % 水準으로 높아졌으나 1968 年 以後 68 %로 急落하여 1970 年 以後에는 67.3 %라는 매우 낮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1961 ~ 1964 年 期間중 個人消費는 年率 3.3 %의 比率로 늘어나고 1965 ~ 1969 年 期間중에는 年率 4.1 %의 比率로 늘어났을 따름이며 1965 ~ 1969 年 期間중의 人口增加率은 2.7 로 上廻하지만 이 期間중 財政負擔率(收入基準)이 年率 7.4 %로 늘어났던 사실을 勘案할 때 그러한 財政負擔의 增加가 去來稅負擔도 크게 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民間部門의 實質的 消費水準은 거의 固定되었거나 혹은 低下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에 있어 社會的 消費는 個人消費와 달리 7 個年 計劃期間중

年率 8.1% 程度로 늘어났으나 이는 1970年 政府消費水準이 전년비 크게 줄어 들었는데 기인하며 1960~1969年 期間중에는 年率 9.88%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社會的 消費의 비중(대 GNP 比率)은 1961年の 30.9%에서 1969년에는 35.6%에까지 제고되었고 그 反面에 個人消費 水準은 1960年の 48.8% 水準에서 1969년에는 32.4%까지 低下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에는 個人消費 支出의 規模가 前年比 29.6%가 늘어나 28億 5千萬원에 達하게 되고 GNP에 대한 비중도 38.1%로 제고 되었으나, 이는 7個年 計劃期間中 거의 固定되다시피한 賃金水準을 31.5%나 인상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1970年代에 實施한 6個年 計劃과 1977년에 着手 1984년에 끝나기로 된 第2次 7個年 計劃에서는 消費支出에 대한 구체적 發表를 하고 있지 않으나 實質 住民生活面을 보면 第1次 7個年 計劃期間인 1960年代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社會構造下에서 消費支出을 制限하는 根本的인 原因을 보면 첫째로 共產社會가 지닌 體制上의 問題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 計劃經濟에 입각한 消費者 選擇의 自由를 無視하는데 있고, 셋째로 消費支出 性向을 제약하는데 있다.

다음 農家 家計의 支出을 보면 韓國은 家計費 및 租稅公課 諸負擔金 등 非消費支出을 합한 農家 家計支出은 1971年の 255,233원에서 1982년에는 3,257,832원으로 13倍의 規模로 늘어나고 物價上昇을 조정한 實質的인 支出도 1.7倍가 늘어났다. 또한 農家家計支出의 構成을 보면 都市家計와 달리 租稅 및 公課負債利子 등 非消費支出의 상대적 비중이 繼續 低下되고 있으나 이는 農家の

稅負擔이 繼續 경감된 것과 農村의 고리채 整理에 이어 農家金融이 擴大된 것과 그 金利가 引下된데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農家の 消費支出에 있어서도 음식물비의 비중은 1972年の 48.2%에서 1982년에는 33.3%로 크게 低下되었던 反面에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잡비의 비중이 모두 높아져 都市勤勞者 家口와 같이 그 消費類型이 變化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以前에는 兩者間的 차이가 컸으나 1970年代 以後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都市와 農村間的 生活環境 차이와 農村의 貧乏한 生活水準을 反映시켜보면, 家計收支上的 剩餘는 都市家計보다 越等히 높을 뿐만 아니라 繼續 늘어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住民의 生計費 支出構造는 勞動者, 事務員 구분과 협동농장원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生計費는 社會 구분別 住民들이 購入한 商品價格과 奉仕料金 그리고 其他 支出로 構成되고 있다.

勞動者, 事務員 세대의 生計費 構成을 살펴보면 1970年度 음식비는 44%, 피복비는 33%, 家具類 購入費는 2.4%, 燃料 및 조명비는 4%, 文化衛生費는 16%이다. 北韓도 1970年 以後에는 “엔젤” 계수가 감소되었고, 文化衛生費, 피복비는 增加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協동농장別 生計費 支出構造를 살펴보면 1970年度의 음식비는 21.1%, 피복비는 22.6%, 燃料 및 조명비는 3%, 그리고 文化衛生費는 10%에 달한다.

(4) 生活環境 側面

國民의 生活水準은 貨幣的인 側面에서 把握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左右된다. 즉, 國民의 生活水準을 規定하는 非貨幣的 요인을 生活水準 關聯指標와 生活環境 關聯指標로 大別하여 보면 전자에는 營養狀態, 健康, 教育, 餘暇의 이용도, 住宅條件 安定性 및 社會保障과 같은 指 지표가 包含되고 후자에는 環境衛生, 社會福祉, 教育施設, 安保, 방재시설, 通信, 交通, 保健, 衛生에 관한 指 지표가 包含된다.

韓國에 있어서 所得水準의 上昇은 國民의 食生活를 多樣化하고 營養狀態를 向上시켰다. 이는 주식인 米穀消費量(1人 1日當)이 1971年의 365g에서 1982년에는 379g로 약 4% 程度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1日 1人當 總열량(카로리) 攝取量은 1971年의 2,469 cal에서 1982년에는 2,588 cal로 늘어났다.

1960年代에 韓國人의 平均 수명도 현저하게 높은 水準에 達하게 되었다. 1960年에 韓國人의 平均 수명은 52.7歲였고 그중 男子가 51.6歲, 女子가 53.7歲였으나, 1970년에는 平均 수명이 66.8歲, 男子가 64.8歲, 그리고 女子가 68.7歲로 向上되었으며, 1980년에는 平均 수명이 67歲로 늘어나 世界 상위권에 達하게 되었다.

國民生活의 向上에 있어서 國民의 潛在的 能力開發 및 資質向上은 基本的인 前提 條件이지만 1960年代 및 1970年代初에 걸쳐 各級 教育機關에 就學하는 學生數는 크게 늘어났다.

1960~1971年 期間중 住宅棟數는 約 1百萬棟이 늘어나고 住宅 不足率은 1970年의 20.6%에서 1969년에는 25.8%까지 높아졌으나 1970年에 住宅建設이 크게 늘어나 住宅不足率은 22.2%로 低

下되었고, 1971年以後에 있어서도 大體로 그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社會保障制度는 아직도 初期段階에 놓여 있으며, 일부 대상별로 公務員 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이 分立 實施되고 있다.

이중 산재보험은 勞動廳이 管掌하고 있으며 1964年 設置 當時에는 年間賣上高 5百萬元 以上の 業體에 適用하였으나 年次的으로 그 대상과 規模를 확장하여 1972年부터는 從業員 20名 以上の 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를 대상으로 하여 이 制度의 惠澤을 받게 되었다.

經濟 各部門間 그리고 職種間에 있어서 賃金の 격차가 있기 때문에 北韓經濟에 있어서도 住民의 生活는 불평등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貨幣所得도 불평등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貨幣所得의 불평등한 分配(支出될 勞動에 對應하는 불평등한 金銭적 보수)를 制限하기 위하여 보통 두가지 方法이 利用되는데 그 하나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大衆消費材의 價格을 낮게 定하는 반면 사치품의 價格은 높게 策定하는 方法이고 또 다른 하나는 一般的 豫算에 의하여 攄부되는 保健, 教育, 住宅 등 社會서비스를 擴大시키는 方法이다. 北韓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비스는 매우 저렴한 價格으로 攄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러한 서비스 財源은 주로 社會主義 經理 수입(去來收入金(去來稅)과 國家企業利益金)으로 마련되어 純粹한 社會的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共產主義 宣傳을 위한 目的으로 있어 現實的으로 그 “코스트”와 住民負擔이 매우 높아질 可能性이 크다.

豫算支出面에서 살펴보면 總支出중 人民福祉를 위해 社會文化費가 1960~1964년까지는 20% 이상을 견지하였으나 1965年度以後에는 20% 이하로 漸次 낮아지다가 1972年度에는 다시 22.2%로 증가하였고, 1973년에는 25.4%로 한때 크게 높아지더니 그후 漸次 下落, 現在 22% 水準에 定着되었다.

1973년에 社會文化費가 急増한 것은, 첫째로 9年制 義務教育을 10年制로 1年을 延長하는데 必要한 教育費의 増大, 둘째로 南北 韓 對話가 시작됨에 따라 對外弘報 活動의 増加, 셋째로 國際情勢의 解氷과 周邊情勢의 緊張緩和 및 開放體制下에 따른 住民生活 水準을 向上시켜야 할 必要性에 기인했다.

北韓은 食糧政策의 效率的인 수행을 위해서 철저한 消費基準에 의해서 配給制度를 實施하고 있으며 生産된 糧穀은 國家計劃에 의하여 수매케 하고 있다.

解放後 食糧의 自由販賣와 함께 1946年 3月부터 1日 配給制度를 實施하여 왔으나 보다 철저한 食糧統制를 위해 1957年 11月 “內閣決定 96號와 102號”에 의하여 食糧의 完全한 配給制度를 確立하였다.

配給되는 食糧은 백미, 감자, 옥수수, 밀가루 등으로 配給地域과 季節에 따라 다르다.

北韓은 戰後 復舊計劃에서 重工業 우선 政策에 치중함으로써 輕 工業이 부진하여 日用品의 不足이 극심하고 衣類事情은 各박한 狀態에 놓여 있다.

北韓은 6.25 動亂중 많은 住宅이 破壞되어 극심한 住宅難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社會體制가 共產主義 體制라는 特殊한 社會

形態를 갖추고 있으므로 住宅建設은 구체적인 都市計劃下에 보다 計劃的으로 順調롭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北韓의 都市 住宅事情은 6.25 動亂時 대부분의 都市가 폐허화됨에 따라 農村의 住宅難에 비하여 더욱 심각하여 休戰以後 평양을 비롯한 重要 都市의 복구에 주력하고 高層아파트를 建設하였는데 이는 住宅難 解決이라는 본래의 目的 以外에 一般住民들의 生活를 集團化하여 共產主義 社會에 適應하는 生活態度에 익숙하게 한다는 부차적 影響力까지도 考慮한 것으로 勞動力의 集團收容所가 이들에 대한 日常生活의 감시를 용이케 하였다.

北韓은 2 個年 計劃期間 (1954 ~ 1956) 內에 都市에 4,719,000 m^2 農村에 5,559,000 m^2 의 住宅을 建設하였으며, 5 個年 計劃期間 (1957 ~ 1960) 에는 都市에 6,216,000 m^2 , 農村에 5,064,000 m^2 의 住宅을 建設하였으며, 7 個年 計劃期間의 上半期(1961~1964)에는 都市에 7,309,000 m^2 農村에 6,159,000 m^2 의 住宅을 建設했고, 6 個年 計劃期間에는 30 萬棟, 第2次 7 個年 計劃期間에는 年間 20 萬棟을 建設하였다고 發表했다.

北韓에서는 住民들의 衣食住生活까지도 完全히 統制下에 制약을 받고 있다.

住民生活의 健康問題와 直結되어 있는 醫師 및 醫療施設을 보면 1949 年에 비하여 1960 年에는 病院數가 2.6 倍, 病院의 침대 수는 4.9 倍, 醫師 및 準醫師는 5.6 倍로 增加했다. 또한 1960 年에 비하여 1970 年에는 病院數는 1.3 倍, 病院 및 診療所 數는 1.3 倍, 醫師 및 準醫師數는 3 倍로 增加되었다.

人口 萬名當 醫師 및 準醫師數는 1946 年에 1.1 名이었으나 1960

년에는 10 배가 늘어나 11 名이며, 1960 年度에 비하여 1970 年度는 2.5 배가 增大되었다.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保障制度는 保險金支給과 社會保障 施設로서 區分되며, 保險金 支給은 國家經濟機關, 企業所, 黨 및 勤勞團體 勞動者들이 勞動을 喪失하였거나 死亡한 경우에 本人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國家負擔으로 實施되며 社會保障 形態는 現金과 現物에 의한 惠澤과 醫療 및 社會 元호 등의 方法으로 實施되고 있다. 現金 및 現物支給에 의한 惠澤에는 各種 年金 및 보조금 支出, 불구자에 대한 교정기구 등이 供給된다.

醫療惠澤에 의하여 社會保障 대상자들은 健康回復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健康이 회복된 社會保障 대상자들은 그들의 체질과 기능에 適合한 就業을 알선하여 주며 영예군인, 무의탁한 불구자, 연로자, 고아들은 영예군인 보양소, 양로원, 고아원 등 社會保障 施設에서 生活하며 勞動能力을 喪失한 애국열사 가족, 영예군인, 후방가족 등 社保障者들에 대한 元호사업에는 매우 큰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 生活環境 水準面에서 보면

韓國에서는 生活環境의 改善 및 保健衛生 水準의 向上을 위해 上水道의 施設이 널리 普及되었고 給水量도 늘어나 上水道의 普及率(給水人口는總人口)은 1960 年の 17%에서 1971 년에는 36.3%, 1982 년에는 59.4%로 크게 늘어났고, 1日 1人當 總給水量도 1960 年の 99 ℓ에서 1982 년에는 270 ℓ로 크게 늘어났다.

다음에 生活環境 水準에 關聯된 주요 지표를 보면 通信서비스

의 경우 보통우편물取扱數는 1971年の 552 백만통에서 1982 년에는 1,130 백만통으로, 電話加入者數는 同期間중 555 千名에서 4,809 千名으로 늘어나 통신서비스가 크게 확충되었다. 또한 이 期間중 自動車 保有臺數는 1971 年 14 萬臺에서 1983 年 79 萬臺로 늘어나고 公路연장은 1971 年の 40,635 km에서 1983 년에는 54,550 km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包裝率은 1971 年の 14.2 %에서 1983 년에는 39 %로 높아졌다.

한편 1968 년부터 本格的으로 建設되기 시작한 고속도로는 71 年 末에는 도로 總延長이 1,100 km이던 것이 1983 년에는 1,420 km로 全國土가 日日 生活圏化 되었으며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라 輸送手段別 輸送量도 크게 늘어났는데 鐵道輸送量을 보면 貨物輸送은 1972 年에 7,985 百萬噸-km이었던 것이 1983 년에는 48,909 百萬噸-km로 늘어나고 旅客輸送은 1971 年の 13.7 百萬人-km에서 1983 년에는 46.9 百萬人-km로 늘어났다.

공로수송은 貨物이 1972 年の 59 百萬噸-km에서 1983 년에는 126 百萬噸-km로, 旅客輸送은 1972 年の 3,308 百萬人-km에서 1983 年の 9,928 百萬-km로 늘어났다. 1970 年代 및 1980 年代初에는 醫療施設도 크게 확충되었는데 먼저 醫療要員數의 推移를 보면 醫師數는 1971 年度 1.7 萬名에서 1982 년에는 2.8 萬名으로 늘어나고 病床數는 1971 年の 17,506 個에서 1983 년에는 44,972 個로 늘어났다.

끝으로 教育·文化施設을 보면 教育部門에 있어서 教育 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國民학교 學級數는 1972 年の 94,663 個에서 1983 년에는 112,122 개로, 중학교는 同期間중 26,398 個에서 41,852 개로, 高等학교는 6,091 個에서 19,171 個로, 대학교는 1971 年の 1,216 학과

에서 1983년에는 3,091 학과로 크게 확충되었다. 또한 公共圖書館數도 1971년에는 63 個所에 不過하였으나 1982년에는 120 個所로 크게 확충되었다.

北韓의 文化政策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입각하여 創作하되 당성, 계급성 그리고 人民性을 強調하고 있으며 金日成 偶像화를 위한 革命傳統의 교양에 注重하고 있다.

創作家에는 數的인 計劃量이 賦課되고 表現예술에 있어서도 公演횟수, 公演效果의 責任計劃이 부과되고 있다.

北韓은 소수의 劇場과 旅館, 食堂, 國營商店과 목욕탕, 이발소 등의 便宜施設物 및 公園이 存在하나 住民의 利用度는 極 낮다.

그 理由는 첫째, 社會體制上 時間的, 物質的 여유를 갖지 못하며 둘째, 黨의 生産的 經濟政策上 이런 非生産的 서비스 業種을 人爲的으로 抑制하며 셋째, 이러한 業種 역시 國營 또는 協同團體의 所有이기 때문에 自由로운 去來가 成立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分斷 39年동안 출판 民族文化를 말살하고 그 위에 새로운 共產主義 價値觀을 確立시키는데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았었다.

관, 혼, 상, 제의 예법도 옛날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선조가 남긴 美風良俗, 단오, 추석, 설(구정) 등의 많은 날이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戰鬪的이고 生産, 革命的인 各種 記念日이 制定되었다.

3. 北韓의 消費生活 實態

가. 衣食住 生活

(1) 食生活

가) 食生活 概況

北韓의 食糧需給 關係를 考察해 보면 1946年 3月 5日 土地改革令에 의하여 토지소작제도를 금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私有化 政策을 推進하더니 1954年부터 4年間に 걸쳐 農業의 協同化를 推進, 58年 10月에는 리단위의 農業協同組合을 組織함으로써 社會主義的인 農業生産 體制를 정립하였다.

北韓은 解放後 食糧의 自由販賣와 함께 1946年 3月 11日부터 食糧配給制度를 實施하여 왔으나 그후 보다 철저한 食糧統制를 위해 1957年 11月 내각결정 96호와 102호에 依據하여 食糧의 完全한 配給制度를 確立하였다.

配給되는 食糧의 種類는 백미, 감자, 옥수수, 밀가루 등으로 配給地域과 季節에 따라 다르고 道單位 行政區域別 自給自足を 원칙으로 實施하고 있으며 食糧配給 價格도 수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價格으로 策定되어 있다.

北韓은 보다 엄격한 食糧統制를 위해 1959年이후 양권이란 것을 發給하고 있는데 發給對象者들의 職場經理部를 통해 發給토록 하고 있으며 發行한 量만큼의 食糧은 本人의 食糧配給量中에서 控除하고 있다. 양권은 1963年 4月 更新되어 100 ㄱ, 200 ㄱ, 300 ㄱ 등이 있었으나 現在는 200 ㄱ 양권으로 統一되었다.

副食物 供給에서 채소류는 住宅街에 設置된 직매소를 통해서 販賣하고 있고 肉類供給은 人民軍과 당원에게 먼저 供給하고 다음에 國營食堂 및 旅館에 供給한 후 高位階層만을 相對로 하는 高級商店에 供給된다.

一般住民들이 肉類를 供給받을 수 있는 기회는 1月 1日, 2月 16日, 4月 15日, 9月 9日, 10月 10日에 한하여 小量의 肉類를 配給받을 수 있으며 一般食料品 商店에서 肉類를 販賣하고는 있으나 事實上 購賣하기가 힘들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통조림은 一般商店에서 購入할 수는 있으나 高價이고 거의 品節狀態이므로 一般勞動者의 처지로서는 購入이 극히 어려운 實情이다.

생선은 水産部 直賣商店에서 販賣하거나 職場을 통하여 配給받고 있다. 한편 北韓에서는 不足한 勞動力을 充當하기 위해 가정주부의 勞動就業을 적극 장려, 동원함에 따라 女性을 부역으로부터 解放한다는 명분하에 주부식 工場을 建設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밥은 물론 국, 김치,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을 生産 供給하고 있고 조리된 副食物을 加工하여 職場女性들의 편의를 提供하고 있다.

最近 北韓에서는 食糧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郡의 役割을 強化하여 地方工業과 농촌경리를 더욱 發展시켜 人民生活을 훨씬 높이자”라는 구호 아래 콩기름, 참기름, 강냉이기름 등 기름工場을 매 개군에 좀 크게 차려 놓아야 하며, 쌀겨기름을 되도록 많이 짜서 빨래비누를 만들고 강냉이눈기름을 짜기 위한 鬭爭을 벌여 1人當 10 升씩 保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工場企業所들에 대한 指導方法과 管理運營 事業을 改善하고 지원을 위해 軍중운동을 展開하고 있는데 송림시의 경우 4,000여명의 住民中 2,800名은 農場과 牧

場에 나가 일하고 있다 한다.

또한, 가정주부를 動員하여 副食物을 生産하기 위해 가내 作業班을 組織하고 있고 農民들이 채 다루지 못한 땅을, 경작, 호박, 들깨 등 채소를 가꾸고 닭, 돼지를 飼育하며 집 주위에 과수를 심어 과일생산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등 食生活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은 農業生産 體制의 社會主義化를 통해 農業의 近代化를 시도하였고 그것으로 食糧問題를 解決하려고 努力했으나 農業의 近代化는 커녕 食生活의 自給自足 體제도 갖추지 못한 實情이다.

또한, 北韓의 配給制度는 食糧의 絶對量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食성과 기호에 맞는 食生活을 할 수 없게 함은 食生活에 대한 心理的 負擔感을 안겨주어 住民들의 不平不滿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의 食糧不足 原因은 기상조건의 惡化, 農村의 勞動力不足, 農業集團化에서 오는 영농관리 未治 등으로 農作物의 收穫量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外貨獲得을 위한 쌀의 出血輸出이 強行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食品加工 技術 및 貯藏手段은 극히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중앙당국의 철저한 統制로 各種 食品의 적시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食料品 供給에 있어서도 平壤, 開城, 淸津市 등 主要 都市에 우선 配給토록 하는 政策으로 因하여 中小都市 및 農漁村 등 지에는 加工食品의 購入이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다.

最近 北韓은 食糧增産을 위하여 경지면적 擴張 등 大自然 개조 事業을 벌려 새땅 찾기, 간척지 개간 등을 대중운동으로 推進하고

있고 多收穫 品種을 開發하는데 主眼하고 있다.

(나) 食糧配給 制度

北韓의 食生活 水準은 아직까지도 攝生爲主의 양적 充足을 備우는데 급급한 實情이다.

現在 北韓에서는 協同農場員을 除外한 全住民에서 食糧配給制가 實施되어 個人의 食性이나 기호에 맞는 食生活은 생각할 수 없음은 물론 각자가 먹고 싶을 만큼 먹을 食糧의 絶對量을 充足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不足한 食糧을 個別的으로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암거래에 의한 購賣를 할 수 있으나 價格이 엄청나게 비싸고 처벌의 危險이 뒤따르기 때문에 一般住民들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實情이다.

암시장에서의 쌀價格은 配給價格의 30~60 배나 되며 백미 소두 한말(7kg)에 1個月 賃金과 맞먹는 70~80 원에 달해 去來對象은 자연히 특권층에게만 限定될 수 밖에 없게 된다.

配給의 良과 質의 構成은 配給對象者의 지위와 地域에 의해 차별 供給된다.

1日1人 食糧配給 基準을 보면, 당간부, 고급간부의 경우 잡곡이 섞이지 않은 백미 700g이며 勞動者와 事務員을 비롯한 各급 學校 學生, 軍人들은 地域에 따라 一定하지는 않으나 大都市의 경우 잡곡대 쌀의 比率은 5대5 정도이고 地方은 보통 600g의 配給量中 雜곡혼합비율은 3:7 혹은 2:8 정도이다.

農村의 경우 農民들은 配給制에 의해 配給받은 것은 아니나 協同農場의 年말결산 分배때 都市勤勞者의 食糧配給量에 準한 食糧(1年分)만을 버나 강냉이 등 雜糧로 받기 때문에 食糧不足은 마

찬가지 實情이다.

協同農場에서는 1年間 生産된 總生産量中에서 義務收買量과 탁아소, 유치원 設備 및 농기구 賃貸料 등의 명목으로 60% 정도를 控除한 나머지를 가지고 농장원의 努力日數에 따라 現物과 現金을 分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곡물은 農家の 家族數에 該當하는 配給量 만큼 남기고 모두 國家에 手매하고 있다.

北韓農民들에게 이처럼 食糧을 配給式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勞動力을 效果적으로 착취하고 食糧을 社會統制의 基本手段으로 이용하려는 非人間的인 북괴집단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말해서 1957年 11月 내각결정 第96號와 第102號에 依據하여 종래 配給制와 병행되었던 食糧自由 販賣制度를 廢止하면서 協同農場員을 除外한 모든 住民들에게 配給이 實施되었고 農民들은 年末 決算分配에 의해 現金과 現物을 分配받고 있으나 實際로 協同農場員들에게 分配되는 量은 總生産量의 40%에 불과하다.

더우기 이중 年間食糧을 除外한 나머지를 모두 國家手매에 應하여야 하므로 農村住民들의 生活은 都市住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分배방식은 일제시 農民들에 대한 착취가 가장 혹심하였던 때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료로 바치던 4:6제 分배방식보다도 더욱 가혹한 結果를 가져온 것이고 그 結果는 都市와 農村의 격차를 심화시켜 기회만 있으면 都市로 進出하려는 습성과 當局에 대한 不滿 등 農村에서의 各種 부조리를 낳게 하는 結果를 가져 왔다.

北韓의 食糧配給 節次는 每 보름마다 職場의 경리부에서 發給하

는 배급카드를 가지고 里·洞 배급소에서 配給받고 있고 出張이나 여행시에는 양권을 미리 발부받아 취식시 양권과 식대를 함께 支給하고 있다.

北韓의 食糧配給制에 대해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1960年代 中半期까지는 中央 供給對象者와 一般 供給對象者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實施하였으나 現在에는 對象者의 직급과 거주지에 따라 상이하다. 配給基準은 연령과 勞動力의 程度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規定함으로써 北韓住民들은 누구든지 일하지 않고서는 配給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勞働者 사무원에게 配給되는 食糧은 주로 쌀과 옥수수인데 食糧 配給은 地域에 따라 백미대 잡곡의 比率에서 차이는 있으나 現在 平壤을 除外한 地域의 一般勞働者의 경우 3:7 또는 2:8의 比率로 잡곡이 현저히 많은 狀態이다.

이와 같은 食糧配給量은 一般住民의 경우 통상 15日分 配給量에서 2日分 程度의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1973년부터는 戰爭米비축을 빙자하여 1日 100g을 減量 配給하고 있고 각 家庭에서도 전시비상배낭속에 4~5日分の 食糧을 자체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애국미 운동의 명목으로 月 配給量에서 1,200g씩 사전 控除까지 하고 있어 北韓의 食糧配給 事情은 종전보다 훨씬 惡化된 形편에 있다.

따라서 친척이나 친지를 방문, 식사대접을 받을 시에는 原則的으로 양권을 주어야 마음놓고 취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都市에서 農村으로 방문시에는 양권을 지불치 않은 것이 관례이고 農村에서 都市로 나갈때는 반드시 양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一般化

되었는데 이는 都市住民은 配給制로 인해 손님 接待用 만큼 자기의 몫이 줄어들므로 부득이 죽으로 調節하여 연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現在 北韓에서 實施하고 있는 階層別 主부식 配給量中 軍人 및 中央供給對象者의 基準値는 다음과 같다.

1) 軍人

北韓內에서는 現役軍人에 대한 대우는 一般的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軍人中에서도 계급과 직책, 危險負擔率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상 軍人의 配給基準은 1號 對象者로부터 17號 對象者로 細分化되어 있다.

軍人 各級 等級에 따른 配給基準을 보면 전사로부터 중좌에 이르는 一般軍人의 경우 1日 白米 700 ㄱ, 雜穀 50 ㄱ, 밀가루 50 ㄱ 등 800 ㄱ의 食糧을 配給받고 있고 副食類도 肉類 75 ㄱ을 비롯하여 생선 200 ㄱ, 두부 100 ㄱ 등을 配給받는 등 3,712카로리분의 主부식을 配給받고 있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잠수함 승무원은 白米 750 ㄱ, 밀가루 50 ㄱ을 비롯하여 副食類로 肉類 350 ㄱ, 생선 210 ㄱ, 통조림 800 ㄱ 등을 配給받아 1일 섭취열량은 6,692 카로리에 해당된다.

表 # 1

軍人等級別配給基準

等級	1號(전사-중좌)	2號(상좌-대좌)	3號(장령)
適用	2-17 호까지 供給規定 量에 該當하지 않는 ○陸海空軍의 兵士 ○下士官 ○軍官(소위-중좌)	○김일성 軍事大學學生 ○國家藝術人 2級以上 ○정찰국 및 軍단경보 병요원	○少將以上 장령 ○人民 배우 자격을 所持한 피뢰군 藝術 員
品目	數 量	數 量	數 量
백 미	700 그람	700 그람	700 그람
잡 곡	50 "	50 "	50 "
밀가루	50 "	60 "	50 "
고 기	75 "	230 "	300 "
물고기	200 "	200 "	300 "
기 름	20 "	30 "	40 "
채 소	800 "	800 "	800 "
된 장	50 "	50 "	50 "
간 장	20 "	30 "	30 "
두 부	100 "	3 "	150 "
소 금	30 "	2 "	30 "
식 초	3 "	25 "	3 "
고 추	1 "	250 "	2 "
사 탕			40 "
과 일			250 "
과 자			50 "
계 란			1 개
담 배	10 분		
열 량	3,711.7 칼로리	4,354.1 칼로리	4,992 칼로리

等 級	4 號 (飛 行 士)	5 號 (技 術 勤 務 員)	6 號 (乘 務 員)
適 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空軍學校 飛行要員 ○空軍學校 學生이 訓練隊에서 飛行教 育實施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飛行機修理 勤務技士 ○空軍指揮所內 유도 군관 ○空軍管制所內 技術要 員 ○海軍 어뢰대원, 해안 감시 기술초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海軍學校學生實習員 ○海軍 기뢰조정 대원 ○육상인원이 승선입 무 遂行時
品 目	數 量	數 量	數 量
백 미	700 그람	750 그람	700 그람
잡 곡	50 "	50 "	
밀가루		40 "	30 "
고 기	330 "	200 "	200 "
물고기	300 "	200 "	200 "
기 름	330 "	50 "	30 "
채 소	400 "	850 "	850 "
된 장	40 "	50 "	40 "
간 장	60 "	30 "	30 "
두 부	100 "	100 "	100 "
소 금	15 "	30 "	30 "
식 초	5 "	3 "	4 "
고 추	5 "	1 "	1 "
사 탕	50 "	25 "	50 "
과 일	400 "	200 "	250 "
과 자	170 "		150 "
계 란	3 개		
빠 다	50 그람		30 그람
기 타	35 "		30 "
담 배	10 본	10 본	15 대
열 량	6,584.4 칼로리	4,583.7 칼로리	4,788.7 칼로리

等級	7號 (경비정승무원)	8號 (어뢰정승무원)	9號 (잠수함승무원)
適用	○경비정 편대내 指揮人員 ○경비정내의 기술요원	○潛水作業人員 ○어뢰함대 指揮人員 및 기술요원	○항해시 함대내 基準 (1日 4時間 항해 시)
品目	數 量	數 量	數 量
백 미	700 그람	750 그람	750 그람
밀가루	50 "	50 "	50 "
고 기		350 "	350 "
물고기	300 "	300 "	210 "
기 름	40 "	55 "	40 "
채 소	850 "	850 "	통조림 800 "
된 장	40 "	40 "	40 "
간 장	30 "	30 "	40 "
두 부	100 "	100 "	
소 금	30 "	30 "	15 "
식 초	4 "	4 "	4 "
담 배	15 톤	15 톤	과자 180 "
고 추	2 그람	2 그람	3 "
사 탕	50 "	50 "	
과 일	250 "	250 "	
식 빵	150 "	150 "	150 "
빠 다	30 "	30 "	50 "
건국수	144 "	50 "	100 "
계 란		2 개	3 개
기 타	35 "	86 그람	75 그람
열 량	5,568.7 칼로리	6,159.1 칼로리	6,691.5 칼로리

等 級	10 號 (電車乘務員)	11 號 (유해적근무인원)	12 號 (민경대원)
適 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電車指揮官, 乘務員, 修理所 技術者 ○ 電車牽引車 乘務員 ○ 電車校內 運轉要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理治療人員 ○ 研究所內 연구사 및 연구원 ○ 군수공장 현장주재 검수원 ○ 연유취급 人員 ○ 印刷工 및 攝影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민경요원 ○ 알섬에 주둔한 人員 ○ 전선대적방송국인원 ○ 사단민경지도원민경 참모
品 目	數 量	數 量	數 量
백 미	800 그람	700 그람	800 그람
밀가루	50 "	50 "	100 "
고 기	200 "	150 "	150 "
물고기	250 "	200 "	200 "
기 름	48 "	40 "	30 "
채 소	850 "	800 "	800 "
된 장	50 "	30 "	50 "
간장장	30 "	30 "	30 "
두 부	100 "	100 "	150 "
소 금	30 "	30 "	30 "
식 초	3 "	3 "	3 "
담 배	10 본	10 본	15 본
고 추	1 그람	1 그람	2 그람
사 탕	25 "	20 "	25 "
과 일	200 "		
식 빵	잡곡 50 "		
열 량	4,754.3 칼로리	4,095.9 칼로리	4,449.6 칼로리

等 級	13 號 (體 育 人 員)	14 號 (藝 術 人 員)	15 號 (만 경 대 학 원)
適 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 民 武 力 部 直 屬 軍 團 體 育 團 指 導 員 및 선 수 ○ 軍 官 學 校 射 擊 手 ○ 협 주 단 내 곡 예 배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 주 단 연 주 단 ○ 總 政 治 局 創 作 人 員 ○ 김 일 성 대 학 군 악 대 원 ○ 예 술 급 수 를 가 진 군 악 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경 대 학 원 學 生 ○ 단, 초 급 반 學 生 은 백 미 잡 곡 각 각 50 그 램 씩 削 減
品 目	數 量	數 量	數 量
백 미	800 그 램	700 그 램	700 그 램
밀 가 루	30 "	50 "	50 "
고 기	350 "	150 "	75 "
물 고 기	300 "	200 "	200 "
기 름	40 "	40 "	20 "
채 소	1,000 "	800 "	800 "
된 장	30 "	50 "	40 "
고 추 장	50 "	30 "	30 "
두 부	150 "	100 "	100 "
소 금	30 "	30 "	30 "
식 초	5 "	3 "	3 "
고 추	5 "	1 "	10 "
사 탕	100 "	30 "	20 "
과 일	400 "	200 "	
계 란	1 개	잡 곡 50 "	잡 곡 50 "
식 빵	150 그 램		
고 추 장	30 "		
과 자	60 "		40 "
우 유	200 "		100 "
담 배		10 대	
열 량	6,182 칼 로 리	4,229 칼 로 리	4,152.6 칼 로 리

等 級	16 號 (休 養 人 員)	17 號 (病 院 內 患 者)	
通 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 民 武 力 部 直 屬 休 養 所, 軍 團 休 養 所, 臨 時 休 養 所 ○ 潛 水 艦, 飛 行 士, 乘 務 員 要 員 이 休 養 所 에 서 休 養 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대 급 이 상 : 軍 醫 및 病 院 患 者 ○ 結 核 病 院 結 核 患 者 ○ 각 급 군 의, 렌 트 겐 취 급 자 	
品 目	數 量	數 量	數 量
백 미	800 그 램	750 그 램	750 그 램
밀 가 루	50 "	20 "	50 "
고 기	250 "	100 "	200 "
물 고 기	600 "	20 "	200 "
기 름	30 "	200 "	40 "
채 소	850 "	800 "	800 "
된 장	20 "	50 "	50 "
간 장	60 "	30 "	30 "
두 부	150 "	100 "	100 "
소 금	30 "	30 "	30 "
식 초	10 "	3 "	3 "
고 추	8 "	1 "	2 "
사 탕	30 "	20 "	50 "
과 일	250 "	300 "	300 "
계 란	2 개		1 개
고 추 장	40 그 램		
과 자	30 "		
우 유	200 "		300 그 램
담 배		5 본	
기 타	39 "		
열 량	5,537.6 칼 로 리	3,938.6 칼 로 리	4,785 칼 로 리

2) 中央供給 對象者

리당비서급 이상 幹部, 演藝人, 體育人, 企業所幹部, 特技者 등을 中央供給 對象者로 選定, 6號부터 特號까지 區分하며, 차등 대우하여 왔으나 住民의 비난이 자자하므로 1963 년경에 이르러 명분 상으로는 이를 全面 廢止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事實上은 이 制度가 存續되고 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共產階級 社會가 形成되고 있다.

<表-2>

中央供給對象者 配給基準

號別	對 象 者	待 遇
6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人民委員會 部署의 部長 級 ○ 道黨 課長級 ○ 中央部署의 3級指導員 ○ 郡部長級 ○ 1,2級 企業所 課長級 ○ 리당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幹部事務要員: 월 65 원정도 ○ 企業所幹部: 월 70 원정도 ○ 食량은 일반인과 같이 배급을 받으나 특별히 피복지를 배급받는다(한복, 상하년 1착, 동복, 상하년 2착)
7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部長級 ○ 도당 부부장 ○ 企業所(4級企業所 以下 除外) 部長級 ○ 성기관부장(韓國의 中央課長 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俸給: 80~90 원정도 ○ 쌀 800 匁(백미) 被服은 6號와 같으나 質이 좋음.

號別	對 象 者	待 遇
7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社會團體 副委員長級 ○ 市·郡 社會團體 責任者, 郡 病院 技術副院長 ○ 中學校 校長 ○ 中央黨 指導員 	
8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黨 指導員 ○ 성기관 부장 ○ 도당 부장 ○ 道人民委員會 處長, 局長 ○ 企業所: 1급 부지배인 2급 지배인 ○ 교원은 大學의 一般教授, 學部長 ○ 道社會團體 責任者 및 道 人民病院 副院長 ○ 郡人民委員長 ○ 高級 軍官中 左級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配給: 백미 800 ㄱ, 被服은 夏 服 1년에 1착, 冬服 2년 에 1착, 4년에 오바 1착, 出張時 특급차 이용, 연 20 일간의 고급휴양소 휴양 乘用車 支給은 郡人民委員 長 道黨 責任秘書에 한하 며 車의 種類는 복괴제 짚 차 支給
9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黨 副委員長 ○ 道人民委員會 副委員長 ○ 道黨 第1秘書 ○ 성기관부장급(中央廳 次官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俸給: 월 190 원정도 ○ 配給: 백미 800 ㄱ, 특급차이 용, 독집사용(아파트 이용시 특별실 이용)

號別	對 象 者	待 遇
9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黨 副部長 ○ 郡黨 責任秘書 ○ 1級 企業所 技士長 ○ 大學校 副總長 초급당비서 (學院內) ○ 社會團體(中央)機關 責任者 ○ 軍官 대좌급 ○ 人民藝術人, 功勳藝術人, 人 民體育人, 功勳體育人 	
10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人民委員長 ○ 도당 責任秘書 ○ 政務院 部長級(長官級) ○ 1급기업소, 지배인 ○ 大學總長 ○ 軍官(장령급) ○ 사로청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俸給 : 월 250~300 원 ○ 待遇 : 쌀(백미) 800 ㄱ, 被服 9호와 동일,出張時 飛行機 利用 可能, 高級乘用車 利用, 獨立住宅 居住, 호위병이 따 름, 연 30일간의 고급휴양소 휴양
特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務院 副總理級 以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350 원 이상 ○ 待遇는 10호와 동일

主要 階層別 配給基準量 備考

對 象 者	配 給 量	雜 穀 比 率
勞 動 者	600 ㄱ	3 : 7
特 殊 機 關 員	600 ㄱ	5 : 5
一 般 軍 人	750 ㄱ	5 : 5
特 殊 軍 人	750 ~ 800 ㄱ	5 : 5
學 生 (中 學 , 人 民 學 校)	400 ~ 500 ㄱ	3 : 7
扶 養 家 族	300 ㄱ	3 : 7

* '73년 이후 모든 配給基準量에서 100 ㄱ씩 減量한 것임.

(㉔) 食糧犯罪, 暗去來 및 食糧貸與

北韓農民의 1日 食糧은 공식적으로 1인당 糧穀 600 ㄱ(옥수수 420 ㄱ)으로 規定되어 있는데 農民들은 농사꾼이 일정량을 配給처럼 타먹고 어떻게 살겠는가, 配給制度를 실시하려면 工場 勞動者로 就業시켜라, 이렇게 된 바에야 요령껏 일하겠다는등 여론이 분분하자 北韓當局은 이에대한 措置로 金日成의 회상기 학습 즉, 한흙의 미수가루로 4일간의 行軍을 하였는데 이 정도의 고생을 못참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식의 精神教育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農村에서의 食糧統制에 대한 不作用은 더욱 擴大되어 食糧절치행위, 實例를 들면 추수전에 밭에서 알곡(특히 옥수수)을 절치한다던가 추수후 野積된 食糧을 훔치는 竊盜行爲 또는 監視員과 공모하여 食糧을 橫領하는 등이 성행하자 北韓 當局에서는 옥수수 한개라도 竊取하는 자는 3개월 無報酬, 無配給이라는 가혹한 罰則까지 公布한

바 있으나 人間 基本의 慾求인 배고픔에는 어쩔수 없어 農村을 비롯 都市地域의 食糧事犯이 根絶되지 않고 있다.

또한 北韓에서는 食糧 및 副食物에 대한 철저한 統制가 실시되고 있고 住民들에게 配給되는 食糧은 食生活 영위에도 不足한 실정이며, 暗去來에 대한 制裁措置가 嚴格하기 때문에 北韓社會에서 食糧이 暗去來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北韓에서도 1958년 8월 이전까지는 양권없이 暗市場에서 糧穀購入이 可能하였고 60년이후 다소 統制되기는 하였으나, 物物交換方式으로 暗去來가 盛行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는 暗去來에 대한 法的 制제가 嚴格하여 표면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부정인출된 食糧이나 特權層의 職權을 利用한 食糧獲得分, 터밭에서 生産된 食糧作物 등을 가지고 暗去來를 하고 있다. 暗去來의 價格은 사복감시원의 눈초리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配給價格에 비하여 월등하게 비싸게 策定되어 去來되고 있는데 通常 配給價의 10배 이상이다.

北韓은 農民들에게 結算분배된 穀物을 實數量대로 支給하지 않고 都市 勞動者 家族의 配給基準에 준하는 食糧만을 제하고 그 나머지는 수매형식으로 國家에 賤값으로 팔게 한 다음 現金을 支給하고 있다.

現金이 必要한 北韓農民들은 現金調達方法으로 國家수매 혹은 暗去來를 利用하는 것이 通常의인 例이다.

따라서 食生活에 不足한 食糧은 다음해 分配穀에서 控除하는 것을 條件으로 協同農場 축적폰드에서 대여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대여곡으로 不足한 食糧을 充當하고 있다.

年間 6개월 이상을 貸與穀으로 지탱하고 있는 農民數는 全體 農民中 약 40% 정도이며 또한 年間 4개월 이상의 貸與穀 利用者 全體 農民中 약 40%이고, 나머지 20%의 農民들만이 分配穀으로 연중 食糧을 充當하고 있다.

北韓當局은 이러한 農民들의 실정을 利用하여 農民들의 士氣振作과 함께 黨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誘發시키기 위해 貸與穀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免除케 하는 特別措置를 취하기도 한다.

(라) 主·副食物의 集團調理 및 食料品 加工

北韓은 女性勞動力의 동원극대화를 위해 主食을 비롯한 各種 副食物까지도 아파트 地域單位로 集團調理하여 일손을 덜어주고 있어 傳統的이고 固有한 主婦의 任務와 役割이 사라져가고 있다.

北韓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集團調理 制度는 밥공장을 들 수 있는데 밥공장이 나오기까지의 經過와 運營實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밥공장은 1958년 6월 黨전원회의 決定에 따라 시행한 家族食堂을 改善한 것인데 家族食堂은 15일 혹은 1개월분의 配給表를 食堂에 맡기고 食卷을 발부받아 매 식사시마다 調理된 食事を 타다가 먹는 制度를 말한다. 이때 食事は 提供하지만 副食物은 提供하지 않는데 통상 접시당 5~10전의 代금을 支拂하고 副食을 사서 食事を 하게 되어 있는 制度이다.

그러던 것이 1970년 11월 당 5차대회에서 婦女者들의 職場進出과 관련, 住民 食生活의 一大變革을 試圖하는 밥공장 設치를 決定하였으며, 19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金日成은 女性들이 集團的인 勞動

生活과 여러가지 社會的 活動에 自由롭게 參加하기 위해서는 가사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解放되어야 하는데 이는 3大技術革命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주장하므로서 本格的으로 育成되었다.

밥공장은 平壤을 위시하여 개성, 청진, 남포, 함흥과 같은 大都市에 3~4개정도 大規模 企業化된 工場을 設置하였는데 그곳에서는 20분만에 200명분의 밥을 지을수 있는 施設, 4~5분만에 60kg의 빵을 生産할 수 있는 전기가마 시설, 한꺼번에 1,000여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工場들이 設置되어 있다. 밥공장에서 使用되는 食糧은 各 家庭에 配給될 食糧의 일부를 밥공장에 불출한 것이며, 밥공장 利用方法은 婦女者들이 出勤時 밥공장에 찾아가 必要한 양을 申請하고 주문자의 거주지와 姓名, 供給받을 時間을 명기하고 일정한 手數料를 支拂한 후 약속된 時間에 찾아가면 된다. 밥공장에서 主食物 以外에도 반제품으로 된 副食物과 국거리들을 供給하고 있다.

밥공장의 構成員은 責任者 1명(여자), 炊事要員 5名, 火夫 및 經理 各 1名으로 편성되어 있다. 밥공장은 市, 郡 給養管理所 商業管理處에서 運營하는데 밥공장에 대한 北韓住民들의 반응은 飲食의 質이 좋지 않고 양이 적기 때문에 바쁜 경우에만 불가피 利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한다. 밥공장은 당초 女性勞動力 提高 目的으로 設立되었기 때문에 大都市 아파트 및 工場地域에 우선 設置하던 것을 점차 工場規模와 設置地域을 擴張하고 있는데 利用하는 階層은 맞벌이 夫婦가 主類를 이루고 있다 한다.

밥공장 設置 初期에는 밥만을 生産 供給하였으나 利用者가 줄어들자 最近에는 빵과 떡, 심지어는 아이스크림도 生産 販賣하고 있

다 하는데 빵의 경우 옥수수 가루에 소다만을 혼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맛이 없고 모양과 빛깔, 衛生處理도 不良하여 利用者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다음 北韓의 食料品 生産實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은 지난 1980년 당 6차대회에서 “女性들의 社會主義建設 參與를 적극적으로 支援하고 人民生活을 向上시키기 위한 措置로서 現代的 施設의 輕工業 工場을 建設, 日用品과 食料品 生産을 決定的으로 늘여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고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부터 食料品 生産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北韓의 食料品 生産工場은 몇개의 企業化된 大規模 施設이 있으나 大部分은 調味料, 병조림 등을 生産하는 中·小規模의 食料品 工場이다. 北韓의 代表的 食料品 生産工場인 平壤곡산工場, 용성肉類工場, 신포어류통조림공장, 회령제당공장과 같은 大規模 食料品 工場은 政務院 輕工業委員會와 人民奉仕 委員會에서 直接 管掌 運營하고 있고 中·小 規模의 食料品 工場들은 市·道 人民委員會에서 管掌 運營한다.

食料品 工場의 種類는 된장, 고추장, 간장, 콩기름류, 젓갈가공류, 김치등 副食物 生産工場, 옥수수 加工處理를 하는 옥쌀공장, 穀物을 處理, 국수, 전분 등을 生産하는 곡산공장, 기타 調味料, 清涼飲料, 酒類工場 등이 있다.

(마) 副食物 供給

北韓에서는 간장, 된장, 소금, 고추장 등 몇가지 基本配給 副食品을 除外하고는 대체로 高價로 판매되고 있다.

副食物은 家族數에 따라 支給되는 할당표에 의해 配給을 받거나 商店에서 購入하는데 最近에 이르러서는 副食物의 대부분을 調理된 것을 購入하고 있고 當局은 이의 편의를 위해 이동 매점까지 運營토록 하고 있다.

副食物中 된장, 간장, 고추장, 食用油은 공급카드에 의해 供給되고 肉類, 魚類는 通常 職場에서 共同購入하여 分配하며, 기타 두부, 야채, 콩나물, 김치등은 食料品 商店에서 임의 購入토록 되어있다.

70년대 이후 北韓의 一般勞動者들이 주로 먹는 副食物類는 김치, 무우, 배추, 산나물등 채소류와 동태, 가자미, 이면수등 生鮮類 등인데 이것을 利用, 나물무침, 찌개, 시래기국 등으로 調理하여 먹고 있다. 肉類는 供給이 극히 制限되고 있는데 黨정 高位幹部, 軍幹部, 國家代表級 體育選手, 各級 功勳者 등은 國營商店에서 임의 購入할 수 있으나 一般住民들에게는 國慶日 혹은 特別한 慶祝日을 맞아 職場單位로 集團購賣, 分配받는다.

肉類 통조림은 原則적으로 各級 商店에서 임의 購入이 可能토록 되어 있으나 一般商店에서는 거의가 品切狀態이므로 事實上 購入이 不可能한 실정이다.

肉類의 種類에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가장 많고 소고기는 一般住民이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형편이며, 개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등의 供給이 增大되고 있는 실정이다.

魚類는 肉類에 비해 다소 쉽게 購買할 수 있으나 이것도 高級 魚種은 不可能하고 북어, 가재미, 도루묵, 까나리, 이면수 정도는 一般商店에서 購買할 수 있는데 通常 週1回 혹은 月3回 정도 취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소류는 一般商店에서 購入하는 것과 職場別 集團購入하는 것이 있는데 一般的으로 需要가 많은 무우, 배추, 상치, 시금치와 같은 채소는 集團購買하고 있고 파, 마늘, 고추 기타 채소류는 商店에서 購入하는 것이 原則이나 경우에 따라 配給 또는 集團購買할 수 있다.

副食物中 食用油은 배급전표에 의해 購入되는데 配給되는 種類는 콩기름, 참기름, 낙하생기름, 옥수수기름, 들기름 등인데 이중 참기름, 들기름은 一般住民이 구하기 어려워 주로 옥수수기름을 購買하고 있는 실정이다.

副食類 供給事情이 어려운 실정을 勘案하여 北韓當局은 명절특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명절특배는 1월 1일, 신년원단,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9.9절, 黨創建 紀念日, 勞動節 등 國慶日 및 紀念日과 鑛夫節, 漁夫節 등 職業別 紀念日에 한해 配給되고 있다.

特別配給品은 各 世帶當 돼지고기 1~2 kg, 生鮮類 2~3 kg을 基本으로 階層과 時期, 당시의 事情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백미 5~7 kg, 사과, 배 등 과일류, 설탕 및 과자류 등을 特別配給하고 있다.

(바) 食事 및 食堂利用

北韓은 家庭에서 家族과 함께 食事하는 일보다 集團勞動, 集團作業을 하므로 集團食事が 많고 여행, 출장등 家庭以外에서 食事하는 일이 많은데 各 事例別 食事方法是 다음과 같다.

公務出張 또는 旅行者가 여관에서 하는 食事は 投宿者가 食事時間 3時間 前에 食事を 申請, 양권과 食代를 提出하면 食券을 주

는데 食券을 받지 못한자는 여하한 경우도 食事を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食券을 가졌다 하더라도 指定된 食事時間(通常 1時間)을 넘기면 配食하지 않으며, 配食하지 않은 食券에 대한 환금이나 양권을 되돌려 주는 일도 없다. 旅館, 食堂에서의 食事配食은 患者를 除外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셀프서비스 方法이고 患者라 하더라도 食堂 從業員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患者家族이나 親知 등이 대신해 주는 것인데 이 때에도 食事配達者는 취사책임자에게 食事 領受證을 써주어야 한다.

農村地域의 集團農場 作業時 食事は 분조별로 炊事要員을 선발, 농가에서 調理後 作業場으로 運搬하는데 이때 使用한 食糧과 副食物은 月別 決算에 따라 취식자에게 골고루 分擔토록 하는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여하한 경우라도 곽밥(도시락)은 利用할 수 없다는 것이다.

北韓의 食堂은 人民大衆이 利用하는 一般食堂과 옥류관, 천석식당을 비롯하여 휴양소, 정양소, 공장기업소 貴賓招待食堂과 같은 特別食堂, 列車에 設置된 列車食堂이 있으며 그 외에도 一般食堂에 準하는 국수집, 개장국 食堂등이 있다.

一般食堂은 國營食堂과 協同組合 管理食堂으로 區分되는데, 1개식당에는 支配人, 出納員, 炊事員만 있고 接待員은 없는 것이 特徵이고 取扱되는 食事種類는 냉면, 온면, 백반, 비빔밥, 국밥 등이다.

一般食堂에는 양권없이도 取食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買食을 원하는 수많은 人員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나 割當된 1日 買食量을 초과해서는 販賣가 안되고 있어 認可量 範圍內에 줄을 서지 않으면 買食이 不可能하고 줄을 서는 過程에서 特權

層에 있는 자는 새치기나 食堂 支配人에게 壓力을 가해 順序없이 取食하는 事例가 許多하다 한다.

特殊食堂은 設置目的이 高位幹部나 外國의 貴賓 또는 特殊 目的으로 利用되는 인물을 위한 것이므로 메뉴가 高級이고 다양하며 전량 쌀과 最高級 副食品을 使用하고 있다.

또 一般人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버터, 치즈, 커피등 外製品도 使用하고 있고 西洋料理, 中國料理등 外國料理도 만들고 있는데 이 特殊食堂은 政務院 傘下 人民奉仕委員會의 商業部가 直接 運營하고, 선발된 接待員도 두고 있다.

列車內에 設置된 列車食堂은 政務院 鐵道部の 후방국 관장하에 運營되는데 메뉴는 北韓住民을 위한 비빔밥과 外國人을 위한 비후스틱, 함박스틱, 돈까스, 오무라이스 등이고 外國人을 除外한 取食客은 양권과 食代를 함께 提出해야 한다.

人民大衆이 가장 愛用하고 있고 各地域別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국수집인데 여기에서 取扱하는 메뉴는 강냉이국수, 일반국수, 짜장면, 우동 등이고 利用節次와 內容은 一般食堂과 같다.

北韓에는 개고기와 개장국만을 專門으로 取扱하는 일종의 보신탕집이 있는데 현재 平壤市와 各 直轄市, 道 所在地 등에 몇개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利用은 一般食堂과 같으나 通常 一般食堂에 비해 훨씬 더 붐비고 있다.

食事問題와 관련, 北韓社會에서 가장 特徵的인 것은 속도전 국수라는 것이다.

이 속도전 국수는 1977년 女性을 부엌에서 解放시킨다는 명분하에 창안해낸 일종의 인스턴트국수(라면종류)로 끓는 물에 말아서 먹

을 수도 있고 찬물에 약 10분간 담구어 불린 다음에 먹는 국수와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반죽하여 데어먹는 두가지 種類가 있다. 속도전 국수는 現在 製品生産이 딸려 한달 配給時 1人當 1日分 600g씩 配給하고 國營商店에서 配給된 食糧과 交換하여 利用할 수도 있다한다.

이 국수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맛은 옥수수가루 냄새가 약간이나 양념을 잘할 경우에는 보통 국수맛과 같고 時間이 없거나 調理器具가 없을시 利用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歡迎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住居生活

(가) 住宅所有制度 및 政策

北韓에 있는 모든 建築物은 社會主義 憲法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協同 經理에 들어있는 集團的 所有로 되어 있기 때문에 住宅의 경우 個人所有란 存在할 수가 없다.

당초 北韓에서는 8.15 解放前부터 있던 農村의 구옥이나 都市의 個人家屋에 대해 個人所有를 認定했으나 1958년 家屋을 賣買할 수도 없고 住居移轉의 自由가 없으며 住宅을 個人이 選擇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르므로 인해 종전의 個人所有는 자연 意味를 상실하게 되고 점차 消滅되고 말았다. 住宅의 個人所有가 不可能하고 또 個人建築이 認定되지 않는 관계로 北韓의 住宅은 個人의 기호나 개성에 맞는 設計가 있을 수 없고 오직 建築主인 公共團體가 定하는 一定한 形態와 양식의 住宅이 建設되고 入住者를 選定 配置하게 된다.

住宅樣式은 “民族的 樣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으라”는 黨의 시책에 따라, 外양은 民族傳統의 感覺을 나타내는 樣式을 따르지만 建物의 內容은 社會主義 要求에 맞게 考慮돼야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原則에 따라 北韓當局은 6.25 이후 破壞된 住宅을 復舊 建設하는 過程에서 住民들의 生活環境을 集團化하고 密集化하기 위해 “設計의 標準化와 規格化”의 方針을 세우고 都市에서는 高層아파트化, 農村에서는 聯立住宅의 組立式 工法을 導入하는 등 住宅의 劃一化 政策을 실시했다. 때문에 北韓의 住宅은 新성불가침의 家族 生活單位인 보금자리가 아니라 權力集團의 要求에 따라, 集團主義 生活樣式을 強化, 각종 동원과 통제 그리고 相互 監視를 보다 쉽게 效果的으로 할 수 있고, 規格化된 生活을 통해서 思考方式마저 規格化 시키는데 편리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北韓의 住宅은 단순한 共同管理의 生活空間에 지나지 않으며 家族의 安息處로서의 機能이나 文化生活은 도외시 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當局은 階層에 따라 住宅의 規模와 施設 內容을 달리하는 差別政策을 쓰는 것으로써 社會階層別 位階秩序를 세우고 上層階層, 特權階層에 대한 尊敬心을 誘發시켜 體制에 순종토록 하는 統制效果를 높이려 하고 있다.

한편 北韓當局은 住宅建築物이 經濟發展을 대변하는 展示的 機能이 크고, 南北韓의 經濟社會 比較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現代의 高層아파트를 外國人의 往來가 잦은 평양과 남포, 원산, 함흥, 청진등 大都市에 세우고 있다. 이것은 70년대 7.4 北南共同聲明에 의한 南北對話時期에 南韓의 經濟發展과 都市建設에 크게 자극된 것

이며 김정일 世襲後繼體制의 태동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70년에는 10층~15층의 高層아파트를 集團적으로 建設해 왔으나 80年代에 이르러서는 평양에 20층 아파트의 거리를 만들고 심지어 40층 아파트(2棟)을 세우고 있다.

(나) 住宅建設

6.25 戰爭으로 말미암아 北韓地域에서는 약 60만채의 住宅이 破壞되었다.

休戰直後 前後復舊 3個年計劃 期間에는 工場과 公共施設의 復舊에만 주력하다보니 住宅復舊에는 손을 대지 못했고 이때부터 北韓의 住宅不足現象은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北韓이 住宅復舊建設에 着手한 것은 5個年計劃때 부터인데 5個年計劃 期間中에 40만세대분의 都市住宅과 20만세대분의 農村住宅의 建設을 計劃하고 國家豫算의 基本建設額中 13.4%를 住宅建設資金으로 配當하였다. 그러나, 5個年計劃 自體가 큰 차질을 빚게 되어 59년에 중도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15만2천 세대분만 建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第1次 7個年計劃 때에는 당초 目標年度인 67년까지 1백 20만세대분의 住宅을 建設한다는 計劃을 내세웠으나 큰 蹉跌을 빚게 되어 7個年計劃이 끝난 70년까지 불과 80만세대분의 住宅을 建設, 하는데 그쳤다. 80만세대분의 住宅建設 속에는 農業集團以後 在來式 農家를 헐고 聯立式 集團農家로 改築한 것이 包含되었다.

7個年計劃을 3年間 延長할 것을 決定한 1966年 10月의 黨代表者 會議에서 “住宅建設에 投資된 資金과 資材의 不足은 모든 住

宅建設 工事에서 날림工事を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住宅의 新築보다는 이미 建築한 住宅의 補修工事に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建設된 住宅들이 조잡하고 計劃 숫자를 채우기 위한 날림집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北韓當局이 發表한 바에 의하면 第1次 7個年計劃 期間에 都市 住宅은 8백 44 만 평방미터, 農村住宅이 7백 59 만 평방미터로 모두 80 만 세대분이라고 했다.

이는 1세대당 住宅面積이 平均 20 평방미터로 약 6.2평밖에 안되는 것으로 基本的인 住居面積 保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1971 년부터 시작된 6個年計劃 期間에는 都市와 農村에 1백만세대의 住宅建設을 計劃했다고 發表했으나 6個年計劃 自體가 執行過程에서 대폭 修正 變質되었고 75年 9月 事實상 중도포기(北韓當局은 앞당겨 完遂했다고 發表)를 하게 됨으로써 그 實績은 아주 微微했다.

이어 第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해마다 20만 ~30만 세대분의 住宅建設을 計劃했다고 發表했으나 평양 中心부와 대동강 區域의 문수거리에 고층아파트를 建設하는 등 大都市와 特定地域에 現代的인 고층아파트와 住宅을 建設하는데 치중했을뿐 一般大衆用 住宅建設 實績은 별로 없었다. 특히 이 期間에는 김일성의 70회 生日을 紀念하는 이른바 大紀念碑的 建築物(人民大學習堂,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창광원, 빙상관, 평양산원 등) 工事に 建設力量이 集中된 탓으로 住宅建設計劃에 큰 蹉跌을 招來하였다.

<表-3>

住宅建設現況

期 間	目 標	實 績	備 考
57년~60년	都市 40 만세대 農村 20 만세대	都市·農村합쳐 15 만 2 천세대	
61년~70년	1 백 20 만세대	80 만세대	세대당 住宅面積 20 m ² (6.2평)
71년~76년	1 백 만 세 대	—	10~15층 아파트건설 着手
78년~84년	해마다 20 만~ 30 만세대	—	고층아파트 건설

(대) 住宅管理 및 補修整備

北韓의 住宅은 個人所有가 아닌 公共의 所有로 되어 있으므로 管理도 入住者인 住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公共機關이 집체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管理에 따른 費用은 住民들로부터 回收하고 있는데 都市住宅과 工場企業所의 社宅은 일정액의 使用料를 賃金에서 控除하고 있고 農村住宅의 경우는 協동농장에서 結算分배시에 住宅管理費를 共同負擔으로 한몫에 공제 적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이 낡아서 비가 새고 벽이 무너졌다고 해도 入住者의 要求대로 修理 또는 改築을 할 수가 없고 오직 管理事務所의 決定에 따라야 할 뿐이며, 農家의 경우도 協同農場에서 집수리반이 組織되어 修理工事를 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住宅이라고 해도 전혀 愛着心을 갖지 않고 또 愛着心을 갖고 잘 가꾸려고 해도 個人은 建築資材나 物資를 구할 수도 없거니와 언제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한

다는 命命이 나올지 모르는 狀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다. 이같은 事情은 1972年 2月 농근맹 第2次大會에서 한 김일성의 演說 內容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김일성은 이 演說에서 “國家에서는 農民들에게 지어준 文化住宅을 알뜰히 거두지 않고 補修도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못쓰게 되었거나 보기 흉하게 된 집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이따금 農村 집들에 들러보면 어떤 집에서는 장판과 문창호지가 떨어져도 제때에 바르지 않는다”고 했다.

김일성이 말하는 農村文化住宅이란 온갖 文化的 施設을 갖춘 住宅이라서가 아니라 農業集團化 이후 農村住宅을 聯立住宅化하여 한 집에 여러세대가 사는 收容所式 農村住宅을 獨立家屋인 在來式 農家와 區別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것은 北韓의 住宅管理 實態를 김일성 스스로가 밝힌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北韓住民들이 얼마나 자기가 살고 있는 家屋에 愛着心이 없는가를 立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라) 住宅構造 및 配定

北韓에서는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住宅만 봐도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수가 있다.

그것은 北韓社會에서는 철저히 身分과 階層에 따라 住宅을 차별적으로 配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에서는 道, 市, 郡人民委員會에 住宅管理 事務所를 두고 住宅을 配定 管理하는 業務를 맡기고 住宅配定을 身分과 階層에 따라

差等的으로 하는 것을 制度化하고 있다.

예를들면 獨立家屋인 호화주택에는 中央黨 副部長級 이상의 高位 幹部들이 살고 있고, 現代式 고층아파트에는 中央黨 課長級 이상의 幹部들이 入住하고 있으며, 보통 도시형 아파트에는 一般勞動者나 事務員이 방한칸씩 얻어 살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住宅形態와 그 入住者의 身分階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特號住宅 : 副部長級 이상의 高位 黨幹部들이 살고 있는 住宅을 말하며, 크게 세가지로 區分이 된다.

① 副部長級(單層建物 또는 現代式 아파트) ② 部長級(單層 또는 2層의 單獨住宅) ③ 副總理級(2層 單獨住宅)

副部長級の 高位層 아파트는 온돌방 2, 응접실 1, 마루방 1, 창고, 목욕탕, 수세식변소 등 모든 附帶施設이 갖추어져 있으며, 副總理級 住宅에는 정원, 분수, 온실까지 있다.

특별히 黨秘書, 政治局委員, 政務院部長(長官) 등의 特別住宅規模는 대지 3백~5백평에 건평 2백평 정도로 3層構造이며, 경비병력 1개분대와 看護將校 1명이 配置되는 外에 專用料理師 2명, 식모 2명, 운전수 2명, 경리원 1명이 배속되어 있다.

이 배속된 人員들은 모두 國家機關에서 賃金을 주는 國家公務員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인 副部長級이나 部長級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秘密任務를 떠기도 한다.

4號住宅 : 中央黨 課長級 이상, 政務院 局長級 이상, 人民俳優, 功勳藝術人, 大學教授, 企業所 責任者, 人民軍 大佐등 身分階層의 사람들이 산다. 방 2~3개이며, 수세식 변소와 목욕탕, 냉온수시설, 베란다 등의 施設을 갖춘 신형 고층아파트이다. 世帶當 住宅面積은

15~20 평이다.

3號住宅 : 방 2, 부엌 1, 창고 반칸, 변소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3號住宅의 방 2개는 모두 온돌이며, 자기 벽장이 있고 道路面에 면한 방은 베란다가 붙어 있다. 방 한개의 面積은 2평 내외이며, 폭 1.5 m, 길이 3~5 m의 복도가 달려있다. 3號住宅은 각층과 각 방에 給水配管이 施設되어 있는데 水壓關係로 4층 이상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中堅幹部級들이 入住하고 있는 3號住宅의 경우는 더욱 언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방음벽이 잘 안되어 있어 幹部일수록 相互監視와 경계의 도가 높기 때문이다.

2號住宅 : 일반아파트로 방 1~2개, 마루방 1, 부엌 1, 世帶當 面積은 10평 내외이다. 2號住宅은 北韓의 全體住宅數의 약 30%에 달한다.

도급기관의 指導員(職員), 企業所 課長級, 친리마작업반장, 市·郡級機關의 課長, 人民學校와 高等中學校長, 人民軍大尉, 努力有功者 등이 入住하는데 방의 面積은 2.5~3평가량 內部施設은 벽장뿐이고, 共同便所와 共同목욕탕을 利用한다. 수도시설은 되어 있으나 配水가 원활치 못해 공동수도를 利用할 때가 많다.

1號住宅 : 최하급 아파트와 集團 公營住宅, 舊屋(在來式 農家) 農村文化住宅 등 말단 근로자와 협동농장원 등이 사는 住宅이다. 보통 방 1칸에 부엌 반칸짜리, 面積은 公有面積인 복도까지 합해서 6평~8평 정도의 외랑식 아파트를 1號住宅이라고 하는데 1號住宅은 全體 都市住宅의 60%에 달하고 있다.

舊屋(옛農家)의 경우도 여러 家族이 방 하나씩 나누어 살고 있

으며 農村文化住宅은 시멘트 블럭이나 흙벽돌로 지은 것으로 방 하나에 부엌 하나씩 여러 世帶分을 한동에 收容한 것으로 收容所式 建物이다.

70년대 南北對話 이후 北韓에서는 農村文化住宅을 2층 3세대용과 3층 5세대용 등 다양하고 외형이 文化的으로 보이는 農村文化住宅을 鐵道邊이나 幹線道路邊에 建設해 왔다. 이 경우에는 부엌을 共同으로 쓰며, 世帶마다 방 한칸씩 차지하는 식으로 住宅을 配定하고 있다.

社宅과 合宿所 : 위의 各號 住宅 이외에 工場·企業所가 從業員用으로 지어 管理하는 社宅과 合宿所가 北韓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工場·企業所의 社宅의 경우도 職場長과 기사급 이상의 幹部가 居住하는 것과 그 이하급의 從業員이 사는 것으로 區分되어 있다.

幹部級 社宅은 방 2, 부엌 1 이상이며, 목욕탕과 변소 등을 갖추고 있으나 一般從業員 社宅은 방 1, 부엌 1이며, 변소와 목욕탕은 共同으로 使用토록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大規模의 工場企業所가 管理하는 社宅地區를 勞動者區로 명명하여 行政單位로 設定한 곳이 많다.

工場社宅은 工場管理部에서 管理하는데 一般的으로 1세대용에 2세대가 入住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鑛山地域에는 木造로된 假建物인 긴 單層 倉庫形 建物에 여러 世帶가 살고 있는 倉庫式 住宅이 많은데 이것도 社宅에 속한다. 이밖에 住宅으로서는 工場 合宿所가 있다. 合宿所는 獨身從業員들을 收容하며, 男子獨身者 合宿所와 女子獨身者 合宿所 그리고 混成獨身者 合宿所가 있다.

공장 후방부 支配人의 管掌아래 運營되는 이 合宿所에는 扶養家族
이 없는 獨身者로서 자기가 속한 職場長이 연명한 入所 申請書를
내고 申請者의 地位와 政治的 比重에 따라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入所시키고 있다. 이때 入所者는 食糧配給票와 1個月 合宿費를 내
고 食券을 받고 入所하게 된다. 대개의 工場合宿所는 그 施設이
넓고 한방에 4~5명을 收容하는 것이 보통이다.

表 # 4

階層別 住宅配定 實態

號數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備 考
特 號	單獨高級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식 단층 2층 ○ 정원, 냉온방, 수세식 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政務院 副部長 級 以上 ○ 인민군 소장이상 	高級輸入建材 使用
4 號	現代式 高層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3개 ○ 목욕탕, 수세식 변소 ○ 냉온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黨 과장 이상 ○ 정무원 국장 이상 ○ 인민배우, 공훈 예술인 ○ 大學教授, 企業所 責任者 ○ 인민군 대좌 	세대당 15~20坪
3 號	中級 單獨住宅 또는 新 型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機關 指導員 ○ 도급기관 副部長 이상 ○ 기업소 部長 ○ 인민학교·고등중학교장 ○ 인민군 중좌 	세대당 15坪 内外
2 號	一般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개 ○ 마루방 1, 부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지도원, 기업소 과장 ○ 천리마 작업반장 ○ 市·郡級 기관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10坪内外 ○ 공동변소 使用

號數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備 考
			○ 인민학교, 고등중학	○ 全體 家屋의 30 %
1 號	○ 집단 공영 주택 ○ 舊屋 ○ 農村文化 住宅	○ 방 1~2, 부엌 1	○ 말단 근로대중 ○ 말단 事務員 ○ 협동농장원	○ 세대당 6~8 坪 ○ 全體 家屋의 60 %

(매) 住居移轉 및 住宅使用 實態

北韓에 있어서의 住居移轉은 住宅配定 節次에 따라 實施된 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前述한 바와 같이 住宅配定은 階層과 職位에 따라 規格화된 住宅을 配定하게 되는데 통상 新築되는 現代的文化住宅은 高位層 人物에 配定되어 居住移轉을 시키고 人民大衆은 항상 高位層이 쓰던 낡은 住宅을 配定받게 된다.

北韓의 住宅普及率은 約 65 % 水準이고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勞動者가 다른 職場으로 配置되면 최소한 2~3個月間은 남의 집 방 1칸에 臨時로 기거하게 되고 新婚夫婦의 경우에도 방문제가 解決되지 않아 6個月 내지 2年 정도 別居하는 실정이다.

住居移轉의 節次도 北韓에서는 住居移轉의 決定權이 各個人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市·郡 人民委員會 都市經營 事業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黨에서 일방적으로 거주이전 命令을 下達하고 命

승을 받은 住民은 즉시 郡社會安全部의 退居手續, 市·郡 行政委員會의 移動發給證, 住宅管理所의 住宅狀態 確認 등의 모든 行政 節次를 밟아야 하고 節次가 完了되어야만 이사를 할 수 있다.

北韓은 1958 年부터 64 年間 中央黨 집중 指導事業이라는 명목의 政治查察과 住民再登錄 事業을 통해 개성 및 休戰線 일대의 住民, 반당階層으로 숙청된 자들의 연고자들을 집단적으로 압록강 및 두만강 地域의 오지로 이주시킨바 있고 現在에 반 김일성 勢力으로 축출되는 者들에게는 이러한 方法을 쓰고 있다.

最近에는 평양을 깨끗한 革命의 都市, 國際的 都市로 만든다는 구실 아래 지체부자유자나 난장이 등 까지도 索出하여 함경도 地域의 오지로 강제추방 하였고 有事時에 주민동요를 막는다는 구실 하에 성분 불량 階層과 과부들까지 평양 밖으로 추방하였다 한다.

北韓의 家庭燃料은 주로 石炭과 나무이고 1970 年代 이후부터 石油 및 電氣가 都市地域에서 일부 利用되고 있는데 燃料의 購入은 大部分 配給에 의한다.

(배) 北韓의 住宅難

삭월세방과 無許可 不良住宅 등이 自由世界의 住宅難을 代辯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北韓의 경우는 한방에 5~6명의 家族이 산다든가 두쌍의 부부가 한방에서 살며 한집을 두세대가 교대로 살아야 하는 등이 社會주의형 住宅難이라 말할 수 있다.

北韓의 경우 階層과 신분에 따라 供給차별식 住宅配定을 하는 까닭에 住宅難의 고통은 아무런 權力과도 인연이 없는 말단 勞動者와 事務員 그리고 協同農場의 農民이 도맡아 겪어야 한다.

때문에 住宅難은 1號住宅과 工場社宅 地域에서 가장 심하며 그 現像은 北韓의 住宅新築이 해마다 늘어나는 人口增加와 世帶增加數에도 미치지 못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北韓의 住宅普及率은 總世帶數에 비해 65%에 불과한 水準이어서 住宅을 차지하지 못한 35%의 世帶는 남의 집에 얹혀 살든가 부부가 별거하며 住宅配定을 기다리는 狀態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工場社宅의 경우는 晝間勤務를 하는 세대와 夜間勤務를 하는 세대가 교대로 社宅을 使用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집이 없어 벽장이나 다락을 개조, 살고있는 부부도 있다.

대개의 경우 結婚을 한 新婚夫婦는 市·郡 住宅管理 事務所에 住宅配定 申請을 해놓고 1年~2年 동안이나 結婚前에 살던 宿所로 돌아가 제자기 기다려야만 한다.

或 新婚夫婦가 같이 旅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旅館에 들어갈 때에는 대중목욕탕의 남탕, 여탕처럼 신랑은 男子宿所로 가야하고 신부는 여자합숙방에 들어가야 하는 까닭에 北韓에서는 新婚夫婦들이 休日이나 밤에 공원이나 江邊에서 정사를 하다가 발각되어 處罰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住宅配定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단념해야 하고, 他地方으로 轉勤을 했을 경우에는 住宅配定이 안돼 가족과 헤어져 工場舍宿所에 들어가 住宅이 配定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實情이다.

그 중에서도 住宅難은 農村보다 都市가 더욱 심한 편인데, 農村의 경우는 新婚부부들은 住宅이 정식으로 배정될 때까지 협동농장의 목인하에 헛간이나 농기구 倉庫의 한구석에라도 방을 만들어

新婚生活を 할 수가 있다.

(사) 農村地域 戰略的 集團住宅 實態

北韓은 73年度初부터 김일성의 指示에 의해 農村地域의 戰略的 集團住宅을 建設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73年 초경 김일성은 함남 퇴조군 소재 협동농장 現地指導時 협동농장 住宅形成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협동농장의 부락 단위로 家屋이 무질서하게 構築되어 있는 것을 작업장과의 지리를 考慮, 인근 산록 후사면 4~5부 능선상에 2~3層짜리 연립住宅을 集團的으로 構築토록 하였고 지역방어에 유리토록 하기 위해 家屋을 사격과 방호에 편리토록 構築케 하였다. 따라서 무질서하게 既構築된 平地家屋은 철거되어 농토로 개간하였고 農村住民들을 새로 건설한 연립주택에 집단 수용하므로써 간접 색출에 용이하고 각종 집회와 連絡이 용이하게 되는 등 1석3조의 效果를 거둘 수 있었다.

김일성의 이와같은 지시는 그 후 各地域에 擴散되었는데 各郡에서는 1個 협동농장 씩을 選定하여 시범적으로 戰略村을 建設하였다. 그러나 農村의 戰略的 집단주택 건설은 計劃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實例를 들면 함경남도 퇴조군은 73年 초부터 73年末까지 농번기를 除外한 기간에, 황남 안악 및 재령군은 74年7月부터 75年7月까지 新築을 督促하였으나 計劃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집단주택 건설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74.6月경 본격적으로 推進했던 황남 안악군 유성리의 경우 74年

6月부터 75年6月까지 1年間に 걸쳐 인민무력부 산하 1개 건설연대와 황남도 건설사업소가 합동으로 건설에 參與,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工事が 겨우 完工되었고 부락 주위에 높이 약 2m 뗏장으로 방탄벽을 構築하였으며 有線放送網이 各 家庭에까지 설치, 유사시 非常連絡網으로 이용하게끔 되었고 부락주위 고지대에는 사격을 할 수 있는 사격장과 교통호가 부락 武器庫까지 연결되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애) 北韓의 아파트 形態

1) 외량식 아파트

北韓이 組立式 아파트 건설을 시작할 초기에 많이 지은 건물로서 일반노동자와 사무원용으로 設計된 아파트이다. 各層마다 後面으로 단일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단일 복도에 따라 방이 줄지어 있고 방의 크기는 한평반 내지 두평 정도의 온돌방이다.

給水施設과 오물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부들은 연탄재를 버리는 일과 물을 길어 올리는 일에 많은 時間을 허비하고 있다. 아파트 뒷 마당에 김장독을 묻게 되어 있지만 보통 80~100세대가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독을 묻을 공간이 못되어 工場에서 生産한 김치를 利用하는 家庭이 많다.

외량식 아파트는 相互監視 통제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이웃을 경계해야만 한다. 北韓은 1960年代에 들어와 신외량식 아파트라 하여 종전의 아파트 보다 改善된 것을 建設했으나 規模나 内部施設에는 차이가 없고 다만 협소한 베란다를 각 世帶마다 設置했을 뿐이다.

2) 궁륭식 아파트

궁륭식 아파트는 各層마다 中間에 긴 단일복도가 있고 복도 左右에 방이 設置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일명 중간 복도식 아파트라고 한다. 궁륭식 아파트는 보통 방 두칸에 부엌 한칸의 規模로 되어 있는데 住宅難으로 여기에 두세대가 살도록 하는 예가 많다. 궁륭식 아파트는 모두 스팀裝置가 되어 있고 두평반 내지 세평 정도의 방은 전부 다다미방이며 中央暖房 施設이 되어 있어 취사는 石油를 使用하도록 하고 있다.

3) “썩찌아”식 아파트

“썩찌아”는 蘇聯語로서 部分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썩찌아식 아파트는 한개의 현관으로 올라가면 各層마다 두세대 혹은 세세대씩 연결된다. 따라서 한 아파트에는 이런 현관이 다섯개 내지 여섯개씩 가지게 되며 出入口가 다른 이웃 세대와는 전혀 連結이 되지 않는다.

現代式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형식인데 北韓의 전 아파트중 “썩찌아식” 아파트가 차지하는 比率은 매우 적어 주로 幹部用으로 使用된다.

한 世帶當 방 2個(온돌 1, 마룻방 1)와 부엌, 倉庫, 변소를 갖춘것이 있고 방 세개의 規模인 것도 있다.

대부분은 스팀장치가 되어 있으나 간혹 없는 것도 있다.

이 아파트는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벽이 두꺼워 방음이 되는 편이나 現代的 文化生活을 할 수 있는 高級아파트로서의 機能은 없다.

(3) 衣服生活

(가) 衣生活 政策

北韓에서는 먹는 問題와 함께 입는 問題가 現實的으로 가장 심각한 社會的 問題로 되어 있다.

이것은 6.25 以後 北韓이 중공업 優先政策과 과중한 軍事費 負擔, 그리고 住民生活 경시정책이 빚은 결과이며 시급히 解決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問題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第7期 最高人民會議가 또다시 김일성을 國家主席으로 추대한 82年4月에 “먹는 問題와 입는 問題부터 解決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問題”라고 역설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은 먹는 問題와 입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80年代末까지 1천5백만톤의 “알곡고지”와 15억미터의 “천고지”를 무슨일이 있든지 점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0年 동안의 經驗은 北韓當局이 제시하고 선전해온 이른바 알곡고지와 천고지들이 먹는 問題와 입는 問題의 解決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勘案할 때 80年代末에도 이 問題들이 解決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나 北韓 위정자들이 주민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最近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것만은 주목할 사실이다.

지난 80年9月 김정일은 평양의 男女 시민들에 대해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異色的인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特別指示는 김정일이 노동당 6次 大會를 앞두고 평양을 방문하는 外國人들에게 평양 시민들의 인상을 보다 좋게 하기 위

한 것이었다. 이 특별지시 內容은 “여자는 外出時 반드시 화장을 하고 다녀야 하며 색깔이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베레모를 쓰고 양산이 있으면 꼭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해서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려한 색상의 셔츠를 입을 것과 색안경이 있으면 쓰고 다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특별지시가 있는 후 黨高級幹部들의 옷차림은 상당한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당 6차 大會에서 나온 黨幹部들의 服裝을 보면 종전의 人民服 차림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뿐이고 거의 모두가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黨幹部들의 옷차림도 최신 유행을 따른 것은 아니었고 단지 있던 양복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후 大都市 住民들에 대한 화려한 색상의 옷감들이 配給되는 등으로 평양을 비롯한 大都市 주민들의 옷차림은 多樣化되고 있다.

北韓의 위정자들이 住民들의 옷차림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外國人들에게 北韓住民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서 그들의 經濟가 發展했다는 선전이 住民生活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시정하려는 데 있다.

(4) 階層別 衣生活 差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北韓社會에서는 옷차림이 바로 신분증명서이자 계급장의 구실을 하고 있다.

옷만 보면 그사람의 社會的 身分과 職位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北韓에서는 입는 것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階級的으로 차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옷을 選擇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을 差別해서 選擇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차별로 말미암아 黨高級幹部들은 隨時로 옷을 特別히 供給받고 좋은 옷감을 싸게 配給받아 맞춤옷을 해 입을 수가 있고 大都市 住民들은 地方都市 住民들보다 잘 입고 地方都市 住民들은 農村과 벽지 住民들 보다는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형편이다.

이래서 옷차림만 보면 사람의 身分을 알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70年代 南北對話 당시 평양을 訪問하게 된 韓國의 記者들은 가는 곳마다 北韓의 어린이들이 손을 높이 쳐들며 경례를 하는 바람에 어리둥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北韓의 現像에 지나지 않는다.

北韓의 어린이들은 乘用車를 타고 高級 신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韓國의 記者를 보고 黨高級 幹部로 알았던 것이다.

北韓 當局이 衣服의 供給을 階層 差別制로 實施하고 있는 까닭은 첫째로 옷감生産이 중공업 우선과 軍事費 優先政策에 밀려 지지부진한 狀態이고 紡織工業과 縫製工業 등이 落後하여 需要를 充當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階層差別을 制度化 함으로써 階層 上向意識을 刺戟하여 體制에 충성토록 만들려는 통치체제의 要求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 衣生活에 대한 關心 및 流行

北韓은 織物生産量의 絶對的 不足과 女姓들의 사회주의 建設 동원으로 作業服 着用時間이 많아서 流行과 모양보다는 一般的

으로 活動的인 옷차림을 하게 된다.

또 사람들이 衣服의 選擇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配給制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옷의 유행도 옷을 입는 大衆속에서 創出되
기 보다는 옷을 配給하는 政治權力의 作用에 따라 左右되는 實情
이다. 따라서 유행에 대한 關心도 옷을 選擇할 餘裕가 있는 高
位幹部層과 그 家族 즉, 身分과 지위가 높을수록 강렬하고 반대로
지위가 낮을수록 流行에 대해 無關心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勞動者와 農民 등 住民 大衆은 規格化된 저질의 작업복
이 日常服으로 되었고 黨員과 事務員은 남자의 경우 人民服이 유
니폼화 되고 여자의 경우는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많이 입었다.

이같은 옷차림이 革命的 옷차림의 기본형인 것처럼 인식되고 화
려한 옷차림은 資本主義 잔재로 罪惡시 되기까지 했다.

이렇던 北韓住民들의 옷차림에 유행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1959年부터 시작된 在日同胞의 北送이었다. 北送同胞들의 多様な
옷차림에 刺戟받아 폐쇄사회 속에서 變化를 몰랐던 北韓住民들의
옷차림에도 流行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자들의 양복바지 가랭이가 좁아지고 신사복의 디자인이 變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고 여자들이 양장에 눈을 뜨게 된것도 北送僑
胞들의 影響을 받아서였다.

그러나 政治權力에 의해 北韓住民들의 옷차림에 새로운 流行이
강요되기는 70年代 南北對話 時期가 아닐 수 없다.

72年 第1次 南北赤十字會談이 평양에서 열릴 때의 일이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代表들이 오면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 때
문에 망신을 당하겠다. 그러니 特히 여자들의 옷차림을 화려하게

해야겠다”고 하면서 옷工場에 緊急命令을 내려 평양시 中心部の 여성들에게 빨리 원피스를 供給하라고 했다.

김일성의 명령이 떨어지자 여자옷 工場들에서는 徹夜 突擊作業을 해서 수천벌의 원피스를 만들어 供給하게 되었는데 이 때 配給된 원피스는 모두가 똑같은 천에 똑같은 무늬의 옷들이고 다만 색깔이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색상이 화려한 프린트 무늬의 원피스는 새로운 유행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자들의 통치마 길이가 무릎을 尙해 짧아지고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가 大都市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이다.

韓國 記者의 카메라에 남루하고 획일적인 옷차림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北韓의 獨裁者가 신경을 썼으며 또 人民의 樂園을 연출하느라고 애를 썼는지 모른다.

政治權力에 의해 北韓住民들의 옷차림이 밝고 명랑하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努力은 지금도 北韓의 大都市들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평양을 비롯하여 外國人들의 來往이 잦은 大都市 住民들에게 “옷을 多樣하게 着用하라”고 指示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政治權力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식의 옷차림 유행은 北韓의 地方都市와 農村住民들의 불만을 暴發點으로 물고가는 副作用을 빚고 있어 김정일 體制의 새로운 위기로 作用하고 있다.

大都市의 옷차림이 화려해지는 그늘 밑에서 地方住民들의 옷차림은 더욱 초라해지고 있으며 配給制 차별의 희생을 더욱 심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 被服供給 및 配定實態

北韓은 衣類供給에 있어서도 中央供給 對象과 一般供給 對象의 차별이 심하다.

中央供給 對象은 그 급수에 따라 1년에 몇벌씩 양복 또는 복지를 無料로 供給받고, 1級以上 特級(副部長級 以上)에는 制限없이 最高級 輸入服紙를 支給하지만 一般供給 對象은 1년에 한번 정도 勞사용 物資라고 하여 질이 나쁜 광목, 포플린, 스프리클 등이 配給된다.

옷의 種類에 따른 階層別 供給實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투: 외투는 中央供給 對象에게 주로 供給된다. “오바”라고 불리는 긴 외투가 있다. 一般住民들은 고작해야 솜누비 외투를 입을 수 있다. 오바지 供給은 中央供給 對象에 限하여 3年 1回 無料로 供給하는데 마취 입을 때에는 양복부에 그 代金을 支給하면 된다.

코트: (春秋用 외투): 中央供給 대상자들에게 配給되는 春秋用 복지로 마춤복과 기성복이 있다. 特權層에는 복지가 無料供給 되지만 일반 住民들은 값이 비싸고 交換商品의 制限이 있기 때문에 購入하기가 어렵다.

한복: 北韓女姓들이 입는 대부분의 한복은 흰 저고리에 검정색 통치마인데 現在 北韓女姓들의 80%가 한복을 주로 입는다. 옷감은 中央供給 對象인 家庭에서는 양단, 공단, 빌로드, 뉴퐁 등의 高級옷감으로 한복을 지어 입는다. 값은 양단치마 저고리 한벌에

100 원 ~ 130 원, 뉴퐁치마 저고리 50 원 ~ 100 원으로 一般家庭에서는 엄두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一般家庭에서는 광목이나 옥양목 혹은 스프사로 된 인조견을 擇하며 10 원 안팎의 값이 든다.

양복 : 北韓의 남자들이 입는 양복 種類는 모양이나 복지가 極히 限定되어 있다. 種類는 신사복, 인민복, 작업복, 아동복, 학생복으로 區分되며 복지는 모직, 면직, 혼방, 化學纖維 등이 있다.

신사복 : 평양 등 大都市 住民에게는 出退勤時의 外出服으로 신사복에 넥타이 차림이 김정일의 指示로 强요되고 있어 신사복 차림의 남자가 늘고 있다.

평양과 같은 大都市 住民들에게는 最近 特別配給으로 신사복지를 供給하고 있는 데 그 값이 비싸(모직은 1 미터당 80 원 혼방직은 1 미터 48 원) 住民들의 큰 負擔이 되고 있다.

地方이나 農村住民들은 값도 비싸고 입고 다닐 環境이 못돼 입을 수가 없는 實情이다.

인민복 : 黨幹部를 비롯한 指導員, 事務員, 勞動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의 住民들이 통상 外出服으로 입는다. 복지는 幹部級을 除外하고는 대부분 化學纖維나 混紡織物로 된 것과 대마직으로 된 것이 있다. 一般勤勞者들은 1年 내지 2年에 한벌 配給을 받아 購入한다.

作業服 : 勤勞者, 農民 등 作業場에서 일하는 勤勞層이 입는다. 대마직이나 광목에 물들인 것으로 만들어졌고 모형은 職種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팔소매와 다리목을 단추로 채워 조르도록 되어

있다. 作業服이 통상 出退勤服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職種에 따라 1年 또는 2年에 한벌씩 配給되고 있고 값은 60원이다.

양장 : 北韓 女姓들의 양장은 차라리 양복에 가깝다. 양장을 하는 女姓이 적고 양장의 種類도 단조로우며 中央供給 對象인 女姓들도 복지를 가까운 양복부에서 옷을 지어 입기 때문에 團體服과 같은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원피스는 工場이나 作業場에 나가는 女姓들이 많아 利用하고 있으며, 투피스는 복지를 가지고 가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一般供給對象은 입지 못한다. 따라서 투피스 차림의 女姓은 中央供給對象, 藝術人, 記者, 교원 등 宣傳煽動 일꾼들이다.

내의류 : 男子는 런닝셔츠와 팬티, 女子는 그외에 속치마가 더 있는 程度이다. 冬內衣는 綿製와 털內衣가 있다. 女子의 속치마는 나일론製品이 많고 브래지어는 없다.

綿製品 冬內衣, 털內衣, 春秋用 內衣는 一般住民은 價格이 비싸고 제약이 많아 사입기가 어렵고 幹部級 家庭에서 利用하고 있을 뿐이다. 그 중 털內衣는 北送僑胞들이 갖고 온 것으로 國內生産品은 거의 없는 實情이다.

점퍼류 : 가죽, 인조피, 천으로 된 점퍼가 있으나 값이 비싸고 物件이 귀하기 때문에 黨幹部級이나 입고 다닐 程度이며 北韓에서는 점퍼가 高級服裝에 속한다.

스웨터류 : 모사, 나이론사, 스프사 등으로 짠 스웨터가 生産되나 價格이 비싸고 作業服이 아니기 때문에 勞動者들은 입을 必要가

없다.

利用度は 約 3%로 極히 낮은 편이며 黨幹部와 그 家族들 外에는 입는 사람이 없고 北韓産 스웨터는 質이 좋지 않아 特權層에서는 中共製, 蘇聯製, 東歐製 등을 입는다.

마춤服 : 中央供給 對象인 副部長級 이상은 1년에 몇벌씩 양복지와 의투지 등을 供給받아 이것을 편의협동조합 양복부에 가지고 가서 돈을 내고 마추어 입는다.

一般供給 對象은 복지공급이 없기 때문에 마춤복을 기대할 수 없다. 혹 복지가 있더라도 마추어 입지 못하게 은연중 加해지는 壓力으로 말미암아 마추어 입기가 매우 불편하다.

中央供給 對象가운데 特權層은 마춤옷의 모양이 거의 모두가 일정하기 때문에 外國出張이나 外賓接待를 위해 外國의 流行을 따라 外國에서 마추어 입는 경우가 많다.

기성복 : 北韓住民 대부분이 一般供給對象에 該當되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기성복을 입는다. 그러나 기성복의 規格이 多樣하지 않아 일단은 가정에서 손을 보아야 한다.

침구류 : 北韓의 침구류는 대부분이 포플린, 광목, 인조견이 대부분이다. 이부자리 한채의 천 값만 100원, 솜 1ㄷ당 10원이 넘기 때문에 一般住民은 새로 장만하는 것이 어려운 實情이다. 一般家庭의 침구종류는 이불, 요, 베개 程度이나, 이불도 솜이불 뿐이고 幹部級 家庭에서는 누비이불을 간혹 만들어 쓰고 있다. 담요는 軍隊에서만 使用하고 있고 일반에게는 販賣禁止 되어 있는데

1982年 김일성의 70회 생일선물로 全世帶當 담요 1매를 日本으로부터 輸入하여 支給한바 있다.

北韓의 가정에서는 通常 침구의 數가 食口數에 比하여 不足하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고 식구들이 共同使用하는 關係로 세탁이 용이하지 않아 衛生上으로도 불결하다.

장신구류 : 北韓에서는 장신구류가 사치品으로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一般住民이 使用할 수 있는 것은 파라솔, 핸드백, 목도리 程度이며 舞臺藝術人들을 除外하고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黨幹部 등 特權層 이상 家族들은 禁止된 장신구를 갖는 傾向이 늘고 있고 장신구를 갖는다는 自體가 特權層과 上流層임을 表示하는 것이다.

表 # 5 階層別 被服着用 實態

區分 作業別	夏 期			冬 期			
	外出 및 出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 및 出張	勤務時	平常時	
勞働者	Y셔츠(데드롱) 신사복 下衣 (데드롱)	混紡織 作業服	남방셔츠 (데드롱)	마직외투 데드롱 양복	混紡織 作業服	“다우다” 솜冬服 上衣 데드롱 下衣	1~2着
事務員	Y셔츠(데드롱) 신사복 下衣 (모직)	비날혼 방作業 服	남방셔츠 (데드롱)	모직외투 신사복 下 衣(모직)	솜冬服 혼방직	“다우다” 冬服上衣 데드롱 下衣	”

區分 作 業 別	夏 期			冬 期			保 有
	外出 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 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學 生	남방셔츠(白色 綿織) 비날혼방下衣 (黑色)	비날혼 방작업 복	남방셔츠 (데드롱)	“다우다” 솜冬服 上衣,비날 혼방下衣	솜冬服 혼방직	“다우다” 冬服上衣 데드롱 下衣	1~2着

(마) 衣服의 암거래 및 物物交換

北韓에서는 高級幹部級 特權層에게는 外貨를 들여 輸入한 外製服紙까지도 무상으로 支給하고 있으면서도 一般供給 對象인 勞動者, 事務員과 農民에게는 賃金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값으로 옷과 옷감을 配給制로 팔고 있다.

表 # 6 主要 被服類의 供給과 價格(一般住民)

品 目	單位	價 格	供 給 方 法	備 考
비닐 혼방 직 기 성 복	1 벌	108 원	1년에 한벌씩 配給	* 基準대로 나오지 않음
작업 복	"	60 원	1年 2年 한벌 配給	
冬 내 의	"	38 원	1年 1벌 配給	
솜 동 복	"	62 원	4年 1벌	
반소매런닝조끼	1 장	2 원 80 전	世帶當 1年 1장	品貴狀態
조끼런닝	"	2 원 10 전	"	
털 모 자	1 개	25	自由販賣	"
비닐 구 두	1 켤레	4 원 50 전	世帶當 1年 1 켤레	
면 장 갑	1 개	3 원 50 전	自由販賣	* 物品에 따라 收賣額數가 다 다름
데드롱 셔츠	1 장	60 원	交換商品	
나이론 셔츠	"	61 원	"	
나이론 스타킹	1 켤레	12 원	"	
모 직 천	1 m	80 원	"	

이것은 입을 옷을 가지고 貨金에 비해 相對的으로 비싼 부동산 政策을 써서 이중착취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北韓當局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교환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 2중 3중의 擄取를 하고 있다.

交換商品이란 주로 農民을 相對로 糧穀이나 外貨벌이 物資를 當局에 一定 수량을 수매해야만이 購入할 수가 있는 商品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데드롱 셔츠를 1장에 60 원을 주고 購入하기 위해서는 백미 14.5 kg이나 강냉이 29 kg를 수매사업소에 수매를 해야만 된다. 이것은 協同農場의 農民들 속에 決算分配時 多少의 여유 糧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手段으로 옷을 交換商品으로 내놓은 것이다.

쌀이나 강냉이 등 穀物 以外에도 外貨벌이를 위한 物資인 토끼 털이나 뱀, 약재등을 채취한 것을 수매할 경우에도 그 수매액수에 따라 交換商品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外貨벌이 物資의 蒐集을 督勵하고 있다.

北韓의 위정자들이 交換商品 制度를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北韓의 옷 사정이 극악의 狀態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北韓에서는 옷과 옷감의 암거래가 성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급 당원들의 家族이 사들인 한복감이든가 북송재일동포들에서 나온 외국제 옷들이 비싼 값에 去來되고 있다.

특히 북송자들은 不足한 食量을 얻기 위해 日本서 갖고 온 옷이나 日本의 친척들이 보내준 衣服을 食量이나 現金을 받고 암거래하고 있다. 일본제 스카프 한장이 勞動者 한 달 임금과 맞먹는 60 - 70 원에 팔리고 있으니 北韓의 衣類事情이 얼마나 절망적 狀

態인가를 證明하고 있다.

나. 生必品 供給 및 副業

(1) 生必品 供給 및 統制

北韓은 1974年 5月 以前부터 一般住民들에게 生必品 供給을 統制해 왔는바 初期 當時는 一部 食料品과 比較的 高級品에 限하여 統制하던것이 74年 5月부터는 生活必需品 統制를 強化, 大部分의 工業製品과 副食品까지도 市·郡 行政委員會 商業管理處에서 일일이 統制하고 있다.

北韓이 生活必需品를 統制하는 목적은 生活必需品 生産不足을 은폐하고 勞動力을 搾取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統制方法은 生必品을 配定品과 自由販賣品으로 區分, 供給카드에 의하여 指定된 商店에서만 購買토록 하고 있다.

購買카드로 通常 購買가 可能한 物品은 食料品の 경우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소금, 육류, 계란, 생선 및 건어물, 젓갈, 담배, 당과류, 주류등이 包含되고 工業製品으로는 나이롱 및 데드롱 내의류, 학생교복, 데드롱양복, 비닐신발류, 연필 및 공책, 비닐책가방, 나이롱 양말, 세탁비누, 성냥, 대야, 물통, 주전자, 술, 기타 연료 등이다.

다음 個人이 任意로 一般商店에서 自由로이 購買할 수 있는 物件은 면직천, 혼방직, 노동복, 고무장화, 노동화, 샌달, 셔츠, 지우개, 손칼, 삼각자, 필통, 만년필, 넥타이, 학생모, 여자용핸드백, 트렁크, 우산, 전기다리미, 석유곤로, 라이타, 전구, 화장비누, 손수건, 면도날, 화장크림, 머리기름, 향수, 손거울, 면양말, 가죽장갑, 일반용모자, 벽시계

탁상시계, 완구류, 면직내의류, 운동기구 등이다.

一般住民에게 發給되는 供給카드는 洞·里사무소, 協同農場管理委員會에서 發給한다.

供給카드의 種類에는 食料品 供給카드, 工產品 供給카드, 燃料供給카드의 3種類가 있는데 食料品 供給카드의 경우를 보면 식구수에 따라 配定하고 供給量은 一般勞動者나 農民의 경우 다음과 같다.

표 # 7 勞動者, 農民의 食品供給量

品名	單位	數量	單價	備考
간장 (1인 기준)	ℓ	2	80전	1개월분
된장 (")	kg	2-3	30전	"
고추장 (")	"	1-2	80전	"
식용유 (")	g	100	80전	명절시 공급 (4.15, 10.10, 1.1)
계란 (1인 기준)	개	1	17전	명절시 공급
과자 (5인 식구)	kg	1	1원60전	"
알사탕 (")	"	1	2원	"
식빵 (")	"	1	60전	명절이외 2-3차 공급
돼지고기 및 닭고기 (5인식구)	"	1	9원	명절시 공급
소금 (")	"	40	3전	연간 1회 (김장시)
식초	홉	2	80전	세대별 연1회
생동태	kg	2	30전	명절시 공급

品名	單位	數量	單價	備考
염동태 (1인기준)	kg	2	35 전	명절시 공급
염청어 (")	"	2	80 전	"
새우젓 (5인이하)	"	2	40 전	2 - 3개월 1회
미역	"	1	8 원	해산시, 명절시

供給카드 使用要領에서 食料品 購買는 食料品 供給카드와 세대주 인장을 지참, 指定된 商店에서 購買하고 販賣時에는 商店에 保管되어 있는 각 세대별 食料品 供給카드와 購買者가 지참한 供給카드를 대조 확인한 후 販賣量과 販賣日時를 記錄하고 記錄後에는 購買者 카드에는 販賣員이 捺印하고 商店保管用 카드에는 購買者가 捺印한다.

每月 定期的으로 販賣하지 않는 物品을 供給販賣할 경우에는 人民班長이 各 世帶別로 通報하는데 이때의 購買要領은 食料品 供給時와 같다.

다음 工產品 카드에 對한 供給境遇를 보면 世帶別 식구수에 比例하여 商品을 供給하게 되는데 一般勞動者나 農民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 8 勞動者 · 農民의 工產品 供給配定表

品名	單位	數量	單價	備考
세탁비누	개	1	80 전	세대별 월 1개
나이론 세타	벌	1	80 전	1인당 2 - 3년 1착

品 名	單位	數 量	單 價	備 考
나이론 안다	벌	1	70전	1인당 2-3년 1착
데드롱 세타	"	1	70전	"
" 안다	"	1	60전	"
면직뽀뿌링	m	4	5원	2-3년간 (세대별)
전자직	"	6	6원	"
와이셔츠	착	1	35원	1인당 2-3년 1착
담 배	갑	2		1인 1개월 25세이상 남자와 50세이상 여자
성 냥	"	10	5전	세대당 2-3개월에 1회
남방셔츠 (데드롱)	착	1	30원	1인당 2-3년 1착
런 닝 (면)	"	2	4원	연간 1인당
나이롱양말	족	1	8원	5-6년간 1인당 1착
범랑바겟스	개	1	35원	2-3년간 1개 (세대별)
범랑세면기	"	1	30원 9	"
양철바겟스	"	1	25원	"
비닐세면기	"	1	4원	"
단화 (돈피)	족	1	30원	2-3년간 1인당 1족
솟 (알미늄)	개	2	20원	2-3년간 (세대별)
냄비 (알미늄)	"	3	8원	"
비닐접시	개	4	3원	"
주전자	"	1	18원	"
비닐바가지	"	3	80전	"

燃料供給 카드는 世帶別로 支給하며 供給量은 다음과 같다.

표 # 9 世帶當 燃料配定量

品名		單位	數量	單價	備考
무연탄	가루탄	톤	1.5	8원 40전	1년분
	구공탄	"	1.5	6원 80전	"
석유		ℓ	10	20전	세대별 매월 공급

北韓에서 使用하고 있는 各種 카드 樣式은 다음과 같다.

○ 食料品 카드

세대주 : ○○○ ○○동(리)○반 인원수 : ○○명

품명	월					
		1	2	10	11	12
간장						
된장						
계란						
돼지						
담배						
동태						
미역						

구매량 ○○시(군)행정위원회 ○○동사무소
 일자 및 판매원 직인 (관리위원회 → 공인)
 사무장(관리위원장) ○○○실인

○ 工産品 카드

세탁비누 월 일	세탁비누	세탁비누	세탁비누	세탁비누	17cm
세면기 월 일	세면기	세면기	세면기	세면기	
양말 월 일	양말	양말	양말	양말	
13cm					

* 청색, 흑색, 황색, 적색 등으로 인쇄.

○ 燃料供給 카드

- 표지전면 “燃料供給 카-드” 명기
- 표지뒷면

○○동 (리) ○반		
세대주 ○ ○ ○	인원수 ○	공인
○○시 (군) 행정위원회 연료관리소		실인
지배인 ○ ○ ○		
13cm		
9cm		

- 카드

품명	월	1		2		11		12	
무연탄									
석유									

구매량 → 일자 및 판매원 실인

(2) 부업실태

北韓에서는 72年初 金日成의 교시에 따라 부업을 獎勵하고 있는데 부업의 種類는 가축사육, 터밭 작물재배, 양봉 등이라 한다.

住民들의 부업을 支援하기 위해 各級 機關에서는 많은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데 機關別 主要 支援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市·郡 收買事業所에는 사료공급, 가축종자 분양과 가축수매를 管掌하고 있고 協同農場 管理委員會에서는 世帶別 가축사육 現況 把握과 가축에 대한 방역 및 사료支援 對策을 講究하며 人民班에서는 班內의 가축사육 世帶別現況 把握과 收買對象 가축의 밀도살을 감시하고 세대별 家畜飼育 실적총화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 교시 관철을 위하여 전주민에게 促求하고 있는 부업 獎勵策을 보면 世帶別로 토끼 2마리, 개 한마리, 돼지 2마리를 사육하도록 勸獎하고 있는데 통상 勞動時間 연장에 따른 여가부족, 사료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73年 初부터 扶養對象者가 없는 事務員 勞動者 世帶에 限하여 의무적으로 家畜을 飼育하고 기타 住民들은 希望에 따라 飼育토록 指示되었다.

표 # 9

農村世帶別 家畜 飼育數

家 畜	世帶中 飼育比率 (%)	飼育數
닭	전 세 대	5 - 6 마리
개	세 대 60 %	1 - 마리
돼 지	세 대 약 50 %	1 - 2 마리
염 소	"	2 - 3 마리
토 끼	매 세 대	2 - 3 마리

표 # 10

都市地域 世帶別 家畜飼育數

區 分	世帶中 飼育比率 (%)	家 畜 數
닭	약 20 %	1 - 2 마리
토끼	약 30 %	1 - 2 마리
개	약 20 %	1 마리
돼지	약 30 %	1 - 2 마리
염소	약 20 %	2 - 3 마리

副業用 家畜의 증자는 收買事業所에서 분양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양적으로 달려 利用者가 적고 大部分 農民市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 購入하고 있는데 그 價格은 병아리 1 원, 강아지 15 원, 토끼 6 - 7 원, 돼지 35 - 40 원, 염소 50 - 60 원에 去來되고 있다. 副業用 飼料은 각자가 購入토록 되어 있으나 돼지飼料에 限하여서는 收買事業所에서 옥수수대를 紛碎한 가루나 食料品工場에서 나오는 찌꺼기 주조공장에서 나오는 모주 등을 돼지수에 關係없이 1 마리당 월 20 kg씩 購入할 수 있는데 價格은 1 kg당 20 전이다. 그러나 收買事業所에서 販賣供給되는 飼料로서는 거의가 不足하므로 일부 住民들은 찻흙에 된장을 풀어서 돼지사료로 充當하고 있는 事例가 있어 돼지의 발육상태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고 일부 家庭에서는 家畜을 방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家畜우리는 農村地域의 경우 個人住宅에 家畜우리를 만들어 飼育하고 있으나 都市 아파트居住者들은 아파트공지에 集團적으로 돼지우리를 만들어 각세대별로 시건장치를 해두고 사육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파리, 모기, 악취 등으로 주민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副業用 家畜飼育은 個人에게 直接的인 所得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管理하고 있으나 飼料不足, 일손不足, 施設不足 및 환경불비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副業用 家畜處理는 飼育者 任意로 處分할 수 있는 家畜과 의무적으로 收買事業所에 收買해야 하는 家畜으로 區分되는데 닭과 염소는 任意處分이 可能하나 기타 家畜은 定량 收買하여야 한다. 개의 경우 7kg이상이 되어야 收買가 可能한데 통상 고기는 飼育者 任意로 處分하고 가죽만 收買하면 되고 販賣 및 收買價格은 고기 1kg당 4원, 가죽(중견)은 25 - 30원 정도이다.

돼지는 50kg이상 또는 발병시 收買可能토록 되어 있으나 徹底히 統制하고 있어 밀도살이 적발되면 벌금과 비관을 받으며 收買價格은 1kg당 7원이다.

토끼는 800g 이상시 收買하되 通常 고기는 任意로 處分하고 가죽만 收買하는데 收買價格은 3 - 4원 정도이다.

다음 텃밭 부업을 보면 對象은 농장원 전원이고 세대당 포전면적은 약 20 - 30평 정도이다. 텃밭부업은 통상 주택부근의 공터에 한하고 각 個人이 任意로 작물을 재배, 처분하고 있는데 작물재배 시간은 정상적인 일과후의 여가시간을 이용한다. 텃밭에서 生産되는 작물은 무우, 고추, 마늘, 파등의 채소류와 기타 옥수수, 감자등 穀物도 재배하고 있는데 비료 및 農藥등은 協同農場 管理委員會를 통하여 個別的으로 購入, 使用하고 있다.

텃밭의 作物은 共同所有인 協同農場 포전보다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재배하기 때문에 單位面積當 소출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生産物은 大部分 家庭에서 使用하거나 農民市場에서 販賣한다. 以外에도 中央의 統制를 받지않고 住民任意로 할 수 있는 副業으로 양봉이 있으나 大部分 산골 농장원들에 한해 극소수 實施하고 있을 뿐이다.

표 # 11

生必品 供給節次 및 實態

品 種	供給節次 및 實態	備 考
식 량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을 除外한 全住民에 배급제 ○ 협동농장원은 結算분배제이나 배급제에 準해 食糧공급 ○ 쌀 1kg당 60전에 收買하여 8전에 配給하는 이중 곡가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옥수수 등 암거래 잔존 ○ 암거래 가격은 1kg당 쌀은 15원, 옥수수는 8-9원임.
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장, 된장, 소금, 고추장, 식용류 등 기본 부식류는 배급제 ○ 육류, 어류 등은 할당제 또는 구매표(일종의 구폰)에 의한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는 연 2-3회 할당 ○ 어류(생선)은 월 1-2회 할당

品 種	供 給 節 次 및 實 態	備 考
채소 및 과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店에서 自由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季節別 共同購買 分配實施
과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아소, 유치원 수용어린이 게 每日 一定量 供給 ○ 年 2 - 3 回 慶祝日에 一定 量 割當 ○ 商店에서 自由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店에서 自由購買 可能하나 品種이 制限되어 있고 고 가이며 大部分 품 절 狀態임.
飲料 및 酒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酒類는 結婚, 장래, 회갑등 관혼상제시 申請에 의해 割當 ○ 청량음료는 任意 購買 可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結婚時 酒類 5 ℓ, 기타는 2 ℓ 以內
燃 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庭用 無煙炭은 配給制임. ○ 石油, 개스 등은 購買票에 依據 商店에서 購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石油, 개스는 고위 특수층에 한해 사 용.
담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련은 卍연자 1人 1個月 15 갑에 한해 구매표로 구 입. ○ 봉지담배는 세대수 관계없 이 세대당 월 2 봉 配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個人이 自由로이 購買할 수 없음.

品 種	供 給 節 次 및 實 態	備 考
통조림 및 병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店에서 自由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로 販賣되고 있으며 平壤, 大都市를 除外하고는 大部分 品절 狀態 임.
織物, 衣 類, 신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피복(동·하節期 일상 복 및 作業服등)은 配給 制. ○ 其他는 商店에서 購買 ○ 工場, 職場別로 織物 共同 購入, 割當 ○ 노동화, 운동화 등은 일정 량 配給하고 그 이상은 商店에서 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政 幹部級은 織物과 現金으로 支給, 마추어 입도록 措置. ○ 기본피복: 동복, 하복 각 2 착, 동내의 각 2 착 학생복, 아동복 등임.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학용품은 학교에 配定, 學校當局에 의해 學生에 配給 ○ 기타 학용품은 商店에서 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학용품: 노트, 연필, 지우개, 자, 칼, 크레용 등
家具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장, 이불장, 찬장, 책장등은 할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般住民에 옷장, 이불장 등의 割當

品 種	供 給 節 次 및 實 態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其他는 購買制 	<p>은 극히 制限되어 있음.</p>
<p>消耗品 및 화장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店에서 自由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供給不足으로 大部分의 商店에서는 품절 현상임.
<p>家庭用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店에서 自由購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部分 地方 細小 工場製品
<p>家電製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割當料에 依據 販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電氣밥솥에 한해 個人 購買 可能
<p>高價品 및 貴金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 재봉틀 등은 할당표에 의거 판매 ○ 金, 銀, 寶石 등 貴金屬 去來는 일체 禁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價 策定으로 一般人的 購買 困難
<p>醫藥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庭救急藥 範圍에서 商店 販賣 ○ 보신, 강장제류는 고위층 및 外國人에 限해 高價 販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救急藥類는 一般人的 購買가 可能하나 商品品切로 購買가 困難함.

다.賃金水準

(1) 勞賃의 種類 및 支給形態

北韓에서 賃金은 勞動賃金を 意味하며 當局이 社會主義 分配原則에 따라 勞動의 質과 量에 依據 勞動者 事務員에게 貨幣的 形態 또는 實物的 形態로 支給되는 國民所得의 한 部門을 意味한다.

賃金支拂 形態는 定額勞賃, 都給勞賃, 半都給勞賃, 加給金과 賞金등이다.

定額勞賃이란 勞動者들이 遂行한 勞動時間과 그들이 가진 機能等級에 따라 規定된 賃金基準額에 依據 勞賃을 計算하고 支拂하는 形便이다. 定額勞賃이 適用되는 경우는 勞動基準量을 制定할 수 없고 作業結果를 數字的으로 計算할 수 없는 生産的 意義가 적은 作業(작업 교환수 등), 도급노동을 適用하면 製品의 質을 底下시킬 수 있는 作業(검수공 시제품을 生産하는 화학분석공 등)에 適用된다.

다음 도급노임은 勞動結果에 대한 計算 및 支拂方法에 따라 단일 도급노임제, 누진도급노임제, 간접노임제로 大別된다. 이러한 도급노임제들은 作業場所와 作業條件에 상응한 勞力組織에 따라 個人도급 임금제와 반도급노임제로 구분된다.

도급노임은 勞動者の 勞賃을 勞動結果에 依하여 直接計算 支拂하므로 定額勞賃에 比하여 勞賃支拂에 있어서 生産能率의 向上을 期할 수 있다. 따라서 工業企業所들에서는 도급노임을 廣範圍하게 適用하는 方向에서 도급노임제가 利用되고 있다.

한편 도급노임의 形態를 보다 細部的으로 說明하면 단일도급 임금제란 勞働者들의 作業基準을 遂行하는 程度에 關係없이 그가 實際로 生産한 量에 따라 단일하게 固定된 도급單價로 報酬가 支拂되는 勞賃制度를 말한다.

그러므로 단일도급임금제에 있어서 勞賃額의 計算은 作業班別로 도급단가가 固定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단가에 生産量 또는 遂行된 基準作業 時間에 該當한 급수의 時間賃金 基準額을 곱하는 方式으로 計算된다.

반도급노임제란 作業班을 단위로 作業課題를 賦課하는 部門에서 適用되는 도급노임 形態로서 作業班 全體의 성과에 따라 개개구성원들에게 勞賃이 計算支拂되는 도급노임제이다. 그러므로 반도급노임제는 個人別 作業結果를 正確히 計算하기가 不可能하거나 또는 여러사람들의 共同勞動만이 勞動生産性を 높일 수 있는 作業部門에 適用된다. 그 장점으로 個人別 作業結果를 正確히 計算할 수 없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共同勞動만이 勞動能率을 높일 수 있는 作業部門에 適用시킬 수 있다.

短點으로 個人作業 成果를 正確히 評價하기 困難하므로 勞働者들에 대한 物質的 刺戟을 弱화시킬 수 있는 短點이 있다.

作業班 우대제는 作業班에 시달된 國家計劃에 基礎하여 우대제 適用을 設定하고 計劃目標를 超過한 結果에 의하여 形成된 利益金을 作業班 성원들에게 基本勞賃과 함께 直接 分配하는 勞賃形態이다.

作業班 우대제는 탄광, 광산, 염전, 마그네샤크랑카 등의 生産部門에 適用되고 있으며 그 長點은 國家計劃을 超過 遂行하는데 대

한 從事者들의 關心과 責賃感을 제고시키며 作業班의 自立的 活動을 強化하고 生産者 全員으로 하여금 企業管理에 積極 參與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加給金은 基準勞賃으로 一律적으로 解決할 수 없는 特殊한 勞動條件 技術을 考慮하여 該當部門 從事者들에게 基準 勞賃以外에 支拂되는 追加的 報酬를 말한다. 例로서 工業企業所들에서는 重要設備 利用率제고상금, 증산절약상금, 品種擴大와 질제고상금, 電力節約賞金 등이 適用되고 있다.

(2) 賃金策定基準

北韓에서 賃金基準이 決定된 것은 1949年 (내각결정 第196號)이지만 一般的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을, 중노동중에도 유해노동의 從事者들과 같이 힘든 勞動에 從事하는 者가 더 많은 賃金を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職種에서 일하는 勞動者라도 勞動의 質(熟練度나 生産性)에 따라 급수가 決定되고 그것에 의하여 賃金水準은 相異하게 調整 決定된다.

事務職에 勤務하는 者는 技術職에 從事하는 者보다 賃金水準이 낮은 것이 一般的 現狀이나 黨事業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職種에 대한 報酬는 相對的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서 職業別 賃金水準 그리고 生産性 關係를 考慮해 보면 자의 보다는 身分과 타의에 의하여 決定 지워진다.

이와같이 北韓은 商品價格과 마찬가지로 勞動의 價格도 國家가 計劃에 立脚하여 決定해 주므로써 勞動者의 能力에 適合한 報酬를

받을 수 없는 形便이다. 그 結果 勞動者는 創意性을 發揮하지 못하고 오로지 機械와 같이 勞動을 強要당할 뿐이다. 이런 結果 勞動生産性의 低下, 生産目標의 差質과 같은 現狀을 종종 惹起하였다.

이러한 現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각종 칭호(노력영웅, 천리마기수, 천리마작업반 등)를 부여하여 競爭意識을 발동시켜 生産의 增大를 圖謀하는 心理的 進술로 勞動者를 기만하고 있다.

近來에 와서는 이러한 方法도 限界性이 드러나자 독립채산제를 實施하여 生産目標 超過達成 從事者들에 대하여 特別賞與金을 주고 있다.

표 # 12

階層別 賃金額

(1984 년말)

區 分	職 業	賃 金
정당 및 사회 단체	부 장 급	350 원
	부 부 장 급	300 원
	군당인민위원장	110 원
	군당인민지도원	100 원
	직맹위원장 (군)	80 원
	사로청위원장 (군)	80 원
	여맹위원장 (군)	75 원
	구락부주임 (군)	80 원
교 직 원	대 학 교 수	150- 190 원
	고등전문학교교원	70- 80 원
	중등학교교원	60- 80 원
	인민학교교원	50- 70 원

區 分	職 業	賃 金
노동자 및 사무 원	3 급	59 원
	4 급	65 원
	5 급	72 원
	6 급	78 원
	7 급	85 원
	8 급	92 원
	지 배 인	180 원
	기 사 장	160 원
	필 기 원	70 원
	사 무 원	65 원

(3) 賃金引上

近代的인 工業經濟에 있어서는 일정한 期間에 걸쳐 賃金差異가 縮少되는 傾向이 있다. 이는 勞動市場에 需要側에 競爭狀態가 造成되면 賃金差異는 일정한 範圍內에서 繼續 縮少될 것이 期待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과 같이 經濟가 當局의 統制下에 있는 경우 賃金の 隔差는 短期에 있어서 固定되지만 일정한 期間을 두고 賃金制度는 폭넓게 改正되는 傾向이 있다.

北韓에서도 1948年 以後 수차례 걸쳐 賃금이 引上되었는바 1954年 4月1日에는 賃금이 25%가 引上되었고 1956年 11월에는 다시 35%, 58年 1月1日에는 10%, 1959年 1月1日에는 일약 40%가 引上되었으며 1970년에는 31.5%, 1976年은 10-24% 引上되었

다고 發表하였으나 1984 年에 끝나는 第2次 7 個年 計劃에서는 計劃目標值도 發表한바 없다.

1960 - 64 年 期間中 平均賃金은 1% - 9%까지 上昇하였고 67 年 10 月 1 日에는 敎員의 賃金만이 40% 引上되었으며 70 年 9 月 1 日에는 軍人과 敎員을 除外한 모든 事務員, 勞動者의 賃金이 31.5% 引上 調整되었다.

이와같이 北韓에 있어서 賃金의 引上調整은 모든 賃金 俸給者의 賃金水準을 끌어올리는 것과 特定한 職種의 賃金만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大別되고 있고 1948 年度나 1950 - 52 年 期間中에도 그러한 賃金改正이 實施되었으나 이는 賃金を 引上調整하게 되는 동기가 實質賃金の 低下를 막고 나아가 賃金隔差를 縮少시키며 賃金隔差에 의해 特定한 經濟活動을 刺戟하고자 賃金引上을 試圖했다고 宣傳하고 있다.

1948 年 4 月 9 日의 賃金 改正이나 동년 5 月 27 日의 賃金 改正은 모든 賃金 俸給勞務者의 賃金を 對象으로 한 것이 아니라 事務員 및 技術者, 산업운수, 遞信 勞務者의 俸給을 改正한데 그치고 있지만 이는 이들 部門에 속하는 俸給賃金 勞動者가 工業部門에 從事하는 勞動者에 비해 各種 보상금이나 加급금 등을 追加的으로 얻을 수 없는 것만큼 經濟部門 相互間에 있어서 相對的 賃金率의 隔差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賃金隔差를 是正키 위한 改正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여 産業部門別 職種別로 勞動의 差異에 따라 勞賃을 區分 適用하는 基準(임금표)을 1949 年 12 月 27 日 內閣決定 第 196 號

로 決定하여 工業部門 相互間의 相對賃金率의 混亂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1952年 5月 1日부터는 技術者들에 對한 優待措置 (가급급제)를 마련하여 生産유인을 強化하였다.

한편 1954年 4月과 1956年 11月에 實施된 賃金引上은 前後復舊 3個年 計劃期間中에 實施한 임금개정으로 한국동란시에 發生한 “인플레” 적인 狀況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58年 1月 1日에 賃金を 10% 引上한 것이나 59年 1月 1日에 40%라는 大暴的인 賃金引上을 단행한 것은 1次 5個年計劃期間中 繼續 임금유인에 의해 生産을 增加시키는 政策이 維持되어왔기 때문에 計劃된 賃金보다 더 많은 賃金の 支給 超過가 생기고 그에 따라 發生한 “인플레” 적 狀況에 對한 事前 調整으로서 賃金を 大幅 引上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 - 64年 期間중에 있어서도 平均賃金은 最小 1%에서 最高 9%에 이르기까지 上昇되고 있으나 이러한 賃金の 上向調整도 賃金の 過渡한 支拂과 小賣價格의 上昇을 事後調整하기 위한 措置였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1967年 10月에 교원들의 賃金を 40%引上하였으나 이는 賃金水準이 거의 固定되어 있는 事務員, 黨職者, 教員, 鐵道從業員 등의 賃金이 各種 임금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勞動者의 賃金보다 크게 뒤떨어지게 되자 이를 是正하기 위해 먼저 教員의 賃金率을 引上調整하고 이어 7個年計劃이 끝나는 1970年 9月 1日부터 軍人과 教員을 除外한 모든 賃金 俸給勞動者의 賃金を 31.5

% 引上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引上幅과 時期가 다른 것은 賃金隔差를 줄이는 한편 賃金の 引上에 隨伴되는 소비재의 不足에 對處하기 위한 措置였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1971年부터 實施된 6個年計劃期間中 勞働者 事務員의 月平均 賃金水準을 1970年度의 70원의 水準에서 27.6%가 上昇된 90원 水準으로 引上하도록 計劃하고 協同農場員의 호당 月平均 所得도 150원으로 올리겠다고 發表하였으나 1977年 同 6個年計劃 總화 發表時에는 勞働者, 事務員의 賃金이 10 - 24%引上 되었다고만 發表하였다.

1978年부터 着手된 第2次 7個年計劃에는 賃金引上에 對한 일체의 言及이 없었고 1984年 末까지 賃金引上 措置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볼때 北韓의 賃金은 1977年 以後 일체 凍結된 狀態라 말할 수 있다.

표 # 13

賃金改正 및 引上經過

期 間	引上率	關 係 法 令	備 考
48. 4. 9	개 정	북조선인민위결정 제 129호	사무원 및 기술자 봉급개정에 관한 결정서
48. 5. 27	개 정	북조선인민위결정 제 139호	산업운수 체신노동자 봉급개정에 관한 결정
50. 1. 1- 3. 31	개 정	내각결정 제 196호 (1949. 12. 27)	노동자임금 적용에 관한 규정 노동자 임금표 (임금등급 임

期 間	引上率	關 係 法 令	備 考
			금계수 및 적용대상자 명시
52. 5. 1	개 정	내각결정 제 72 호 (1952. 4. 24)	기술 일꾼들을 우대함에 관하여 가급급 지불
54. 4. 1	25%	내각결정 제 32 호 (1954. 2. 23)	
56.11	35%		
58. 1. 1	10%	내각결정 제 128 호	민주조선 1966. 8. 3
59. 1. 1	40%	내각결정 제 129 호 (1958. 10. 29)	
1960	6%	평균 화폐임금	조선중앙년감 1961-1965
1961	3%	평균 화폐임금	“금일 조선” 1961
1962	1%	평균 화폐임금	민주조선 1962. 4. 6
1963	9%	평균 화폐임금	민주조선 1963. 1. 27
1964	2%	평균 화폐임금	민주조선 1963. 9. 4
67.10. 1	40% (교원)	내각결정 제11호 (1967. 9. 30)	단 인민학교 교원은 제외 (월평균 노임수준이 70원에 달함.)
70. 8.31	31.5%	내각결정 제 70 호	노동자 사무원 임금
76년말 목표 수준	90원	6개년 계획목표	노동당 사무원 임금
	150원 (월평균)	6개년 계획목표	노동농가 호당 수입
1977	10-24%	6개년계획 총화 발표	노동자 및 사무원 임금
1984	0	제 2 차 7 개년 계획	* 일체의 인상발표 없음

라. 家計收入 및 支出

(1) 家計收入源

北韓의 家計는 黨職者等 支配階層에 屬하는 世帶와 勞動者 世帶 그리고 農家(協同農)로 區分되지만 이중 勤勞者 世帶와 農家の 家計收入만 보더라도 兩者間에 懸隔한 차이가 있다.

“農村에 대한 努力支援 事業을 全人民的 運動으로 벌이며 建設에 대한 指導體制를 고칠데 대하여”(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擴大會議 結論 1963年 1月 7日)에서 보면 “지난해 과부 혼자 400공수를 벌었지만 원래 그 協同農場의 토대가 弱하여 분배몫이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옷도 잘 입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都市라면 本人 700 ρ , 아이들 400-500 ρ 의 食糧이 供給되었을 것이며 勞動服과 신발도 거저 갖게되고 집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勞賃에서 조금씩 節約한다면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신길 수 있으며 家庭用品도 차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農村과 都市의 賃金の 隔差가 심하고 生活水準도 差異가 큰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勞動者 事務員의 家計收入은 貨幣賃금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또한 世帶主人 男子는 工場이나 基本建設 事業에 參加하므로 每月 固定賃金を 받는다.

그리고 北韓에서 農村의 勞動不足이란 現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勞動力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家事에 종사하는 女性을 各種 輕工業 部問에 參加시키거나 地方産業으로부터 도급 또는 割當 받은 作業量을 家庭에서 수행하게 하고(家內作業班) 月間에 提供

한 勞力日數에 따라 賃金を 받게 되어 있다. 또 高等技術學校와 高級中學校學生은 勤員事業에 나가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한 報酬는 獎學金 또는 衣服을 購入할 때 割引하여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의 勤勞者(勞動者, 事務員)의 家計收入은 주로 世帶主인 男性 勞動者의 貨幣收入으로 形成되고 그밖에 主婦 또는 同居家族의 職場 또는 家內工業에 從事한 代價로 얻는 都給賃金으로 構成된다. 물론 勞動者 事務員은 貨幣收入 以外에 약간의 實物給與(作業服과 외투)가 있고 또 生産目標를 초과 達成하게 되면 原價節減에 따르는 “보너스”가 支給되지만 그러한 超過賃金은 賃金 俸給額의 3 - 5% 程度에 不過한데 이나마도 一部分을 수령하게 될 뿐 規則的인 收入이 되는 것은 아니다.

〈表# 14〉 主要階層別 家計所得

職 給	本 人	配 偶 者	未分家子女賃金	計
副 部 長 級	300	0	59	359
大 學 教 授	190	65	59	314
地 方 機 關 長	110	65	59	234
教 員	80	72	59	211
8 級 勞 動 者	92	72	0	164
5 級 勞 動 者	72	72	0	144
事 務 員	70	70	0	140

* 算出根據

1) 主要 階層別 1 人 所得水準 基準

2) 地方 機關長級 以上은 住宅構造(방 2 以上)로 보아 就業中인

未分家 子女 1名 包含

3) 部長級 以上 配偶者는 家事에만 종사

4) 가장의 賃金水準이 낮을수록 配偶者의 勞動級數가 높아지고 있다.

(2) 家計收入 推移

家口當收入 水準의 推移를 보면 1960-69年 期間中 家口員 1人當 收入 增加率은 年平均 4.3% 家口當 收入增加率은 年平均 5.5%이었으나 1970年에 全勞動者 事務員의 賃金水準을 對前年比 平均 31.5% 引上하였으므로 家口當 收入도 109 원에 이른다. 한편 6個年計劃 目標年度인 1976年에는 勞動者 事務員의 平均賃金 水準을 90 원으로 引上시켜 攄으로서 家口當 月收入도 162 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賃金의 上昇趨勢는 1人當 國民所得 上昇趨勢와 比較할 때 훨씬 하회한다.

60年度를 基準(100)으로 할 때 65年度 1人當 國民所得은 135% 成長하였으며 1人當 平均賃金은 126%이다. 1970年度 1人當 國民所得은 174%, 1人當 平均賃金 192%, 1972年度 1人當 國民所得은 203%, 1人當 平均賃金은 203%로서 全般的으로 國民所得成長에 比해 平均賃金成長은 鈍化되었음이 證明되고 있다. 이것은 國民所得의 分配過程에 있어서 政府에 吸收되는 分은 많으나 國民生活에 分配되는 消費支出은 相對적으로 減少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즉 北韓이 目標達成을 위하여 榨取와 收奪을 强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協同農場員의 家計收入 構造는 勞動者 事務員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勞働者 事務員은 貨幣賃金 收入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나 協同農場員은 現金收入뿐만 아니라 現物收入도 重要な 몫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協同農場員의 1961-70年 期間동안에 年平均收入構造를 보면 年間收入 總額을 100%로 할 때 現金收入은 55%, 알곡收入은 39%, 其他 收入이 6%로 나타나고 있다.

勞働者 事務員과 協同農場員의 家計收支를 比較할 境遇 勞働者 事務員의 家計收支는 比較的 安定的인 반면 協同農場員의 家計收支에서는 現金收入은 一定하지만 現物收入은 當該年度 協同農場別 生産量 수매정책에 따른 協同農場的 控除率에 따라서 家計收支는 流動的인 現狀을 초래한다. 1961-70年의 協同農場員의 家計收入의 平均增加率은 14.4%로 나타내고 있다.

1965年 및 66年은 負의 增加率을 나타내며 1961年 및 67年과 68年의 3個年度의 20%以上の 높은 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農家收入이 不安定한 理由로 農業生産性이 自然現狀에 대한 依存渡가 높아 年度別 生産이 不安定하게 增減하고 있었으므로 農場員에게 分配되는 몫도 不安定할수밖에 없다.

(3) 家計支出

엔겔법칙 (Engel's Law)에 의하면 家計支出은 食費, 被服費, 住居費, 光熱費 및 文化費等 5大項目으로 分類했을때 所得의 增加에 따라 食費의 比率은 減少되고, 所得의 增加에도 被服費는 比較的 變動이 적으며, 住居費, 光熱費는 一定하고 文化費는 急激히 增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이상과 같은 엔겔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特異한 現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에서는 家計所得이 늘어나는데 따라 食費의 支出이 늘어나고 있고 英鎊계수도 큰 變動이 없는데 그 理由는 主食費는 配給制에 의해 所得에 關係없이 거의 一定하나 부식비에 있어 所得增大만큼 많이 支出되기 때문이다.

둘째, 被服費는 所得이 增大될수록 支出이 늘고 英鎊계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理由는 高所得 階層에는 高級被服, 多量の 服地를 支給하는 差等分配制를 實施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住居 및 光熱費는 所得이 增加될수록 늘어나고 英鎊계수도 높아지는데 그 原因은 高所得層일수록 住宅配定에서 많은 面積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文化·衛生費는 高所得層이나 低所得層이 點하는 英鎊계수가 비슷한데 그 原因은 餘暇時間, 休息時間의 餘裕가 없고 위락시설, 유흥시설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北韓은 一般的인 常識과 觀念으로서는 理解하기가 어려운 獨特한 社會를 形成하고 있고 所得의 大部分을 衣食住生活에 支出해야 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北韓의 主要 階層別 5人家族 基準 家計支出 內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副部長級(次官級)을 보면 總家計所得 359.원에서 食糧配給費(住食費) 7원 20전, 부식비 56원 등 食費로 63원 20전이 支出되고 住宅 및 燃料費 22원, 被服費 100원, 文化費 20원, 教育費 7원 60전이며 나머지가 公과 雜費, 交通費, 醫療 및 衛生費, 其他 等이다.

重勞動에 從事하기 때문에 比較的 賃金水準이 높은 8級 勞動者の

境遇는 主食費 5원 48전, 副食費 24원, 被服費 31원 60전, 燃料 및 住宅管理費 약 5원인바 副部長級과의 差異는 주로 被服費에서 나고 있다.

一般勞働자와 事務員級の 月 家計所得은 140원인데 이중 主食費 24원, 被服費 支出 60전, 住宅 및 燃料費 4원 20전 등으로 住宅·燃料費를 除外한 食費·被服費 等은 8級勞働자와 같다.

〈表# 15〉 階層別 家計支出 (5人家族 1個月 基準) 內譯

○ 副部長級

(84年末)

支出項目	金額	算 出 根 據
主食費	7.20원	○ 食糧配給基準 (副部長 및 家族 全量 쌀) ○ 쌀 1 kg 配給價 : 8전
副食費	56.00원	○ 基本副食費 (간장, 된장, 소금 등) : 9원 ○ 肉類 週 1회 2근 (1.2 kg) : 37원 ○ 생선 月 5 kg : 10원
公課金	3.60원	○ 月 總所得의 1%
燃料 및 住宅管理	22.00원	○ 月所得의 6% 적용 * 朝鮮中央年鑑 (74年版) 月 3% (一般勞働者) × 2
教育費	7.60원	○ 1人當 연필 1, 볼펜 2, 노트 1, 기본 ○ 잉크, 만년필, 물감 등 年所要量 + 12
文化 및 衛生費	20.00원	○ 이발 月 2회 3名 ○ 新聞 2종 以上 ○ 映畫觀覽 月 2회 5人
被服費	100.00원	○ 紳士服 年 1 착 200-250 ○ 服地 年 10 m ○ 內衣類 年 2 착 (冬, 夏) ○ 양말류 年 4 착

支出項目	金額	算 出 根 據
豫備金 및 貯蓄	132.60 원	○ 總收入 359 원 - 實家計支出 216.40 원

○ 8 級勞動者

(84 年末)

支出項目	金額	算 出 根 據
主食費	5.28 원	○ 配給基準 (5 人家族) : 쌀 22.5 kg × 8 전 잡곡 52.5 kg × 7 전
副食費	24.00 원	○ 基本副食費 : 9 원 ○ 月 생선 5 kg × 2 원 = 10 원 ○ 채소 및 其他 월 5 원
公課金	1.64 원	○ 所得의 1 %
燃料 및 住宅管理	4.92 원	○ 月 所得의 3 %
教育費	3.80 원	○ 연필, 노트, 볼펜등 基本 學用品만 적용
文化 및 衛生費	14.15 원	○ 衛生費 : 목욕 월 1 회 × 4 명 × 20 전 이발 월 2 회 × 3 명 × 30 전 ○ 映画觀覽 : 월 2 회 × 4 명 × 30 전 ○ 化粧品代 : 4 원 ○ 세탁비 : 1.50 원 ○ 담배 · 성냥 : 5.15 원
被服費	31.60 원	○ 服地 : 年 20 m × 9 원 ÷ 12 ○ 被服配給費 : 月平均 3.50 원 ○ 신발류 : 1 인 年 2 족 × 3 원 × 5 ÷ 12 ○ 內衣 · 양말 : 1 인 年 4 × 4 원 × 5 ÷ 12
豫備 및 其他	78.41 원	○ 月家計收入 - 실가계지출 85.59 원

* 豫備 및 其他 部門을 除外한 其他費用은 8 號 勞動者 家族의 最小生計維持費用임.

○ 一般事務員

(84 年末)

支出項目	金額	算出根據
主食費	5.48 원	○ 配給基準 : 쌀 22.5 kg × 8 전 잡곡 52.5 kg × 7 전
副食費	24.00 원	○ 基本副食費 (간장, 된장, 소금, 식용유 등) : 9 원 ○ 月 생선류 5 kg × 2 원 = 10 원 ○ 채소 · 조미료 · 기타 : 5 원
公課金	1.40 원	○ 所得의 1 %
燃料 및 住宅費	4.20 원	○ 月所得의 3 %
教育費	3.80 원	○ 基本學用品 最小值
文化 및 衛生費	14.15 원	○ 8 級勞動者와 同一水準
被服費	31.60 원	○ 8 級勞動者와 同一
豫費 및 其他	55.37 원	○ 月家計總收入 : 140 원 ○ 實家計必須支出額 : 84.63 원

以上 3 個 階層의 家計支出 內容을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主副食費의 境遇 副部長級은 66 원 20 전으로 8 級勞動者와 事務員級의 2 倍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나 英鎊계수에서 접하는 比率은 副部長級이 17.6 %, 8 級勞動者가 18 %, 事務員級이 21.1 %로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副部長級과 事務員級의 所得의 差異는 約 2 대 1 의 隔差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英鎊계수에서 차

지하는 食費의 比率이 비슷하다는 事實은 所得이 높을수록 食費支出이 많고 所得이 적을수록 食費支出이 적다는 것이고, 달리 表現한다면 所得이 많을수록 잘먹고 所得이 적을수록 잘먹지 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階層에 따른 副食의 差異는 一般勞動者의 경우 年 2-3회의 肉類, 月 2-3회의 生鮮을 먹을 수 있으나 高位層에서는 月 2-3회의 肉類와 週 2-3회의 生鮮을 취食할 수 있다.

다음 被服費의 境遇에서도 副部長級은 月 100 원의 被服費를 支出하나 8級 勞動者와 事務員은 31 원 60 전으로 副部長級の 3分の1에 該當되는데 이 역시 英鎊계수상으로는 副部長級이 27.8%, 8級 勞動者가 19.3%, 事務員이 22.6%로 거의가 비슷한 水準이다. 被服費에서 나타난 이와같은 現狀은 단적으로 副部長級은 평상시 高級韓服 또는 양장을 하는데 비해 勞動者나 事務員은 勞動服이나 인민복, 원피스 程度로 生活하고 있는데서 오는 차이 때문이다.

其他 住宅 및 光熱費, 教育費, 文化衛生費에서도 家計支出에서 차지하는 構成比率은 거의 비슷한데 그 原因 역시 所得이 높을수록 모든 部問에서 그만큼 支出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表# 16) 階層別 家計支出 構成比率 (1984年末)

區分 \ 階層別構成比	副部長	8級勞動者	事務員
主 副 食 費	17.6 %	18.0 %	21.1 %
被 服 費	27.8 %	19.3 %	22.6 %
住 宅 및 光 熱 費	6.0 %	3.0 %	3.0 %
教 育 費	2.1 %	2.3 %	2.7 %
文 化 및 衛 生 費	5.6 %	8.6 %	10.1 %
公 課 金	1.0 %	1.0 %	1.0 %
豫 備 및 其 他	39.9 %	47.2 %	39.5 %

4. 北韓의 社會組織과 住民統制

가. 社會組織

(1) 集團主義的 社會組織

北韓社會는 自由世界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의 一般的 常識으로서는 좀처럼 理解가 되지 않을 만큼 異質的인 生理를 가지고 있다.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 第 49 條에는 社會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明示하고 있다.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爲하여, 全體는 하나를 爲하여서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基礎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集團主義 原則은 全體를 떠난 個人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으며 全體와 個體의 利害는 언제나 一致되는 것처럼 公式的으로 強調하고, 있다.

또 68 條에는 “公民은 集團主義 精神을 높이 發揚해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더욱 鞏固한 行動指針을 提示하고 있다.

이와같은 目標에 따라 北韓은 모든 權力이 黨에 集中되어 있고 黨에 의한 完全한 支配權이 確立되어 있다.

黨은 革命의 中추적 推進勢力이고 또한 國家 最高의 命令機關이다. 즉 北韓을 統治하는 集團은 勞動黨이며 黨을 支配하고 있는 것은 制度的으로나 實質的으로 金日成과 그의 世襲후계자인 金正日이다. 따라서 北韓社會는 이른바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黨의 唯一體係가 모든

價値를 支配하는 劃一的社會 集團的社會라 말할 수 있다.

(2)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

北韓社會의 特徵에서 또 하나는 私有財産制度가 認定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이다. 1946年 소위 産業國有化를 비롯하여 1968年 까지에는 個人商工業의 말살과 農業協同化, 水産協同化 등 모든 生産手段을 集團化하고 勞動者·農民·漁民·商工人 할 것 없이 모조리 賃金勞動者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로부터 一體의 生産手段은 實質的으로 黨에 귀속시키고 住民 個人에게는 私的 所有를 認定치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生産手段은 勞動黨의 計劃下에 立案·執行·監督·責罰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計劃經濟가 運營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대한 人員·大規模의 生産手段을 合理的으로 運營해 나가려면 自然히 統制와 計劃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計劃은 時計의 틈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부문이 計劃된 時間內에 計劃된 量의 生産과 質을 保障하고 供給하지 않으면 그 運營에 차질과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이때 어느 한 部門이 計劃을 완수치 못하면 그 結果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住民들을 들볶는다. 또한 個人에게 自己의 意思나 機能에 맞는 職業과 職場을 選擇할 自由를 준다면 計劃經濟는 도저히 수행될 수 없게 되므로 北韓은 個人에게 職業選擇의 自由를 주지 않으며 거주를 制限시키고 있다.

또한 北韓은 個人의 自主的 責任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것도 責任問題로 상부의 指示를 받아야 하고 간부들은 自己個人 일신

상의 榮達을 爲해 무자비하게 住民위에 군림하는 實情이다.

中央에서의 指示를 말단기관이 自主적으로 融通性 있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北韓社會이며 그러므로 인간이 모두 機械化되고 劃一化되고 있다.

(3) 새로운 階級形成과 不平等 分配

北韓은 表面上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나 事實은 金日成 부자 世襲體制에 의한 族벌독재체제를 形成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社會에서는 金日成이 定한 黨서열이나 權力內에서 받은 職位, 職責이 階層과 成分을 形成하게 되어있는 바, 이런 意味에서 보면 北韓이야말로 人爲적으로 形成된 철저한 階級社會, 不平等 社會라 말할 수 있다.

實際에 있어서도 職位가 높고 黨서열이 높으면 報酬가 많을뿐 아니라 모든 社會的 惠擇에도 큰 差異가 난다.

또 黨원과 非黨원간의 차이도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같은 事務員 階層이라도 黨에서 일하는 事務員은 俸給이 90 원인데 비해 工場·企業所의 非黨원 事務員은 60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로는 幹部로부터 하부 말단의 作業반장·지도원·인민반장 심지어 商店의 販賣員까지 黨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大學에 進學하는 것도 本人이나 부모가 黨원이 아니면 안되는 實情이다.

때문에 黨원은 철저한 신분 검열을 받아야 하며 일제시부터 現在에 이르게 까지 출신성분과 學歷·經歷·思想과 行動狀況을 면밀히 檢討하여 어떠한 事態에서도 金日成에게 충성하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이런 까닭에 北韓은 週期的으로 北韓住民들 뿐아니라

黨員들의 成分을 再檢討하며 金正日 登場 以後에는 1973年 黨證 재 교부 事業을 벌여 成分을 徹底히 검열하여 대거 출당시킨바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勞動黨을 勞動階級の 獨裁로 표방하여 北韓社會에서 黨員이나 非黨員과 그 家族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이단시 함으로써 不信과 信任의 兩大階層으로 嚴格히 區分시키고 雙方間의 人間關係조차 許容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黨의 權勢로서 不意를 正義라 우겨낼 수 있고 謙讓을 不遜이라고 때려잡는 역지를 쓰고 있다.

北韓 勞動黨員에게 政治的·社會的 特權을 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物質的 分配에 있어서는 勞動黨員 中에서도 特權層에 絶對的 惠擇을 주고 있다. 北韓社會가 勞動者·農民等 勤勞者 中心의 共產主義 本연의 階級社會가 아니라 特權과 市民間의 差異가 資本主義 社會에 비길 수 없을만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事實이다.

그들은 衣食住와 같은 人間生活의 基本 要件에서부터 徹底的 階級 政策을 쓰고 있다. 이들 特權層은 金日成 金正日是 除外시키더라도 中央黨政治委員과 秘書·政務員 副總理級 以上은 世界 부호 못지않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中央黨部長級을 위시한 政務院 部長, 道黨 責任秘書들을 비롯하여 郡黨責任秘書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中央供給 對象 1-3 號로 分類하여 食糧을 비롯한 日用品等を 該當 特殊商店에서 購入함으로써 一般住民들의 生活과는 거리가 멀며 住宅의 等級은 말할 것도 없고 衣服만 보더라도 이들이 中央供給對象이란 것을 알 수 있을 程度로 신분의 차등을 두고 있다.

(4) 組織實態

모든 社會는 共同生活을 영위하는 多數의 個人들이 하나의 行

爲體係속으로 묶어진 集合體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社會에서나 그 社會의 構成員들은 一定한 價値와 規範體係에 의해서 公式的으로 或은 非公式的으로 組織된 社會生活을 營爲하게 마련이며 社會構成員이 組織되어지지 않은 社會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社會는 組織되어지는 目標나 理念 그리고 組織의 形態와 程度에 따라 서로 다를 수가 있다.

社會에 따라서는 個人들이 全體의 目標를 爲해 動員되고 統制되며 個人의 自律性이 크게 制限되는 方式으로 組織되는 수도 있고 反對로 個人의 自律性을 最大한 尊重하여 個人에 대한 統制와 支配를 最小限으로 줄이는 方向에서 組織되는 社會도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全體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社會組織의 原理는 個人을 最大限으로 組織化함으로써 個人을 全體의 目的을 爲해 動員하고 統制하는 한편 個人의 自律性을 極도로 制限하는 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北韓社會는 더욱 그러하다.

北韓社會는 “集團主義 原則”에 依據한 組織的 統制社會이다.

즉 北韓社會에서는 모든 住民을 組織속에 묶어두고 集團的 能率의 相互競爭으로 效率性을 높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組織은 自律性이나 獨創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北韓內에 存在하는 모든 社會組織은 相異한 階層의 獨自의 利害를 代辯하는 組織으로서가 아니라 支配階級이 要求하는 特定方向으로 住民을 動員하고 整備하기 爲하여 하향식으로 만들어 놓은 黨의 豫備隊에 불과한 것이다.

“職盟” “社勞青” “女盟” “農勤盟” 등 各種 勤勞團體 그리고 各級 軍隊組織等 모두가 體制維持의 補助機關의 役割을 맡고 있고 民

心の所在把握과 政治教養事業을 전담하게 된다.

北韓의 모든 住民은 集團主義에 따라 組織속에 묶어 있어야 하며 모든 住民生活은 黨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한 劃一性和 무조건적, 絶對的 복종만이 要求되고 있다.

이러한 北韓住民들의 性格特性和 聯關시켜 볼 때 北韓社會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共產主義 國家나 體制下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超軍國主義的 兵營社會를 이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住民統制

(1) 政治的 統制

가 黨의 統制

北韓에서 住民統制를 위한 基盤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勞動黨을 정점으로 하는 各種 社會團體의 組織化로 나타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權力構造에 관한 共產主義的 命題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것인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標榜하여 共產黨이 國家機關 및 모든 團體에 대한 領導的 位置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共產黨은 모든 權力의 原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國家機關의 모든 政策執行은 반드시 黨의 指導와 監督下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人民을 效果的으로 支配하고 영도하기 爲해서는 단련된 共產主義者가 必要한데 이러한 集團이 黨이다. 만일 黨이 소멸한다면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는 存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北韓勞動黨도 레닌의 이런 命題를 그대로 받아들여 “勞動黨이 人民政權의 領導者로 되고 있으며 人民政權은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執行한다”고 말하고 있다.

北韓勞動黨의 組織概念은 徹底한 中央集權制의 原則下에 組織되고 있으며 이의 組織基層은 地域單位와 生産單位에 입각한 당세포라고 할 수 있다. 당세포는 工場·企業所·協同農場·各級 機關團體에 黨원 3名以上으로 組織하도록 規程되어 있다.

여기에서 당세포는 그위에 初級黨組織, 市(區域)郡黨組織, 工場黨組織, 道(直割市)黨組織, 中央黨組織으로까지 擴大發展되어 있다.

더구나 北韓社會에서 勞動黨이 現實的으로 行政, 司法, 立法의 上位에 君臨하는 最高權力機關의 性格을 갖고 있다. 教育文化機關, 産業經濟機關 各 職場 社會團體等의 모든 重要幹部 職位는 열성黨원들에 의해 獨占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든 機關과 團體에는 各記 黨委員會를 組織하여 黨의 統制體制를 徹底하게 一元化하고 있다.

黨自體는 피라밋형 組織으로 그 말단組織인 初級里黨機構는 里黨總會→執行委員會→里初級黨秘書→分細胞→黨分組가 있어서 第一次的으로 是 黨원 相互間의 監視와 統制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 住民監視 및 統制의 役割도 擔當한다.

現在 北韓의 勞動黨에는 全體住民의 17%에 該當하는 約3百萬의 黨員이 망라되어 있으며 모든 機關, 團體 職場에서 核心的인 要員으로 自己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또 “日日情報 報告制度” “하루 1件 이상씩의 報告制度” 등을 全體 黨員들에게 強要함으로써 北韓住民들에 대한 빈틈없는 黨의 監視統制網을 거미줄처럼 쳐놓고 있다.

北韓 勞動黨은 黨大會 開催 때마다 黨規約을 改正하여 黨組織構造와 任務를 수정해 왔다. 特히 1970年 11月の 6次 黨大會에서는 당 세 포 規模의 세분화, 初級黨委員會의 組織擴大, 分初級黨委員會 新設, 勤勞團體를 黨外團體로 規程하는等 제한 制度的 統制措置를 한층 強化하였다.

(나) 團體組織을 통한 統制

北韓體制下에서 組織이 生活의 單位가 되어야 한다는 原則은 모든 “勤勞者”들을 黨의 수중에 넣으려는 수단이다. 대다수의 勤勞者들을 不平不滿으로부터 統制하고 그들의 努力을 보다 效果的으로 搾取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組織이 必要하며 北韓全體 住民을 各種 組織에 망라시키는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北韓住民을 統制하는 各級 團體와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 “職盟” : 北韓에서 各機關, 企業所, 工場할 것 없이 (農業部門 除外) 모든 勞動者, 事務員들은 “職業同盟”이라는 組織體에 義務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職業同盟”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勤勞者들을 監視하고 統制하고 能律적으로 努力을 動員시키기 爲한 一種의 權力機關”이라 할 수 있다. 職盟은 中央機構로부터 都, 市, 郡에 이르기까지 常任 幹部 (有給) 를 두고 있으며 工場·企業所에도 그 規模에 따라 有給으로 專任하게끔 되어 있다. 職盟은 黨의 前衛的 役割을 하는 團體이며 黨이 내세우는 各種 政策을 勤勞者들에게 浸透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비롯한 모든 勞動制度和 勞動秩序, 심지어 勞動者, 事務員들의 生活態度에까지 일일이 干涉하는 監督機關

이라 할 수 있다.

北韓共產集團은 職盟을 가리켜 “勞動者, 事務員들의 權益을 擁護하는 團體”라고 宣傳하고 있지만 實際로는 “勞動者 事務員을 監視 統制하며 最大限의 勞力을 榨내는 것으로 黨에 충성하는 團體”라고 해야 할 것이다.

○ “農勤盟” : 北韓의 모든 協同農場과 農業部門에서 일하는 農民들은 모두 “農業勤勞者同盟”에 가입해야 한다. “農業勤勞者同盟”은 1965年 “農民同盟”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職盟”과 마찬가지로 農勤盟은 農業勞動者들을 監視하고 統制하며 效果的으로 勞力動員을 爲하여 組織된 團體라고 할 수 있다.

○ “社勞青” : 北韓의 청년들을 勞動에 動員시키고 채찍질하는 團體가 바로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이다. 北韓의 모든 職場, 企業所, 協同農場, 學校 등 青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組織되어 있다. 사로청은 勞動黨의 후비대라고 하면서 모든 黨政策을 遂行하는데 青年들을 앞장세우도록 督勵하고 統制하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대 法에 의한 統制

北韓은 黨員과 勤勞者들에게 그들 社會의 秩序를 徹底히 지키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強調해 오고 있다.

그것은 特히 위로는 金日成의 敎示로부터 아래로는 公衆秩序에 이르기까지 法과 秩序를 지키도록 強調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77년 12월 16일자 勞動新聞은 法秩序 確立과 法務生活 強化를 추구하는 장문의 論說을 게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強調한 바 있다.

주. “社會의 모든 成員들이 지켜야 하고 또 統制를 받을 수 있는 制度와 規程, 法秩序가 없이는 社會主義 社會를 維持해 나갈 수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分野에서 革命的인 制度와 秩序를 徹底히 세워 우리 內部에 사소한 적대적 요소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계속해서 同紙는 公民들이 지켜야 할 法에는 “社會主義憲法”, 그에 基礎한 “土地法” “社會主義 勞動法” “어린이 保育教養法”을 비롯한 여러가지 法과 規程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法을 徹底히 지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수령의 교시와 그 具現인 黨政策을 깊이 학습해서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77년 12월, 이른바 “法務生活指導委員會”를 새로이 組織하여 法的 統制를 한층 強化하였다. 이토록 法的 統制를 強調하고 있는 것은 (1) 黨員과 勤勞者들 속에 官僚主義, 形式主義, 機關本位主義, 要領主義等 경향이 만연되어 金日成과 黨의 指示가 效果的으로 遂行되지 못하고 있으며 (2) 住民들의 “社會主義 經濟管理 運營” 秩序와 共同生活 秩序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金日成이 밝히는 “法務生活”이란 “社會의 모든 成員들이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에 의하여 만들어진 法規範과 規程들을 잘 지키고 그에 의하여 統制되면서 秩序있게 일하며 生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法務生活指導委員會”가 “中央”을 비롯한 도·군들에 설치되어 있음을 밝히고 특히 이것은 “國家機關의 重要한 體制로서 모든 部間 모든 單位의 法務生活를 直接 指導하며 일꾼들과 勤勞者들 속에서 權力남용이나 違법행위가 없도록 法的으로 統制하며 온 社會에 革命的 氣風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 查察機構를 통한 統制

北韓의 查察機關은 2重 3重으로 組織되어 있다.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國家檢閱委員會” “法務生活指導委員會 (전향참조) “동지심판회” 등이 그것이다.

社會安全部는 1945년 以後 一般 治安維持와 反黨·反國家行爲者를 索出, 檢學하며 各種 保安과 監察, 鐵道, 海岸等 地域에 대한 警비를 擔當하고 있다.

社會安全部는 그 밑에 保安局, 警備局, 豫審局, 偵擦局, 反探局, 安全局들을 두고 그 組織을 北韓 全域에 퍼고 住民을 監視 統制하고 있다. 그외에도 1973年 2月 15日 金正日을 世襲후계자로 내정하고 그 基盤 強化와 反對勢力을 索出하기 위한 目的下에 政治思想 督察機構인 國家保衛部 (처음에는 國家政治保衛部로 했다가 뒤에 國家保衛部로 개칭)의 創設을 지령하였다.

이러한 연유에서 組織된 “國家保衛部”의 基本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北韓의 모든 單位에 비밀정보망을 設置하고 사소한 不平不滿이라도 이를 토로한 자나 반세습체제를 말한 者의 索出에 基本을 둔다.

(2) 金日成과 그 세습체제를 전복시키거나 反對·動搖시키려는 一體 活動·음모를 적발, 除去한다는 것이다.

(3) 幹部들과 住民들의 思想性向을 把握, 檢討한다.

(4) 반정 탐사업을 強化한다.

保衛部가 設置된 後 北韓의 幹部들과 保衛部員 그리고 住民들 속에서는 “9번 사건” “5번 사건” 등의 隱語가 번져가기 시작했다.

金日成 父子에 대한 모독과 비방을 內容으로 하는 이러한 은어가 나돈다는 것은 金日成과 그 族벌 세습체제를 反對하는 行爲가 속출되고 있다는 證據이기도 하다.

北韓은 “9번 事件” “5번 事件” 등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裁判에 회부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처형해 버리고 있으며 그 家族들까지 強制 이주시킴으로써 反金세력을 彈壓하고 住民들의 反抗을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金日成은 1980年初 黨 常任委員會 會議에서 住民 監視網을 더욱 徹底히 強化시키도록 지령을 내린바 있다.

그에 의하면 住民 10名을 單位로 하여 黨員 1名, 保衛部 情報員 1名, 社會安全部 情報員 1名 等 3名이 擔當配置되어 있어 實際로 北韓住民 平均 3名當 監視員이 1명씩 붙어 있는 셈이 된다.

또한 對住民 監視體制를 補強하기 위해 情報員을 大幅 增強시켰는데 保衛部 要員은 10名의 망책과 80名의 망원을 確保하고 이들로부터 日日報告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安全部 要員은 3-5名의 망책아래 30-50名의 망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3大革命小組員은 3-5名의 망책과 30-50名의 망원을 確保하고 있다. 한편 망조직은 各 作業班別로 되어 있고 住民世帶를 몇 개조로 細分化하여 組織的으로 監視하고 있으며 監視결과 報告內容은 대체로 일상생활 動向 등으로 되어 있다.

그외에도 北韓에는 蘇聯에서 實施하고 있는 동지재판소와 유사한 “동지심판회”라는 것을 만들어 住民들의 相互批判과 방청자의 거수로 형벌을 決定하는 方法을 쓰고 있다.

동지심판회는 (1)一般勞動者 事務員보다 幹部層이 심판대상자일 때 (2) 사소한 過誤나 犯罪일지라도 一般住民에게 일벌백계주의로 경각심을 높일 必要性이 있을 때 實施한다. 여기에서 동지심판회의 심

判對象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同志審判會의 審判對象

分 類	內 譯
(1) 經濟犯 및 過誤로 인한 損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원 미만의 횡령법 ○ 직권남용으로 不當利得 ○ 監督 不充分으로 인한 財産 浪費 ○ 뇌물수수의 상습범 ○ 各種 不正行爲
(2) 金日成 唯一思想에 저해되는 行爲 가운데 경미한 事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教示 學習태만 ○ 無意識的인 黨政策誹謗 ○ 黨政策 執行태만
(3) 其他 事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職務태만, 職務유기 ○ 不正한 男女關係 ○ 幹部中 주벽 · 횡포자 ○ 職權에 의한 請託 ○ 家族主義, 地方主義, 形式主義 ○ 官僚主義的 行爲

(2) 經濟的 統制

(가) 食糧配給에 의한 統制

北韓은 먹는 것을 미끼로 北韓住民들을 철저히 統制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現象은 날이 갈수록 더욱 深化되고 있다.

北韓住民들은 食糧配給을 받기 위하여 아무리 힘든 勞動이라도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조금이라도 責任量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食糧配給은 물론 혹독한 批判까지 받기 때문이다.

北韓共產集團은 食糧을 住民統制의 手段으로 利用하기 위해 무단 결근일 때는 어김없이 그날의 食糧配給을 控除하며, 지각 3회이면 하루의 결근으로 看做, 역시 該當한 食糧配給을 控除한다. 또한 '76년부터 一部 企業所 職場과 學校 等地에서는 결근과 지각·조퇴 등을 막기 위해 日日糧券制로 바꾸어 實施하기도 했었다. 즉 종래는 15日單位로 配給하던 食糧을 매일 退勤할 때마다 職場行政 經理部에서 그날의 食糧配給券(糧券)을 받아가도록 한 것이다.

北韓은 傳統的인 食生活 양식은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아직까지 攝生爲主의 量的 充足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量마저도 嚴格한 配給制에다 指定된 配給量의 70%정도가 감자, 옥수수, 밀가루, 조 등의 雜穀이기 때문에 個人消費의 絕對 需要量이 不足하게 되고, 또 食糧配給制를 철저하게 實施함으로써 不足의 食糧을 補充할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속에서 食糧에 의한 住民統制는 갈수록 強化되고 있는 것이다.

(나) 被服 및 住宅을 통한 統制

北韓住民들의 衣生活面을 보면 規格화된 基本作業服과 내의

정도는 季節에 따라 다소 廉價로 支給되고 있다. 그러나 勞動에 基本的으로도 必要的인 衣類 이외의 복장은 워낙 高價로 策定돼 있기 때문에 實用化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高級衣類의 購入에 대한 統制는 事實상 一般住民들의 衣生活의 劃一化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同時에 各種 生産品의 量·質的 統制와 劃一化를 加함으로써 住民들의 慾求水準을 計劃的으로 管理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住生活에 있어서의 住民統制를 보면 共產體制下에 있는 北韓에서는 建物の 個人所有도 또한 個人 建築도 認定될 수 없으며, 이러한 條件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에 맞는 設計는 더우기 있을 수 없다. 다만 階層과 職位에 따라 規格화된 各 等級의 家屋이나 아파트를 賃貸形式으로 配定받는다. 따라서 北韓의 住生活樣式은 集團居住 中心의 아파트형, 또는 연립주택형의 集團主義的인 生活樣式만이 認定되고 있다.

農村의 境遇에는 集團農場의 形態에 따라 住居의 樣式도 聯立化되어 있다. 이러한 住宅政策은 人間的인 生活空間이라기 보다는 合宿所와 같은 特色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住民들에 대한 監視統制를 容易하게 하고 있다.

(3) 思想的 統制

(가) 思想檢討 事業

北韓은 反黨的·反革命的 勢力을 事前에 索出하고 나아가 一般 住民들의 思想的 監視와 “共產主義 思想教養”을 위하여 ① 中央黨 集中指導事業(1958-60年), ② 住民登錄事業(1966-69), ③ 住

民要解事業('72年), ④ 黨證再交付事業('73年), ⑤ 3대혁명 소조운동('73年), ⑥ 唯一思想 10代原則 再討議事業('74年-) 등 일련의 思想檢討事業을 계속적으로 推進해 왔다. 이러한 思想檢討는 北韓 住民들에게 항상 心理的 不安과 恐怖觀念을 심어 줌으로써 金日成 父子에게 무조건 맹종토록 하는 隸屬化 策動에 그 目的이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이 反黨·反革命 分子들에 대한 全人民的 鬭爭을 強要하는 것은 金日成 1人獨裁를 근간으로 하는 政治社會的 安定을 追求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社會的 安定基調를 뒤흔든다고 생각되는 反黨·反革命階層에 대해서는 全人民的 敵對勢力으로 규정해 놓고 人民的 鬭爭過程을 통해 除去하도록 推進시켜 왔다.

이 思想檢討事業은 中央黨 集中指導事業 때처럼 北韓 全體住民을 對象으로 그들의 思想的 黑白을 가리기 위하여 自己批判, 公開的 集體討議, 그리고 “自白事業” 등을 통해 思想動向과 成分을 調查하고 그에 따른 處罰을 加하는 形式도 있고, 住民登錄事業 때처럼 本人을 中心으로 친척·인척·처족의 出身成分·學力·日帝時 活動·解放後의 活動·6.25時의 動向, 黨과 社會團體活動 등을 調查하는 方法으로 進行하기도 한다.

이런 思想檢討事業이 進行될 때마다 그 過程에서 불순요소로 規定된 者에 대해서는 流血的 처단이나 都市에서의 強制追放, 居住地의 再調整 등 統制와 彈壓이 감행되었다.

(나) 3大革命小組運動

住民들에 대한 思想的 統制의 대표적 樣相은 3대혁명소조운동이라 하겠다.

3大革命小組란 '73年 9月 金正日이 世襲後繼者로 內定됨에 따라 그의 基盤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독찰 조직을 말한다. 이 組織은 金正日의 직접 管掌下에 黨性이 강한 青年, 學生, 核心分子들로 構成하여 工場·企業所, 協同農場, 行政機關, 學校 그리고 軍部隊에까지 派遣하였다.

이 組織은 正常的인 黨組織에 包含된 組織이 아니라 오로지 金正日에만 責任지고 活動하며, 派遣된 對象企業에 따라 數名에서 數十名 單位로 編成되었다.

3大革命小組의 任務는 ① 機關 또는 生産建設 現場에서 思想·技術·文化革命을 직접 指導하며, ② 黨 및 行政幹部들의 保守主義, 要領主義, 形式主義, 經驗主義, 家族主義, 地方主義등 反黨的 思想傾向을 監視하고 統制하며, ③ 黨·社會團體, 行政機關등의 事業實態를 調査하여 金正日에게 報告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절대적 權力을 行使하는 이 組織은 派遣된 곳곳에서 既成 幹部와 충돌하며 여러가지 葛藤을 일으켰으며 한때는 심한 反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3大革命小組는 北韓住民들에 대한 思想統制의 機能을 遂行하는 또 하나의 組織으로 住民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4) 日常生活上의 統制

(가) 人民班 組織

北韓에서는 平壤을 비롯한 道·市·郡 밑에 里·洞人民委員會가 있고 里·洞人民委員會는 수개의 人民班으로 構成되어 있다.

北韓의 모든 行政組織은 黨의 決定과 指令下에 움직이며 黨政策

을 執行하는 方向으로 住民들을 組織動員하는 한편 住民들을 人民班에 묶어 놓고 그에 依據해서 統制하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人民班은 보통 15~20 세대로 構成되고 각 人民班에는 반장, 세대주 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등의 監視 監督要員을 두고 철저히 監視하고 있다.

이들의 任務는 班員들의 思想動向 監視, 學習指導, 班員의 動員, 관혼상제의 주관 등 日常生活을 把握 指導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權限은 대단하기 때문에 企業所 등 職場에서의 幹部일지라도 家庭生活에 대하여 班長으로부터 반동으로 보고되면 炭鑛 等地로 追放되기도 한다.

人民班的 任務는 ① 住民에 대한 思想教育을 통한 불만해소, ② 각종 勞力動員과 社會奉仕 活動, ③ 文化衛生 事業과 環境整理事業, ④ 住民管理와 道路管理, ⑤ 班內 住民移動과 訪問者에 대한 내사 보고 등이다.

또한 人民班에는 保衛部와 社會安全部가 配置한 監視員(情報員)이 있으며 이들은 반내 訪問者에 대한 調查報告 특히 반내 불순 계층의 主要動態와 그 住民과의 接觸事項 등을 內查報告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人民班 生活總和(會議)를 더욱 強化하고 있다.

종래 月1回 實施하던 것을 15日마다 1回 實施하고 있을 뿐 아니라 生活總和(會議) 內容도 어린이 養育問題, 勞力動員, 公共秩序 維持, 社會的인 事故, 목욕·이발문제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討論되고 있으며 自我批判도 일층 강화하였다.

(나) 5 戶擔當制

5 戶擔當制는 北韓住民들 속에서 北韓體制를 반대할 수 있는 성분 즉, “불순계층”에 속하는 住民들을 監視 統制하고 그들의 反抗을 事前에 방지하기 위하여 考案해 낸 組織인 것이다.

이 5 戶擔當制는 1958 年 7 月初 金日成이 “유급간부 한 사람이 5 호씩만 責任지고 教養事業과 經濟課業등 일체를 指導하도록 해서 里事業을 추켜세우고 里黨委員會에서 그들을 모아 놓고 課業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된다”고 말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한다.

1962 年 11 月號 “勤勞者”(黨理論誌)에서는 “5 戶擔當制는 責任 指導者가 5 戶內外의 적은 세대들을 分擔하는 만큼, 개개인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知識, 素質, 趣味, 希望, 思想動態 등을 정확히 요해하고 지도하게 된다. 5 戶擔當制는 生産에서 家庭에 이르기까지 成人으로부터 兒童에 이르기까지 모든 部門을 包括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5 戶擔當制는 政治的 統制와 經濟的 動員을 目的으로 하는 住民들의 細密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철저하게 監視하고 統制할 수 있는 政治的 組織임을 알 수 있다.

北韓住民이 職場에서 規律을 違反하였거나 作業責任量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職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家庭에서의 비판도 甘受해야 하는 것이다.

즉 5 戶擔當 宣傳員의 입석하에 가족회의를 열게하여 자식이 어버이를 비판하고 처가 남편을 공격함으로써 이른바 “붉은 가정”을 創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統制와 監視에 의해 모든 社會構造의 基本單位인 傳統的인 家族制度는 破壞되고 家族의 倫理的 結合體로서의 性格을 크게 變化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나) 住居移轉 統制

北韓住民들은 北傀政權의 許可없이 는 移住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住民들의 居住地 移動을 統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住居地를 自由로 移動했을 때 住民登錄을 할 수 없고 住民登錄이 없으면 어디가서도 職場을 얻을 수 없고, 따라서 食糧配給을 받지 못한다.

친척 또는 친지집에 移住할 경우, 社會안전주재원에게 발각되면 政治的 思想까지 責任追窮을 당하게 된다. 이렇듯 北韓에서 居住地 移轉의 制限政策은 政治的인 意味마저 強하게 作用하고 있는 또하나의 統制方式인 것이다.

그것은 住民들을 自由로이 移動하지 못하게 禁止하는 것은 理念的·心理的 動機 外에도 政治·經濟·社會的 安定을 維持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潛在的으로 不滿을 가진 住民들이 자기 생활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자기가 生存해야 할 社會에 도리없이 適應하도록 強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住民들은 農村에서 都市로, 都市에서 農村이나 다른 都市로 이사가고 싶어도 黨의 직접적 統制때문에 黨이 指定해 준 地域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다만, 農村의 勞力不足을 打開하기 위하여 都市의 勞働者들(또는

일부 中高等學校 卒業生)을 農村에 移住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黨의 指令에 따라 強制移住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黨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故郷을 버리고 他地域으로 強制移住시키는 경우가 많다. 休戰線 一帶의 原住民들의 대다수가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의 山間僻地로 強制移住 당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또 평양시를 비롯하여 몇몇 지방도시(개성)의 경우에도 政治的으로 믿을 수 없다고 認定되면 強制 移住 당한다.

(라) 職場配定을 통한 統制

北韓住民에 대한 또하나의 統制方式은 職業選擇이나 職場移轉의 自由를 전혀 賦與하지 않을 뿐 아니라 黨의 직접적 指示를 받아야 하고 또 그대로 順應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部門에서 일을 하든간에 黨의 指示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幹部政策은 政治的 表徵(70%)과 實務的 表徵(30%)에 根據하여 職場配置와 승진, 강등, 조동(이동)을 시킨다.

幹部政策에서 政治的 表徵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北韓體制의 特性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強調한 바 있다.

즉, “幹部의 첫째가는 表徵은 그가 黨에 얼마나 忠實한가(政治的 表徵)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의 能力(實務的 表徵)이다. 제일 좋기는 黨에 충실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知識만 있고 黨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必要치 않다. 그런 知識은 써먹을 데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幹部란 事務員·作業班長·分組長까지도 포함하여 黨의 政策과 指示를 남에게 傳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매) 旅行統制

北韓은 6·25 動亂 以後 治安確保를 表面上 理由로, 北韓住民들의 移動을 막기 위하여 旅行을 最大限으로 統制하였다. 旅行을 許可制로 하여 旅行時 所屬 社會安全部 또는 職場에서 發行하는 旅行證을 所持케 한 것이다.

그러나 旅行의 統制는 治安確保보다는 旅行人員의 流動으로 인한 勞動力의 損失을 防止하고 나아가 國內外 事情의 外部漏出과 政府 施策에 대한 批判 등 心理的 動搖를 防止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따라서 非公式的이거나 職務 無斷離脫로 인한 사사로운 旅行은 不可能한 것이며 발각될 경우 處罰을 면치 못한다.

北韓住民들의 旅行形態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區分된다.

① 一般的인 制限

勞働者·事務員들의 公用旅行(公務出張旅行)할 경우 所屬 職場에서 發行하는 旅行證明書와 함께 公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 등을 所持해야 하며 農民이나 一般住民은 公民證과 人民委員會가 發給하는 旅行證을 所持해야 한다.

② 特殊制限

一般住民의 出入을 不許하는 特殊地域이 設定되어 있는데 이 地域에는 原則적으로 特殊身分의 公用目的 이외에는 旅行이 許容되지 않는다.

特殊地域은 休戰線 接境地域(40 킬로미터以內)과 第2防禦線인 사리원 以南地域의 軍事施設 부근(여기에는 주간열차 운행금지) 그리고 海外逃避의 憂慮가 있는 海岸地帶(20 킬로미터 以內)등이 이에 該當한다.

③ 心理的 制限

旅行者는 여행도중 공상이나 잡념을 갖지 못하도록 乘務員이 造作하는 娛樂會에 參與해야 한다.

그들은 선전선동적인 “革命歌謠”를 부르거나 열차내 問答式 學習등으로 金日成 唯一思想에 沒入되도록 心理的 制約을 加하는 것이다.

특히, 1975年부터는 住民旅行을 制限하는 또하나의 方法으로서 “通行證”의 유일번호제도를 採擇하고 있는가 하면 職場에서 매일 作業責任量을 따지면서 作業量을 評定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任意로 職場을 떠날 수 없고 또 만약 離脫하였다 하면 怠慢分子라는 낙인이 찍혀 혹심한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스스로가 自制하지 않을 수 없게끔 制度化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北韓統制體制의 特殊性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 結婚制限

北韓에서는 男女間의 戀愛가 公開的으로 許容되면 緊張感이 解弛된다 하여 可及的 戀愛를 禁止하고 있다. 戀愛를 하다가 結婚까지 못하면 “부화방탕”이란 낙인이 찍혀 혹독한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눈을 避해야 한다.

만약 戀愛를 公開的으로 하려면 자신이 屬한 組織의 責任者에게 申告를 해야 한다. 예를들면 “나는 ○○○와 戀愛를 하고 있습니다”라던가 “하려고 합니다”식으로 신고를 한다.

申告者는 이와함께 組織의 責任者(주로 所屬黨委員會 責任者)에

게 戀愛하기 前보다 더욱 “ 당과 수령 ” 에게 충실한 전사가 될 것과 黨이 내세우는 經濟建設에 더욱 獻身的으로 이바지할 것을 맹세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戀愛를 계속하면 그 戀愛는 “ 不健全하다 ” 는 批判을 받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한편 結婚의 경우, 法上으로는 自由結婚을 할 權利가 주어져 있으나 實際로는 結婚對象의 範圍를 政策的으로 크게 制限하고 있다.

① 結婚對象者를 자기 所屬의 組織 責任者에게 報告하여 對象者의 成分, 黨性 등을 檢討할 時間的 餘裕를 주어야 한다.

② 勞動力의 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 都市 男子가 農村女子와 結婚하게 되면 農村女子는 그곳을 떠날 수 없게 統制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農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男子가 農村女子를 忌避하게 되고 결국 農村女子는 農村男子와 結婚할 수 밖에 없다.

③ 都市人口 集中을 막기 위해서 平陽市에서 居住하는 女性이 平陽이외에 사는 男子와 結婚하면 男性居住地로 옮겨가야 한다.

④ 軍需工場 地域에서는 保安上 그 地域 居住者를 固着시켜야 하기 때문에 政策的으로 結婚對象者를 그 地域內에서 擇하도록 强要하고 있다.

5. 北韓의 實質 消費水準 評價

가. 1人當 可處分所得額 評價

어느 一定期間에 個人이 實際로 獲得한 所得과 個人이 實際로 자유롭게 消費 또는 貯蓄으로 處分할 수 있는 所得과는 다르다. 이때 前者를 1人當 GNP 또는 1人當 國民所得으로 表現하고, 後者를 1人當 可處分所得이라 한다.

資本主義 體制下에서는 通常 個人所得에서 個人稅 (所得稅 등 直接稅)를 控除하고 移轉所得 (保險, 追加的 惠澤)을 더한 것이 可處分所得인 것이다.

그러나 實質적으로 評價되는 1人當 國民所得과 1人當 可處分所得間에는 個人稅와 移轉所得의 增減額 이상으로 差異가 나는데 그 原因은 1人當 GNP 또는 1人當 國民所得額에는 對外去來에서 形成되는 損益만큼 차이가 나게되고 극히 적은 부분이나마 國民所得의 一部가 國家에 歸屬되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體制에서도 以上과 같은 理論이 成立되나 北韓의 경우 1974年以後부터 個人稅를 全面 廢止했기 때문에 對外去來에서 오는 個人所得의 損益이 없는 限 原則적으로는 1人當 國民所得額과 1人當 可處分所得額은 같은 水準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國民所得의 大部分이 社會主義 經理收入, 즉 國家의 收入이라는 名分下에 政府當局에 歸屬되고 住民에게는 一定額의 賃金과 追加的 惠澤 (보너스, 賞金, 賞品 등)만이 可處分所得額이 되므로 1人當 國民所得額과 1人當 可處分所得間에는 엄

청난 差異가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의 可處分所得 總額은 北韓住民이 受領하는 年 賃金總額과 政府로부터 住民에게 주어지는 追加的 惠澤分の 總計와 같다.

이와 같은 算定方法에 따라 北韓의 1983年度 可處分所得 總額을 算出하면 다음과 같다.

1983年度 北韓의 經濟活動 人口는 840萬名인데 이중 生産職 從事者는 86%에 該當되는 722萬名이고 非生産職 從事者는 14%인 118萬名이다. 또 1983年度 北韓의 賃金水準은 生産勞動者의 月平均 賃金은 90원, 非生産職 從事者의 月平均 賃金은 100원으로 生産職 從事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非生産職 從事者들은 黨政 行政要員, 軍人, 藝術人, 體育人 등 一般事務員을 除外하고는 대부분 이 特權層 또는 特殊階層이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根據에 따라 北韓의 賃金總額을 算出하면 生産職 從事者는 月 6億4,980萬원, 年 77億9,766萬원이고 非生産職 從事者는 月 1億 1,900萬원, 年 14億 2,800萬원이다.

다음 政府의 追加的 惠澤分은 一定한 基準이 없어 算定이 어려우나 一般的으로 賃金水準의 10% 未滿이므로 10%를 適用, 算出하면 追加惠澤分 總額은 9億 2,257萬원이다.

따라서 1983年度 北韓住民들의 可處分所得額의 總計는 101億4,823萬원(46億 5,515萬弗)이고 1人當 可處分所得額은 537원(246弗)이다.

1983年度 北韓의 GNP 144億 7千萬弗 및 1人當 GNP 765弗을 基準으로 可處分所得 總額 또는 1人當 可處分所得額의 比率을 算出하면 北韓은 GNP 및 1人當 GNP의 32.2%가 可處分所得 總

額 또는 1人當 可處分所得額인 것이다.

參考로 1982年度 經濟企劃院 發表 韓國의 1人當 可處分所得額을 보면 韓貨로 87萬원이고 美貨로는 1,190弗인데 이는 1人當 GNP 122萬원 (1,671弗)의 71.2%를 占하고 있어 北韓의 32.2%에 비해 매우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82年度 韓國의 1人當 GNP와 1人當 可處分所得額간의 隔差에는 租稅負擔率 19.3%가 包含되어 있으므로 對外去來에서 오는 損失分(貿易赤字)과 政府에 歸屬되는 所得分은 9.5%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對外去來에서 오는 損失은 약간의 貿易赤字分이 있으나 없는 것으로 算定되고 어떤 形態이건 直接稅 負擔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1人當 GNP의 67.8%는 政府의 所得, 協同團體의 所得分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32.2%만 住民에게 돌아가는 結論이 된다.

北韓은 1977年 以後 算出된 1人當 GNP와 可處分所得간의 比率이 계속 내려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그 原因은 北韓當局이 賃金水準을 1977年以後 凍結시켰고 住民들에게 별다른 追加적 惠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다.

北韓에 있어서 個人可處分所得額이 公共의 所得分에 비해 顯著히 적다는 것은 軍事費, 政府管理 등 公經濟部門의 消費가 늘어나는 만큼 住民들의 消費가 줄어든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고 이것은 住民들의 消費生活이 계속 抑制되고 冺박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1982年度 韓國과 北韓의 1人當 GNP 隔差는 1,800弗對 736弗로 2.4對1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1人當 可處分所得額은 1,190

弗對 184 弗로 6.5 對 1 의 큰 隔差를 보이고 있어 南北韓 住民間 實生活上의 차이는 단순 계량화된 1인당 GNP 規模 以上으로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 17 > 韓國의 1人當 GNP 및 個人可處分所得

區分 年度	1 人 當 GNP		1 人當可處分所得		租稅負擔率
	經常(천원)	經常(美弗)	經常(천원)	經常(美弗)	
1976	370.2	765	267.8	553	17.4
1980	900.3	1,481	660.3	1,086	19.2
1982	1,222.7	1,671	870.7	1,190	19.3

出處：韓國의 社會指標(經濟企劃院, 1983)

<表 - 18 > 北韓의 1人當 GNP 및 個人可處分所得

區分 年度	1 人 當 GNP		1 人當可處分所得		1 弗：北韓원
	經常(원)	經常(美弗)	經常(원)	經常(美弗)	
1976	1,004	467	271	126	1 : 2.15
1980	1,340	747	348	138	1 : 1.794
1982	1,560	736	390	184	1 : 2.12
1983	1,668	765	537	246	1 : 2.18

出處：國土統一院 評價值

나. 家計所得 및 支出構造 評價

家計 또는 個人의 消費水準을 實質的으로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個人의 所得 또는 家計의 實所得 總額과 여기에서 차지하는 消費와 貯蓄의 關係를 따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消費의 構成比率을 보아야 한다.

먼저 北韓의 家計所得을 보면 1982年度 8級勞動者의 경우 164 원, 事務員의 경우 140 원인데 이는 같은 年度 1人當 可處分所得 537 원과 比較할때 8級勞動者는 73.3%, 事務員은 62.6% 水準에 該當된다. 이는 같은 年度 韓國의 都市勤勞者 月所得 36萬원이 1人當 可處分所得額 87萬원에서 차지하는 比率 89.5%와 비슷한 水準을 보이고 있어 매우 興味로운데 그 原因은 高所得 階層과 中間所得 階層의 構成比率이나 高所得層과 低所得層間的 所得分配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음 家計所得中 消費部分과 貯蓄部分의 構成比率을 보면 北韓은 8級勞動者의 경우 消費支出이 52.8%, 蓄積分이 47.2%로 나타나고 있고 事務員의 경우는 消費支出이 60.5%, 蓄積分이 39.5%, (表# 16 參照)로 나타나 있다.

北韓의 이와같은 현상은 1982年度 韓國 都市勤勞者의 消費支出이 69.7%, 蓄積分이 30.3% (韓國의 社會指標에서 算出(1983年))인 것보다 蓄積分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原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住民들이 消費를 願하고 있으나 消費品 供給不足, 配給制, 割當制 등 社會的 統制로 인해 消費가 抑制되기 때문이다.

둘째, 配給品·割當品을 除外한 대부분의 消費品은 高價로 販賣되

되기 때문에 1~2 個月의 貨金蓄積으로서는 購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제, 經濟開發에 필요한 投資資本 調達策으로 當局이 強壓的인 方法으로 貯蓄을 誘導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住民들의 呼應度가 낮아 實際에 있어서는 銀行에 저금하지 않고 個人이 所持하는 傾向이 많은 實情이다.

따라서 家計所得額에서 차지하는 蓄積分이 많다고 해서 韓國의 경우처럼 財貨의 蓄積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고 消費自體의 統制와 消費品의 高價策定에서 오는 奇現象이라 말할 수 있다.

實例를 들면 一般勞働者가 勞動服이나 平常服 등 配給品은 한벌에 16원에서 25원이면 購入할 수 있으나 配給品이 아닌 가죽잠바의 경우 1벌에 180원 내지 200원을 주어야 하니 一般勞働者 貨金の 거의 2倍이고 家計蓄積分 78원을 勘案하면 3個月을 貯蓄해야 겨우 購入할 수 있는 金額이다.

北韓住民의 消費構成 比率을 보면 主副食費(韓國의 食料品費)가 事務員의 경우 21.1%, 被服費가 22.6%, 光熱費가 3%, 教育費가 2.7%를 占하고 있는데 이는 1983年度 韓國의 都市家口 月平均 消費構成比 食料品費 38.9%, 被服費 8.8%, 光熱費 5.9%, 教育費·教養費 10.4%와 比較할 때 매우 특이한 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北韓의 事務員 家計에서 차지하는 食料品費의 構成比率이 21.1%로 韓國의 都市人의 38.9%보다 17.8% 포인트나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北韓이 食糧을 비롯한 基本副食品에 대해서는 配給制를 實施하고 있고 配給品의 價格은 生産原價에도 미치지 못한 저렴한 가격으로 策定했다는 事實과 配給食糧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食糧을 購入할 수 없고 副食品에 있어서도 高價品인 肉類나 加工食品 등은 일반인들이 任意로 購入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다.

그러나 北韓에는 被服費 構成比率이 22.6%로 韓國의 8.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北韓住民이 옷을 잘입고 좋은 옷을 購入하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 아니라 配給品을 제외한 기타의 衣服類는 엄청나게 高價로 策定했기 때문에 일어난 現象이다.

그 외에도 11年制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있으므로 인해 教育費負擔이 적고 醫療衛生費負擔도 적게 나타나 있으나 文化, 娛樂費, 交通通信費나 家具費 같은 部門에는 韓國에 비해 현저히 낮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參考> 韓國 家口當 月平均 消費支出 (全都市) 構成比

區分 年度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 水道費	가 구 가사용품	피복 신발	保健 醫療	教育 教養	交通 通信	其他
1976	48.2	3.3	5.9	4.6	8.8	5.0	10.4	4.4	9.5
1980	42.5	4.5	7.7	5.0	9.1	6.3	8.8	5.9	9.7
1983	38.9	5.0	7.7	4.7	8.1	7.1	10.5	6.3	11.7

出處：主要經濟指標 (經濟企劃院, 1984)

다. 衣食住 生活水準 評價

(1) 食生活 水準

(가) 主食水準

北韓의 輕勞動者와 事務員의 5人家族 基準 主食生活 水準을 評價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月 家族單位 食糧配給量은 表-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8 kg인데 이중 쌀은 21.84 kg, 옥수수(옥쌀포함)는 43.6 kg, 其他가 7.28 kg으로 評價된다.

<表-19> 北韓의 家計別 食糧配給量

區分 對象	單位	1日配給 基準	月配給量	穀種別配給量			備 考
				쌀	옥수수	기 타	
家 長	♂	600	16,800	5,040	10,080	1,680	쌀 : 잡곡 = 3 : 7
妻	"	600	16,800	5,040	10,080	1,680	
中 學 生	"	500	28,000	8,400	16,800	2,800	月 2日分 控除
人民學生	"	400	11,200	3,360	6,720	1,120	其他는 주로
計	kg		72.8	21.84	43.68	7.28	감자임.

以上の 食糧으로 5人家族이 하루 세끼 4홉밥(640g)을 먹을때 必要한 쌀 및 옥수수(옥쌀)의 總量은 96 kg이므로 配給받은 쌀 및 옥수수의 總量 65.5 kg으로서는 30 kg 이상이나 不足한 實情이다.

또 하루에 3끼 3홉밥(480g)을 먹을시 食糧 總 수요량은 72 kg이므로 이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하루 두끼 2홉밥, 한끼 죽 또는 국수·빵을 먹어야 하는데 이때에 소요되는 食糧은 쌀 및 옥수수 등 밥을 짓는데 48 kg 나머지 17.5 kg의 쌀 및 옥수수와 감자·고구마등 7 kg으로 죽 또는 국수·빵등 밥 대용음식을 만들

어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家族 1人에게 돌아가는 하루의 주 또는 기타 飲食 調理可用量은 100g 정도이다.

통상 어른 한사람의 1日 最低 食糧消費量은 600g이고 勞動의 정도에 따라 最高 900g까지가 일반적인 傾向인데 北韓住民이 받는 食糧配給量은 勞動에 從事하는 者일 경우 최저 食生活를 보장 받으나 勞動에 從事하지 않는 扶養家族의 食糧은 最低生活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家族單位로 볼 때 항상 食糧이 최저 基本生活을 營爲할 수 없는 水準에 處해 있는 것이다.

參考로 1982年度 韓國의 1人當 1日 쌀 消費量을 보면 農家は 424.6g, 非農家は 333.5g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農家の 경우 主食의 80% 水準이 쌀이나 非農家は 食生活 改善으로 빵, 국수類 등과 肉類가 主食으로 되고 있어 主食中 60% 정도만 쌀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 參考 >

韓國의 食生活 指標

區 分	年 度		單 位	1970	1975	1980	1983
1人當 쌀 消費量	g	都市		404.4	329.0	343.7	333.5
		農村		337.0	354.5	412.5	424.6
" 肉類 消費量	g			10.5	13.2	24.4	33.9
" 1日平均熱量	cal			2,370	2,390	2,485	2,588
" 단백질攝取量	g			65.2	71.1	73.6	78.3

*肉類는 소고기 + 돼지고기量임.

*出處 : 韓國의 社會指標 (經濟企劃院, 1983年, pp.188 ~ 189).

(나) 副食水準

韓國을 비롯한 오늘날의 先進國 食生活 패턴은 主食의 攝取量이 줄어드는 반면 고단백식품을 중심으로한 副食類와 間食類의 攝取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主食의 攝取量도 基本的인 食生活 水準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副食類의 攝取도 主食類에 못하지 않으므로 住民들의 영양칼로리 不足現象과 空腹感은 매우 심각한 狀態이고 長期間에 걸친 저급한 食生活은 北韓住民의 體力을 떨어지게 했고 體位마저 韓國과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北韓의 一般勞動者 5人家族 基準 副食類 攝取량을 보면 表-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장, 된장, 고추장 외에 계란 20개, 두부·콩 등 1.2 kg, 김치·콩나물·무우·배추 등 채소류 30 kg, 생선류 1.2 kg, 肉食類 500 g 정도이다.

<表 - 20 > 北韓의 5人家族 副食量

種 類	單 位	月攝取量	備 考
간 장	ℓ	4	配給品
된 장	kg	6	"
고 추 장	"	3	"
두부·콩	g	600	10 g 짜리 60 개
달걀	"	600	30 g 짜리 계란 20 개
채 소	kg	30	김치, 콩나물, 무우, 배추, 상치 등
생 선	g	1,200	동태, 이면수 등
肉 類	"	500	연간 5 kg 内外

(다) 北韓住民의 主副食 攝取熱量

北韓의 一般勞働者 家族의 主副食 給食量을 基準으로 北韓住民의 1日攝取熱量(칼로리)을 算出해 보면 表-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1人當 1日 主食熱量은 1,653 칼로리이고 8種의 基本副食熱量 188 칼로리로 總 1,841 칼로리이다.

이는 1982年度 韓國 國民의 1日 1人當 平均熱量 2,588칼로리에 비하면 347칼로리나 不足하고 칼로리 構成의 內容에 있어서도 韓國은 主食類가 차지하는 比率이 58%인데 比해 北韓은 86%를 占하고 있는데다 副食類 種類 역시 韓國은 고단백 食品인 계란, 肉類, 생선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北韓은 채소류가 대부분이고 생선과 肉類의 消費量이 극히 적어 熱量面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

<表-21> 北韓 勞働者 家族의 主副食 攝取熱量

구분 종류	1 kg 당 열량	5인 가족 월 섭취량	열량		
			가족 총 열량	1인 1일 열량	
주식	쌀	3.4 kcal	21.84 kg	74.26 kcal	497 cal
	옥수수	"	43.68 "	148.5 "	990 "
	기타	"	7.28 "	24.8 "	166 "
	소계		72.8 "	247.6 "	1,653 "
부식	간장	0.27 kcal	4 l	1,446 cal	10 "
	된장	1.28 "	6 kg	7,680 "	51 "
	고추장	0.76 "	3 "	2,280 "	15 "
	달걀	1.00 "	0.6 "	600 "	4 "
	생선	0.84 "	1.2 "	1,000 "	7 "
	두부·콩	4.10 "	30 "	2,460 "	16 "
	채소	0.42 "	0.5 "	12,600 "	84 "
	육류	3.00 "	"	1,500 "	10 "
소계			28,120 "	188 "	
총 열량			275.72 kcal	1,841 "	

* 飮食物 單位熱量은 FAO 基準值임.

(나) 食生活에 대한 住民들의 의식구조

北韓住民은 해방 이후 現在까지 40여년간 食糧配給制 또는 食糧配給制에 準하는 協同農場員의 決算分配制에 의해 食生活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食生活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이한 固定觀念에 사로잡혀 있다.

첫째, 食生活 改善이나 食生活 향상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의식이 둔화되었거나 희박해졌다.

둘째, 食生活은 生存을 위한 부득이한 수단인 것이지 生活을 위한 수단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北韓住民은 맛과 영양보다 一定量의 칼로리의 攝取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다.

셋째, 食生活問題 決定은 김일성과 當局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김일성과 政權當局의 배려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체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北韓住民은 食生活에서 오는 고통을 심하게 느끼지 않고 있으며 느낀다 하더라도 不平·不滿을 토로하기 보다는 스스로 克己하려 하고 있다.

北韓住民이 지닌 이상과 같은 특이한 固定觀念은 김일성 獨裁政權을 安定的으로 維持하게 만든 核心 要因이 되었고 김일성 偶像화를 推進할 수 있었던 原動力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北韓住民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食生活에 대한 客觀的 評價, 相對的 評價를 하기 시작했고 기아와 공복에 대한 積極的인 자구책, 즉 食糧절도, 食糧配給 등 食糧사범 增加와 외국인에 대한 食糧물요구와 같은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로 전해지고 있다.

(2) 衣生活 水準

北韓住民의 의복생활은 勞動과 일상생활을 위한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個人的 品位 維持와 趣味·사치성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복에 대한 購賣節次를 보면 當局은 住民들에게 노동복, 평상복(出退勤服)에 한해 季節別로 2벌씩 配給을 하고 각종 織物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벌씩 一定量을 배정해 주는 것 이외에는 個人이 商店에서 購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은 季節에 따른 한두벌의 出退勤服과 作業服에 한해서는 큰 부담없이 着用할 수 있고 日常生活과 勞動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衣生活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출시나 行事 등에 參席할 때 입어야 할 衣服, 또는 個人的 취향을 살리고 맵시와 모양을 내기 위한 衣服이나 品位와 인기를 높이기 위한 衣服 등은 一般住民들과 거리가 먼 實情이다.

다시말한다면 生存과 勞動을 위한 基本的인 衣生活은 保障되고 있으나 衣服에 대한 人間의 社會的 욕망을 충족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北韓住民들 중에서 양복에 벵타이를 맬 수 있는 사람은 고위간부나 特殊階層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女性들의 최대소망이 비로도 치마저고리를 입어 보는 것이라는 事實에서 北韓住民의 衣生活 水準을 상상할 수 있다.

또 北韓社會에서는 젊은 女性用 스타킹이나 스카프, 고급 내의류

는 여성을 유혹하는 最高의 物品이고 또한 이와같은 物品을 소지한 여성은 北韓社會에서 가장 뽐낼 수 있는 자라고 한다.

最近에 이르러 北韓當局은 衣生活에 대한 北韓住民의 욕구를 다 소나마 충족시켜주기 위해 比較的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장려하고 있으나 시장성이 없는 단순한 양적 生産에만 치중하고 있는 制度的 特性으로 인해 住民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商品이 生産될 수도 없고 또 生産된다 하더라도 고가로 販賣되고 있어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問題와 關聯 김일성은 82年 4月에 開催된 黨最高人民會議 연석회의상에서 “女性들이 소매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파진 옷을 입고 화려한 색상과 대담한 노출을 한다고 해서 社會主義 生活樣式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는데 김일성의 이 發言은 住民들의 衣生活 改善과 水準向上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획기적인 인식변화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이와같은 發言이 있는 후 北韓에는 衣生活의 상당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擴大되어 구두와 두발, 심지어는 악세사리에까지 미적감각을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北韓住民들의 衣生活 水準은 어디까지나 生存과 勞動을 위한 基本的인 衣生活 영위에 불과한 것이지 個人的 욕망과 趣味를 충족시키기 위한 水準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住居生活

一般的으로 住居環境을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두가지 指標를 基準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는 住居空間이고 다른 하나는 住居便益施

設이다. 이중 住居空間을 評價하는 데에는 建坪과 대지면적을 基準으로 하되 이것도 家口當 面積과 1人當 面積을 評價하게 되고 기타는 家口當 房數와 1個房에 몇명이 기거하는지를 가지고 評價를 한다.

住居便益施設(住宅構造)에서는 부엌이 어느 정도 現代化 되었는가, 목욕탕은 있는가,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수도 普及率은 어떤가를 가지고 評價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지금까지 住宅空間에 대한 공식발표를 한번도 한 바 없어 正確한 住宅空間을 산정할 수 없으나 北韓의 주택배정 節次, 주택 규모, 階層別 人口分布 등이 밝혀져 있으므로 그런대로 신빙성 있는 評價는 可能하다.

1983年度 北韓의 住宅空間은 家口當 建坪이 $27.7 m^2$ 이고 人口 1人當 建坪은 $5.5 m^2$ 로 評價되는데 이는 1982年度 韓國의 家口當 建坪 $41.4 m^2$, 1人當 建坪 $9.8 m^2$ 에 비하면 절반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다음 住居空間中 대지면적에 있어서는 北韓의 경우 일부 農村住宅과 고위간부들에 배정되는 特호주택(獨立家屋)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므로 世帶當 대지와 1人當 대지면적을 산출하기가 困難하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를 보면 家口當 대지면적이 $121.1 m^2$ (약 37평), 1人當 대지면적이 $28.8 m^2$ (8.7평)로 나타나 있는데 이점을 감안할 때 北韓의 住宅 대지면적은 韓國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評價된다.

表 # 22

北韓의 住居空間 산출표

階層	區分	住宅配定 世帶數	住宅空間	總建坪	備考
	黨政幹部級	19萬世帶	66 m ²	1,254 萬m ²	世帶當 20坪
	地方幹部級	38 "	49.5 m ²	1,881 "	世帶當 15坪 世帶當 10坪
	企業所幹部級	42 "	33.1 m ²	1,390 "	62萬世帶中 32%는 미배정 世帶當 8坪
	一般勞動者級	148 "	26.4 m ²	3,907 "	259萬世帶中 43%는 미배정
	計	378 "		8,432 "	

- 世帶當 住宅面積：22.3 m² (總世帶數 378萬世帶 適用)
- 人口 1人當 住宅面積：4.5 m² (總人口 1,890萬名 適用)

表 # 23

韓國의 住居空間

(1982年)

區分		單位	全國平均	大都市	中小都市	郡級以下
建坪	家口當	m ²	41.4	37.6	36.2	48.2
	1人當	m ²	9.8	9.1	8.9	11.2
대지	家口當	m ²	121.1	48.2	75.9	223.6
	1人當	m ²	28.8	11.7	18.7	51.6
家口當房數		개	1.3	1.3	1.3	1.4
1房當人口數		명	22.0	2.1	2.1	1.9

출처：韓國의 社會指標 (經濟企劃院 1983年 p213)

* (1) 家口當 房數 = $\frac{\text{總使用房數}}{\text{總家口數}}$ (2) 1房當 人口數 = $\frac{\text{總家具員數}}{\text{總使用房數}}$

北韓은 모든 住宅이 協同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住宅을 行政當局에서 配定하고 있는데 통상 配定 우선순위는 직급과 직책순위의 비례하므로 中央機關의 지도원 以上, 도급기관의 部長, 人民學校 校長, 3급 이상 企業所 部長級 以上에 해당되는 地方機關 幹部級 이상에게는 100% 住宅을 配定하고 있으나 그 이하는 企業所 幹部級이 80%, 一般勞動者級은 60% 水準이 住宅을 配定받고 있어 北韓의 住宅配定率은 65% 水準으로 評價된다.

表 # 24

北韓의 階層別 世帶數, 人口 및 住宅配定率

區分 階層	世帶數 (萬世帶)	人口數 (萬名)	住宅配定率 (%)	備 考
黨政幹部級	19	95	100	중앙당 과장이상, 정무원 국장급 이상, 大學教授
地方機關 幹部級	38	190	100	中央機關 지도원, 도급기관 부부장, 기업소부장, 人民學 校校長
企業所幹部級	62	310	68	도급지도원, 企業所 課長, 市, 郡 機關 課長
一般勞動者級	259	1,295	57	一般勞動者, 農民, 事務員
計	378	1,890	65	

現在 住宅을 配定받아 기거를 하고 있는 北韓住民의 階層別 住居空間을 보면 黨政幹部級의 家口當 建坪은 66 m^2 (20 坪), 1人當은 13.2 m^2 (4 坪)으로 가장 많고 一般勞動者의 경우 家口當 26.4 m^2 (8 坪) 1人當 5.3 m^2 (1.6 坪)으로 나타나 있어 北韓 全住民의 15 %에 該當되는 地方機關 幹部級 이상만이 韓國의 平均 住宅空間에서 生活하고 있고 나머지 85 %는 韓國의 住宅空間에 거의 절반수준에서 生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 25

北韓의 階層別 住居空間

階層		黨政幹部	地方機關幹部	企業所幹部	一般勞動者
住居空間	建坪	66	49.5	33.1	26.1
	家口當				
(m^2)	1人當	13.2	9.9	6.6	5.3
	家口當 房數(個)	3	2	1.2	1.1
	1房當人口數(名)	1.7	2.5	3.3	3.3

* 現在 配定받아 기거하고 있는 階層別 住宅構造를 中心으로 산정

다음 北韓의 住宅便益施設을 보면 대부분의 住宅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黨政高位層이 配定받는 高層 高級아파트나 獨立家屋이 아니고서는 재래식 부엌이고 목욕탕은 設置되어 있지 않으며 화장실의 경우도 기업소 간부급이 配定받는 아파트나 一般勞動者가 配定받는 小規模 아파트에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겠금 設計되었다.

그러나 상수도는 일부 農村住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普及되어 있어 普及率は 韓國의 70.6%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評價된다.

表 # 26

韓國의 住宅便益施設 現況

(%)

便益施設		區分	全國平均	大都市	中小都市	郡級以下
부 역	입 식		9.7	18.3	7.5	3.7
	재 래 식		87.0	75.3	88.9	95.6
	없 음		3.3	6.4	3.6	0.7
목 욕 탕	온 수		4.3	9.5	2.3	1.0
	비 온 수		10.7	16.5	14.4	4.1
	없 음		85.0	74.0	83.3	94.9
화 장 실	수 세 식		12.3	26.5	7.2	3.1
	재 래 식		86.2	70.8	92.1	96.0
	없 음		1.5	2.7	0.7	0.9
상수도보급율			70.6	93.0	78.7	48.6

출처 : 韓國의 社會指標 (經濟企劃院 1983年 p218)

라. 生活日用品 購買可能 水準 評價

(1) 家計所得中 日用品 購買可用 金額

北韓住民의 家計所得中 주식비, 부식비, 光熱費, 住居費, 被服費, 公課金, 教育費 등 基本 生活費를 제한 나머지 金額, 즉 예비자금

또는 貯蓄可用 金額을 生活日用品 購買可用 金額으로 보면 北韓의 주요 階層別 購買可用 金額 水準은 다음과 같다.

表 # 27

北韓의 階層別 基本生活費 및 購買可用 金額

階層 / 區分	月家計所得額	基本生活費	購買可用額	備 考
副 部 長 級	359	216.40	132.60	次官級
8 級 勞 動 者	164	85.59	78.41	重勞動從事者
一般事務員級	140	84.63	55.37	輕勞動者포함

즉 우리의 次官級에 該當하는 副部長級은 月家計所得이 359 원인 데 이중 60 %인 216 원은 基本生活費로 支出되고 購買可用 金額은 40 %인 133 원이고 一般事務員은 月家計所得 140 원에서 역시 60 %인 84 원 63 전이 基本生活費로 支出되고 購買可用 金額은 55 원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階層間的 購買可用 金額의 차이는 副部長級の 경우 8級勞動者の 1.7 배, 一般事務員 보다는 2.4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階層間的 격차를 실감케 한다.

(2) 購買可用 品目 및 購買量

北韓의 代表的 서민 계층에 속하는 一般事務員級の 購買可用 金額으로 購買할 수 있는 品目別 購買량을 評價해 보기로 한다.

購買可能 品目は 基本生活費에서 支出되는 品目を 제외한 食料品, 消耗品 및 화장품, 가정용품, 기타 日用品으로 대별하여 評價하되 可用金額으로 單一品目を 購入했을시 購買可能 數量을 산출하였다.

(가) 主要 食料品類 購買可能量

一般事務員級 購買可用 金額에서 설당을 구입할때 月 27.7 kg 購入 가능한데 이를 韓國의 價格으로 환산하면 16,620 원에 該當되고 쇠고기를 購入하였을시는 7.9 kg, 600 ㄱ 한근으로는 13 근에 該當되는데 韓貨로는 65,000 원에 該當된다. 이상의 두가지 品目を 單純比較했을때 北韓에는 주로 輸入에 의존하는 설당은 엄청나게 高價로 販賣하고 있고 比較的 高價로 販賣될 것으로 보이는 쇠고기는 韓國에 비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現象은 韓國의 쇠고기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一般事務員級이 購買 가능한 主要 日用品과 月 購入可能量은 表 # 28 과 같다.

表 # 28

北韓의 一般事務員 月 食料品 購買可能量

品 目	單 位	單 價	月購入可能量	備 考
설 탕	kg	2 원	27.7 kg	韓國 설탕 10 kg 當 6千원
쇠 고 기	kg	7 원	7.9 kg	13 근(600 ㄱ)
청 어	kg	1 원 50 전	37 kg	
김	100 장	7 원	800 장	8 속
새 우 젓	kg	90 전	61.5 kg	
사 과	kg	1 원 50 전	37 kg	
냉 면	그릇	1 원	55 그릇	
인삼알사탕	kg	7 원	7.9 kg	
소 주	4 홉	2 원	27.7 병	25 도, 110 홉
인삼주	3 홉	4 원	13.8 병	41.5 홉
돼지고기통조림	475 ㄱ (1통)	3 원	18.5 통	
오리고기통조림	"	2 원	27.7 통	

(나) 織物, 衣類, 신발류

北韓의 피복류 價格은 配給品인 作業服, 平常服類는 저렴하게 책정된 반면 配給品이 아닌 自由購買品은 엄청나게 비싼 값을 책정하고 있어 品位와 취향에 맞는 衣服을 購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負擔을 가지게 된다.

실례를 들면 한벌에 150 원하는 저급신사복이나 180 원하는 가죽잠바를 購入하기 위해서는 月購買可用 金額을 한푼도 쓰지않고 3個月을 모아야만 購入 可能토록 되어 있어 現實的으로는 5~6個月 計劃的으로 저축하지 않으면 어려운 實情이고 여자들의 衣服도 外出用 치마저고리 한벌이나 투피스 한벌을 맞추려면 金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2個月分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그외에도 여자용 나이론 스타킹은 5個반, 원피스는 한벌반, 가죽구두도 2 켤레가 못되고 담요 한장을 購入하기 위해서도 3個月程度 저축해야만 可能的 實情이다.

衣服 및 신발류의 價格을 통해 볼때 北韓住民의 衣生活이 千篇一律的인 디자인과 색상으로된 作業服과 평상복 뿐이라는 事實이 쉽게 納得이 간다.

北韓의 一般勞動者가 購入할 수 있는 衣類品の 月購買可能量은 다음과 같다.

表 # 29

北韓 一般事務員의 衣類購入 可能量

品 目	單 位	單價(원)	月購入可能量	備 考
저급신사복	착	150	0.37	3個月分으로 購入可能
치마, 저고리	"	80	0.7	
나이론세타	"	70	0.8	
스타킹	족	10	5.5	
하급외투	착	200	0.28	4個月分으로 購入可能
중품와이셔쓰	"	8	6.9	
가죽잠바	"	180	0.3	
원피스	"	40	1.4	
담요	개	160	0.35	3個月分
광목	m	3	18.5	
비로도	"	100	0.55	
우피구두	족	30	1.8	
가죽장갑	켄레	8	6.9	
가죽털모자	개	30	1.8	
비닐샌달	족	8	6.9	

(다) 日用雜製品 및 化粧品

比較的 小額規模이고 日常生活에 없어서는 안되는 雜製品과 化粧品の 경우도 北韓에서는 上상을 초월할 정도로 高가로 査定되어 있다. 가장 代表的인 日用消耗品인 세수비누의 경우도 1個當 1 원으로 월 55個 밖에 購入하지 못하는 實情이고 우산의 경우는 월 4個도 購入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表 # 30

雜製品 및 化粧品 購買可能量

品 目	單位	單價(원)	月購買可能量	備 考
세탁비누	개	1	55.3	韓國 個當 250 ~ 350 원
치 약	"	1	55.3	韓國 個當 340 ~ 990 원
우 산	"	15	3.7	
면 도 기	"	3	18.5	韓國 1,100 원
트 령 크	"	15	3.7	韓國 高級品 45,000 원
양 은 솔	"	12	4.6	
선글라스	"	10	5.5	韓國 5,000 ~ 20,000 원
후 랫 쉬	"	5	11.1	韓國 2,000 ~ 5,000 원
가스콘로	"	18	3.0	
뽀 짜	"	13	4.3	
항 아 리	"	12	4.6	
향 수	병	2	27.7	韓國 最低 20,000 원
크 림	"	2.50	22.1	韓國 2,000 ~ 7,000 원
분	갑	2	27.7	韓國 2,000 ~ 7,000 원

(대) 家電製品 및 耐久性 消費財

北韓은 家電製品을 비롯한 耐久性 消費財 및 貴重품 價格은 가격제정 政策에 따라 매우 高價로 책정하고 있어 一般勞働者나 事務員階層이 購入을 하고자해도 購入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北韓製 자전거 한대의 價格이 250 원인데 事務員 家庭에서 이것을 購入하기 위해서는 무려 5 個月동안 다른 것은 일체 購入하지 않고 계속 저축해야만 할 형편이고 家電製品인 TV, 냉장고와 손목시계, 재봉틀을 購入하는데 있어서도 3 個月 이상 7 個月까지 저축해야만 可能的인 實情이다.

表 # 31

家電製品 및 耐久性 消費財 購買可能量

品 目	單 位	單價(원)	月購買可能量	備 考
자 전 거	대	250	0.22	
삼 른 차	"	30	1.8	어린이용
TV	"	350	0.16	北韓製 14 인치 基準
냉 장 고	"	200	0.28	北韓製 소용량
전기다리미	개	25	2.2	
선 풍 기	대	70	1.3	高級 外製는 150 원임
라 디 오	"	100	0.55	高級 大型製品
전기밥솥	개	45	1.2	
손목시계	"	150	0.37	北韓製. 外製는 250 원이상
벽 시 계	"	60	0.9	
재 봉 틀	대	200	0.28	

6. 結 論

北韓住民의 實質 消費生活 水準은 이상에서의 각종 評價와 같이 계량화된 1人當GNP의 30%에 불과한 水準이고 그나마도 社會制度에서 오는 각종 통제조치로 인해 더욱 고생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生存에 급급한 저급한 食生活, 하루 12時間 이상이라는 과도한 勞動酷使와 협소한 住居環境 또는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社會的 여건이 불비한 狀況下에서 영위되는 北韓住民들의 生活은 오늘날 國際적으로 통용되는 그 어느 基準을 適用한다 하더라도 비참하기 그지 없다.

“지상의 낙원”이요 “勞動者의 天國”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北韓社會가 이토록 沈滯되고 낙후된 이면에는 김일성의 權力基盤 구축과 最近에 이르러 부쩍 열을 올리고 있는 김일성 부자 세습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준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長期間에 걸친 세뇌교육과 폐쇄되고 통제된 社會制度로 인해 이미 체념한지 오래고 모든 고통을 스스로 克己하며 살아오고 있는 北韓住民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새삼 솟는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80年代를 前後하여 이처럼 抑壓되고 통제된 社會에서도 참고 견디는 데 한계를 느낀 住民들이 체제에 대한 不滿과 生活苦로 인해 크고 작은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 체념과 인고의 限界를 보는것 같아 감회를 느끼게 한다.

앞으로 北韓住民의 不平不滿이 어떻게 승화되고 發展될지는 알 수 없어도 이와같은 住民 저변의 기류는 김일성을 비롯한 정권핵심부에 심한 打擊을 줄 것은 틀림없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北韓 政權內部의 어떤 變化가 있을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北韓이 80年 以後 “쌀은 곧 共產主義다”, “社會主義 經濟問題에서 가장 시급히 解決해야할 問題는 먹는 問題이다”고 하면서 먹는 問題를 강조하고 있고 이 먹는 問題와 더불어 입는 問題에까지 크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北韓의 위정자들이 住民들의 不平不滿 근원을 그냥 묵과하고만 있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84年 下半期부터 北韓當局은 전례없이 經公業 革命과 人民 奉仕革命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住民질기대회를 開催하고 있고 地方産業일꾼대회를 地域別로 開催하고 人民消費品 생산증대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을 볼때 北韓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人民消費品 생산증대와 住民福祉 問題에 정책적 관심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또 北韓은 84年 9月 沈滯된 北韓經濟를 부흥시키고 人民生活向上에 必要한 막대한 資本과 선진기술도입을 위해 “合營法”을 제정, 공포하였고 김일성, 김정일, 강성산을 비롯한 黨政 고위간부들이 대거 中共의 개방화 現場을 訪問하고 있어 北韓도 이제 무엇인가 精神을 차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北韓當局이 진정으로 住民들의 生活問題와 福祉問題를 생각한다면 지금 취하고 있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보다 擴大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北韓住民의 生活이 向上되고 北韓 정권당국의 政策방향이 合理的
으로 改善된다는 事實은 平和統一을 염원하는 6千萬 民族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政府가 지향하는 政策方向에도 합치될 수 있
는 것이다.